

사례 중심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2021.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1. 발간 배경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4, 시행: '20.8.5)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에 접수되는 민원 질의의 양이 증가하고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유권해석 담당자들의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한 사례 중심의 개인정보 법령 해석 실무 편람 등 필요

2. 발간 목적

-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유권 해석 담당자의 업무 능력 배양
- 개인정보 처리 단계 별로 쟁점 사례들에 대한 표준 문답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명확한 법령 해석 기준을 제시

3. 수록 범위 및 활용대상

- **(수록범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대표적 심결례, 민원 사례, 판례 등
- **(활용대상)**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유권 해석을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

4. 활용 안내

-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유권해석 담당자들의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한 법령 해석 교육 교재로 활용
- 개인정보 관련 민원 처리 및 유권해석 시 참고할 수 있는 민원 처리 지침서로 활용

※ 예시된 표준 해석례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홈페이지 (www.pipc.go.kr) 지침·가이드라인 및 개인정보보호 포털 (www.privacy.go.kr) 지침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 개인정보의 주요 개념	1
1. 개인정보의 개념	5
2. 처리의 개념	17
3. 정보주체의 개념	17
4. 개인정보파일의 개념	17
5.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18
6. 공공기관의 범위	21
7. 과학적 연구의 개념	22
8. 민감정보의 개념	24
9. 고유식별정보의 개념	27
II.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29
1.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정당화 사유	31
2.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36
3.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37
4. 동의를 받는 방법	37
5. 동의의 철회	42
III. 개인정보의 제공	51
1.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52
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57
3.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66
4. 영업의 양도 등	73
5.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	76
6.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79

CONTENTS

IV. 개인정보의 파기	83
1. 개인정보의 파기	85
2. 파기의무 예외	87
3. 법령상 보관 의무 있는 개인정보의 보존방법	90
V.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의 제한	99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102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원칙적 금지	104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예외적 허용	109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절차 및 방법	119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의무	127
6.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대응	139
VI.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처리 제한	149
1.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151
2.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154
VII.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161
1. 민감정보 처리 제한	162
2. 민감정보의 범위	163
VIII. 가명정보의 처리 등	171
1. 가명정보의 처리 등	172
2. 가명정보 처리시 금지의무	174
IX. 공개한 개인정보의 처리	179

X.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185
1. 개인정보의 열람	187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권	194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201
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등	206
XI.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213
1.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215
2. 개인정보처리자 유형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이행	216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안전조치	217
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221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 조치	242
6.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243
7. 개인정보의 파기	245
XII.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249
1.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250
2. 개인정보처리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253
3.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책임	255
4.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소멸	258
XIII.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 등	261
참고	267
부록	275



사례 중심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I

개인정보의 주요 개념

1. 개인정보의 개념
2. 처리의 개념
3. 정보주체의 개념
4. 개인정보파일의 개념
5.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6. 공공기관의 범위
7. 과학적 연구의 개념
8. 민감정보의 개념
9. 고유식별정보의 개념

I | 개인정보의 주요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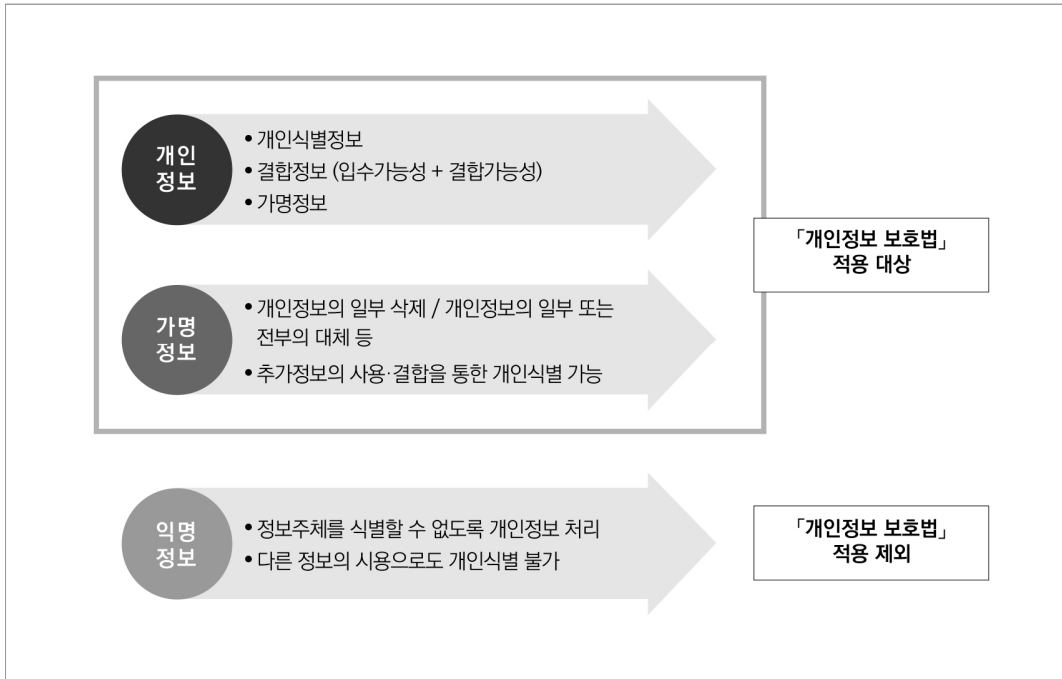
법률	제2조 제1호(개인정보) 제2조 제1호의2(가명처리) 제23조(민감정보) 제24조(고유식별정보)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표준지침	제2조 제9호(개인영상정보)

● 개인정보 및 그와 구별하여야 하는 개념

개인정보	<p>◆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함</p> <p>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p> <p>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p> <p>나. 가목 또는 나목을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p>
가명정보	<p>◆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함</p>

익명정보	◆ “익명정보”란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함으로써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함 (이 경우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추가정보	◆ “추가정보”란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 (알고리즘 등), 가명정보와의 비교·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는 정보(매핑 테이블 정보, 가명처리에 사용된 개인정보 등) 등을 말함
결합정보	◆ “결합정보”란 합법적으로 접근하여 그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정보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함(이 경우 현재의 기술 수준이나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이나 비용, 노력이 합리적으로 과다하게 수반되지 않아야 함)
개인영상 정보	◆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술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함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의 비교]



● 처리,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

◆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

※ 다만,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한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달, 전송, 확인 또는 통과만 시켜주는 행위는 처리에 해당하지 않음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함. 그러므로 법인이나 단체는 정보주체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이름, 자택주소, 사진 등)나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개인사업자정보는 각각의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개인정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로 인정할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함

※ 다만, 공공부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려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하므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관청 또는 행정청과는 구별됨

개인정보처리자	행정관청	행정청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함	국가행정사무에 관하여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를 국민에 대하여 표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을 말함 (예: 국가기관 행정각부 장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함

1. 개인정보의 개념(제2조 제1항 제1호·제1의2)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의 주체는 “살아있는 인간”임. 그러므로 이미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망으로 간주되는 사람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그의 개인정보 또한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

※ 다만, 사망자의 정보가 사망자와 유족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는 사망자의 정보인 동시에 유족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인 개인정보에 해당함

● ‘개인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하므로 법인(法人)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그렇지만,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개인에 관한 정보인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진과 업무담당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택주소 및 개인 연락처, 사진 등 그 자체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각각의 상황 또는 맥락에 따라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

※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납세액 등은 사업체의 운영과 관련한 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사람이 아닌 사물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지만, 해당 사물 등의 제조자 또는 소유자 등을 나타내는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함

※ 특정 건물이나 아파트의 소유자가 자연인인 경우, 그 건물이나 아파트의 주소가 특정 소유자를 알아보는데 이용된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함

- ‘개인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특정 1인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직·간접적으로 2인 이상에 관한 정보는 각자의 정보에 해당함

※ SNS에 단체 사진을 올리면 사진의 영상정보는 사진에 있는 인물 모두의 개인정보에 해당함

※ 의사가 특정 아동의 심리치료를 위해 진료 기록을 작성하면서 아동의 부모 행태 등을 포함하였다면 그 진료기록은 아동과 부모 모두의 개인정보에 해당함

※ 그렇지만,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임을 알아볼 수 없도록 통계적으로 변환된 ‘○○기업 평균연봉’, ‘○○대학 졸업생 취업률’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개인정보 해당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평가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개인정보로 인정됨. 그렇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가능성이 전혀 없어서 개인을 식별하지 않거나 식별할 수 없는 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인정할 수 없음

판례

휴대전화번호 뒤 4자리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그 전화번호 사용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라면 더욱 그러한 가능성이 높으며, 설령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는 그 전화번호 사용자를 식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뒷자리 번호 4자와 관련성이 있는 다른 정보(생일, 기념일, 집 전화번호, 가족 전화번호, 기존 통화내역 등)와 쉽게 결합하여 그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도 있다(대전지법 논산지원 2013.8.9. 2013고단17 판결).

Question 1 회사에서 순찰자 순찰정보 등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해도 되는지?
 (표준 해석례 9)

방호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입니다. 방호직 특성상 근무중 순찰을 실시하는데 관리자가 공개적인 게시판에 순찰보고서라는 항목으로 해당 근무자의 성명, 순찰포인트, 누락여부 등을 기재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닌지?

Answer

| 법인의 정보이면서 개인에 관한 정보의 공개는 위법이라 단정하기 어려움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따라서,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상호), 소재지 주소 및 전화번호, 업무별 연락처, 영업실적 등 전적으로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반면,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등 사업체 운영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 대표자 성명을 비롯한 임원진과 업무 담당자의 이름, 개인 연락처, 사진 등은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음
 - 결국, 회사 순찰근무자의 순찰 현황은 법인에 대한 정보이면서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도 있어 내부 공개가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공개하는 경우 성명의 일부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함이 바람직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알아볼 수 있는”이란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려는 자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고려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함
- 사진 등 영상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는 그 자체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임. 그렇지만, 특정 공간·장소·일시,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단체 등과 같은 경우 성명은 해당 정보주체를 직접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임
 - ※ 코로나 19 방역과 관련하여 “감염병 예방 및 전파의 차단 및 역학조사”를 위하여 4주간 보유하는 ‘수기출입자명부’를 작성하면서 성명을 기입하도록 하는 것은 장소 및 방문일시가 특정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명대신 가능한 개인안심번호와 시군구만 기재하도록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 출입관리방식을 이용하도록 질병관리청과 협력하여 제도개선 한 바 있음
- 그렇지만, 공간, 장소, 일시, 사람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동명이인(同名異人)이 많은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임

Question 2 **회사건물 출입기록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표준해석례 6)**

OO빌딩의 관리를 맡고 있는 업체의 직원입니다. OO빌딩 입주사인 A사에서 소속직원들의 건물 출입기록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여 개인정보라고 제공할 수 없다고 거절하니 법적 근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Answer

| 빌딩의 출입기록은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함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따라서, 고객사 직원의 빌딩 출입기록은 객관적 사실로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

Question 3 교통법규 위반 차량 범칙금 납부 여부가 개인정보인지? (표준 해석례 11)

특정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한 자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정보공개 청구를 받고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 대해 범칙금 부과 처분을 하였음을 통지하였으나, 추가로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범칙금을 납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범칙금 납부 여부’가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지 문의합니다.

Answer

| 범칙금 납부 여부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이며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 정보에 해당함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신고인은 이미 알고 있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 소유자의 정보를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며, 범칙금 납부 여부에 관한 정보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함(의결례 제2017-03-15호 참조)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함
- ‘입수 가능성’은 두 개 이상의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 그 결합에 필요한 다른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하여 이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 따라서 해킹·절취(切取)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음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입수 가능성 외에 현재의 기술 수준이나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이나 비용, 노력이 비합리적으로 과다하게 수반되지 않아야 함
 - ※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구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가의 컴퓨터가 필요한 경우라면 ‘쉽게 결합’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함

의결례

차량번호

자동차는 그 소유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자동차등록번호만으로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누구 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특히 차량의 소유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그러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 그리고 자동차등록번호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고(제5조),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와 함께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을 고려할 때(제7조 제6항)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등록원부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보호위원회결정 제2019-16-260호).

판례

IMEI / USIM 일련번호

IMEI나 USIM 일련번호는 모두 특정 개인의 소유로 귀속되기 전까지는 기기나 특정 카드에 부여된 고유번호로서 그 자체로는 당해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라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위 각 번호정보를 가지는 휴대폰이 어느 개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순간부터 위 각 번호는 ‘기기나 특정카드에 부여된 고유번호’라는 의미 이외에 ‘특정 개인 누가 소유하는 휴대폰의 기기 번호 및 USIM카드의 일련번호’라는 의미를 함께 지니게 된다할 것이고, 이 각 IMEI나 USIM 일련번호는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가입자정보에 나타난 다른 정보와 어려움 없이 쉽게 결합됨으로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되는 이상 이들을 개인정보라 봄이 상당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3. 선고 2010고단5343).

판례

이메일주소

이메일 주소는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을지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할 경우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8. 선고 2006가합33062,53332 판결).

판례

아이디와 비밀번호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식별부호는 실제 공간과는 달리 익명성이 통용되어 행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가상공간에서 그 행위자의 인격을 표상한다고 할 것이므로,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즉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법 2007.1.26.선고 2006나12182 판결).

Question 4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가 개인정보인지? (표준 해석례 1)

행정기관 민원 담당자입니다. 관내에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의 자동차등록번호 일체 또는 차대번호 일체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이 2가지 사항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는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음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자동차등록번호는 자동차등록원부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의결례 제2019-16-260호 참조)

Question 5 아파트 공식 카페에 동·호수와 실명을 아이디로 사용해도 되는지? (표준 해석례 2)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회원가입시 동호수와 실명을 아이디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또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경우 동·호수와 실명을 아이디로 쓸 수 있으나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유의 필요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아파트 동·호수는 입주자들의 성명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동·호수를 아이디로 쓰는 경우 예기치 않게 과도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홈페이지 운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가입단계에서 충분히 알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함
 - 참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관리규약을 통해 아파트 홈페이지에 동·호수와 실명을 아이디로 사용하도록 정한 경우 이를 집행할 수 있음

Question 6 결제대행사에 제공하는 ID와 결제상품정보가 개인정보인지?
 (표준 해석례 3)

당사는 고객이 상품을 구매 시 결제대행사에 고객 ID와 결제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결제대행사로부터 결제처리결과만 통보받고 있습니다. 이때 고객ID와 결제상품 정보가 개인정보인가요?

Answer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고객 ID와 결제상품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고객 ID와 결제상품정보는 특정 개인의 구매내역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함

Question 7 **개인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표준 해석례 4)

개인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이 개인정보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를 참고할 만한 곳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nswer

| 치아 엑스레이 사진에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는 개인 정보로 볼 수 있음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일반적으로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치아 엑스레이 사진은 법에서 보호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나, 진료기록 등 해당 정보에 대한 설명 데이터가 있는 치아 엑스레이 사진은 개인정보에 해당됨

Question 8 **지하철 이용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표준 해석례 5)**

○○지하철 공사 개인정보 담당자입니다. 탑승객의 승하차역, 이용일 및 이용시각이 개인정보 인지요?

Answer

| 식별가능한 특정 개인의 지하철 승하차역, 이용일, 이용시각 등 관련 정보는 개인 정보에 해당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따라서, 탑승객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이용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있으나,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의 승하차역, 이용일, 이용시각 등의 정보 자체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없음

- ※ 홍길동이 2021년 7월 1일 08시 30분 충무로역에서 전철을 갈아탐(개인정보). 2021년 7월 1일 08시 30분 충무로역의 환승인원은 약 500여명임(개인정보 아님)
- 한편, 특정 개인이 특정한 시간 및 장소에 존재하였다는 정보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5조 등의 보호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됨

Question 9 **코로나 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도 되는지?**
(표준 해석례 8)

감염병 확진자 관련하여, OO시 #9번 확진자 OO센터 OO부장 등 직함이나 소속기관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공개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 행정구역, 소속기관·직함 등의 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공개해서는 안 됨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일반적으로 행정구역, 소속기관명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4번 확진자, 직책 또는 직함'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 확진자에 대한 동선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 최소한의 범위로 공개 가능
 -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 1판」(중앙방역대책본부 2020.10.07.)에 따라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 ① 개인별 이동경로 형태가 아니라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를 목록 형태로 공개
 - ②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장소를 공개하지 않음

Question 10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표준 해석례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변환한 연계정보(이하 'CI')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nswer

| CI(Connecting Information)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인을 식별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함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CI는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단방향 암호화한 정보로서 복원이 불가능하고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으나 특정 개인에 고유하게 생성 및 귀속되어 유일성을 가지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온·오프라인 서비스 연계를 위해 활용되므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함

● **가명정보**

- 개인정보에는 가명처리를 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가명정보도 해당됨
 - ※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정보”와는 구별함
 - ※ 가명정보와 결합정보는 모두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가명정보”는 추가정보의 사용·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결합정보와 구분됨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서의 ‘다른 정보’와 ‘추가정보’는 해당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정보에 해당함
 - ※ ‘다른 정보’는 해당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정보라면 처리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합법적으로 접근·입수할 수 있는 정보 모두가 다른 정보가 될 수 있음. 그렇지만,

‘추가정보’는 가명처리 과정에서 생성·사용된 정보로 제한되고, 해당 정보를 가명처리 전 정보로 복원할 수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 가능하게 하는 다른 정보와 구분됨

- 가명처리된 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야 하므로 단순히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 기술적 처리를 한 것만으로는 가명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처리 결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야 제대로 된 가명처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중 일부를 삭제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전자우편주소는 다른 정보로 대체하였으나, 해당 정보를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가명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익명정보

- ‘익명정보’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함
- 익명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제3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더 이상 자연인의 식별에 사용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여야 하며, 모든 예상되는 합리적인 수단을 사용해도 정보주체가 식별되지 않아야 함
- ※ “제3자”란 해당 정보주체와 그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말함

● 개인영상정보

-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가운데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함. 따라서 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 이외의 카메라, 휴대전화, 블랙박스 등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개인정보로서 보호됨
-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를 하고 있음

표준지침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업무의 수행(제37조)
-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제40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제41조)
-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제42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사무수탁자에 대한 안전한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의 관리·감독(제43조)
- 개인영상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제44조)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의 기록·관리(제45조)
-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제46조)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제47조)
-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제48조)

Question 11 CCTV 실시간 모니터 영상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표준 해석례 10)

CCTV에 찍힌 영상이 실시간으로 출력되고 있는 모니터링 화면의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까?

Answer

| 영상정보에 나타난 정보주체의 외관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함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CCTV에 촬영된 사람의 외관, 자동차등록번호 등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물론 얼굴 등 정보주체를 직접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그 자체로 개인정보에 해당함

2. 처리의 개념(제2조 제2항 제2호)

- ‘처리’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는 물론 개인정보의 전송, 확인, 전달, 이전, 열람, 조회, 수정, 보완, 삭제, 공유, 보존, 파쇄 등 ‘유사한 행위’도 포함됨. 다만,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고 있거나 처리한 개인정보를 단순히 전달, 전송, 확인 또는 통과만 시켜주는 행위는 처리에 해당하지 않음
- ※ 우편배달사업자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는 없고, 단순히 전달 또는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게 되는데 이 때 우편배달사업자 등의 전달 또는 전송행위는 개인정보의 처리로 보지 않음
- ※ 또한,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증을 교환할 때, 방문자의 신원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신분증을 보관하는 업무 행위도 개인정보의 처리로 볼 수 없음

3. 정보주체의 개념(제2조 제3호)

◆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권리의 보유 및 행사 주체인 정보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둘째,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셋째, 처리되는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어야 함
- 살아 있는 사람이면 모두 정보주체가 되므로 국민, 외국인, 소비자, 근로자, 학생, 교사, 군인, 공무원, 환자, 피의자, 수형자, 행정조치 대상자 등 살아 있는 사람이면 그 국적이나 신분 관계없이 누구든지 평등하게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정보주체가 됨

4. 개인정보파일의 개념(제2조 제4호)

◆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함

-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의 이름이나 고유식별정보, ID 등을 색인(index)이나 검색값으로 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배열·구성한 집합물임. 일반적으로 전자적 형태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를 말하지만, 그 밖에 체계적인 검색·열람을 위한 색인이 되어 있는 수기(手記) 문서 자료 등도 포함됨
- ※ 기업에서 고객의 성명, ID 등으로 검색·활용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 병원에서 환자에 대해 작성된 진료기록부 파일,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각종 행정처분 내역 파일 등이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함
- ※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문서의 단순한 집합물에 불과하고, 체계적으로 배열·검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지 않음

의결례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정보의 개인정보파일 해당 여부

‘개인정보 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하는데(「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3호 참조),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 정보는 촬영일시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저장되므로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의결례 제2017-13-100호).

5.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제2조 제5호)

◆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은 물론 영리·비영리 사업자, 기관, 단체, 그리고 개인을 포함함
- ※ 개인적 친분관계를 위하여 휴대폰에 연락처 정보, 이메일 주소록 등을 저장하는 경우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 “업무를 목적”으로 한다.

- “업무”란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수 유무나 영리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며, 단 1회의 행위라도 계속·반복의 의사가 있다면 업무로 볼 수 있음
 - ※ 지인들에게 모임을 안내하기 위해 전화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수집하는 행위나 결혼을 알리기 위해 청첩장을 돌리는 행위 또는 개인이 자신의 송사(訟事)에 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 등은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초하여야 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

판례

“업무”의 개념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그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려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어야 함
 - ※ 일회성 메모나 문서 작성행위는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 있는 모든 자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는 것은 아님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대상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자로 한정하여 규제의 합목적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직접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수탁자, 대리인, 이행보조자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가공, 전송, 편집 등을 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함

●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이어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공기관, 영리·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이 모두 포함됨
 - ※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기업은 물론 동창회·동호회와 같은 비영리단체도 포함됨
- 개인에는 1인 사업자, 개인활동가 등 본인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포함됨
 - ※ ‘개인’은 ‘본인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공공기관, 영리·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개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음
-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반하여,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함
 - ※ 개인정보취급자에는 해당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자가 해당하고,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함

판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28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개인정보취급자”를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제28조 제1항 참조)라고 개념 정의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취급자에 관한 개념 정의 및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인천○○공단이고, 청구인은 인천○○공단의 감사팀 소속 직원으로서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거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7헌마711).

6. 공공기관의 범위(제2조 제6호)

◆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 1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공기관의 분류]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법률에 의하여 같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적용하는 ‘단일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특수성으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해 그 의무가 강화 또는 완화된 규정을 두고 있음

[공공기관에 대하여 달리 정한 규정]¹⁾

의무가 강화된 조항	의무가 완화된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의 법적근거, 목적 및 범위 등 공개의무(제18조 제4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시 공정화·설명회 등 의견수렴 의무(제25조 제3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위탁 절차·요건 강화(제25조 제8항) •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의무(제32조)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의무(제33조) • 개인정보열람 요구권 행사 편의를 위한 별도의 단일창구 마련(제35조 제1항) •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응할 의무(제43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사유 확대 (제15조 제1항 제3호)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사유의 확대(제18조 제2항 단서) • 개인정보처리방침 제정·공개 의무 완화(제30조 제1항) • 개인정보 열람요구권 제한·거절 사유 확대(제35조 제4항 제3호) • 개인정보처리 정지요구 대상 개인정보의 범위 제한(제37조 제1항 단서) • 개인정보처리 정지요구권 거절 사유 확대(제37조 제2항 제3호) • 통계법에 따라 처리된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 적용의 일부 제외(제58조 제1항 제1호)

7. 과학적 연구의 개념(제2조 제8호)

◆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함

◆ “과학적 방법”이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질문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말함.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22면 참조

- “과학적 연구”는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하며 자연과학, 사회과학,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 연구뿐 더러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위해서도 수행이 가능하며, 민간투자연구도 가능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시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히 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단순히 ‘신제품 개발을 위한 과학적 연구 수행’으로 목적을 정할 경우, 이것은 그 가명처리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적절하지 않음. 그 목적을 ‘△△ 제품의 성능 개선을 위해 개인별 ○○○특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개인별 특성과 성능 요인의 연관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수행’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개인정보 보호법」이 요구하는 “과학적 연구”에 해당함²⁾

※ 예를 들면,

- ① 코로나19 위험 경고를 위해 생활패턴과 코로나19 감염률의 상관관계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건강 관리용 모바일 앱을 통해 수집한 생활습관, 위치정보, 감염증상, 성별, 나이, 감염원 등을 가명 처리하고, 감염자의 데이터와 비교·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경우
- ② 연령, 성별에 따른 체중관리 운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또는 운동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하여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맥박, 운동량, 평균 수면시간 등에 관한 정보와 이미 보유한 성별, 연령, 체중을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는 목적으로 과학적 연구 외에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을 제시하고 있음

- “통계작성”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량적인 정보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통계작성의 목적은 시장조사와 같은 상업적 목적은 물론 비상업적 목적도 포함됨

※ 다만, 통계는 집합적인 데이터로 이름, 연락처 등 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계의 대상이 된 정보주체에 대해서는 1:1 맞춤형 타겟 마케팅이 불가능함

※ 예를 들면,

- ① 회사가 도로구조 개선 및 휴게공간 추가설치 등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월별 시간대별 차량 평균속도, 상습 정체구간, 사고구간 및 원인 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② 백화점, 마트 등 유통경로별 상품판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판매 상품을 구입한 회원의 연령, 성별, 선호색상, 구입처, 기능 및 가격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12면 참조

Question 12 직급별 전체 직원의 급여 총액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표준 해석례 7)

A기업 인사노무관리담당자입니다. 회사 노동조합에서 조합원 및 비노조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하여 특정인을 유추할 수 없는 직급별 전체 직원의 연봉액 등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 개인이 특정되지 않은 통계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됨(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노조에서 요구하는 특정직급 전체 인원의 급여총액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 내지는 자연인으로서의 개인이 특정되지 않은 통계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단, 특정 직급의 전체 인원이 극소수여서 특정 개인의 급여를 쉽게 알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

- “공익적 기록보존”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말함.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기업,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 인정됨
- ※ 예를 들면, 연구소가 현대사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중에서 사료가치가 있는 생존 인물에 관한 정보를 기록·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등

8. 민감정보의 개념(제23조 제1항)

◆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함

◆ 법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함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 사상·신념에 관한 정보

- “사상·신념에 관한 정보”란 개인의 가치관에 기초로 하여 형성된 사유체계, 개인이 굳게 믿고 지키고자 하는 믿음·생각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각종 이데올로기 또는 사상적 경향, 종교적 신념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함

●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

-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말함

●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

-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란 노동조합 또는 정당에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를 말하고, 반드시 적법한 노동조합이거나 정당일 필요는 없음
- 노동조합 또는 정당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 이외에 노동조합비 또는 정당 회비 납입내역 등 그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

●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란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病歷), 신체적·정신적 장애 (장애등급 유무 등), 성적 취향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함

※ 혈액형은 건강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의결례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 발달장애인 성명, 주소(의결례 제2019-18-293호)
- 중증장애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의결례 제2019-13-211호)
-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치매질환자)의 성명, 등급, 등급판정일, 유효기간 기산일 및 만료일(의결례 제2019-21-334호)
- 2-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368결정)
-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사업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연령, 주소가 포함된 지원사업 관련 자료(의결례 제2019-22-353호)

●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란 해당 정보를 수집·처리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함
- 해석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민감정보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를 상황에 맞게 규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함

● 공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감정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다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민감정보로 보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함

민감정보처리가 허용된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고유식별정보의 개념(제24조 제1항)

◆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함.

◆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함.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 고유식별정보는 법령에 의해서 개인에게 부여된 것이어야 하므로 기업, 학교 등이 소속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사번, 학번 등은 고유식별정보가 될 수 없음. 또한, 사람이 아닌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도 고유식별정보가 될 수 없음
- 고유식별번호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정하고 있는데, 이들 정보가 민간 분야에서 DB매칭기 등으로 남용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정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임
-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다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로 보지 않음

고유식별정보처리가 허용된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례 중심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II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정당화 사유
2.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3.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4. 동의를 받는 방법
5. 동意的 철회

II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법률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시행령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
표준지침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13조(법정대리인의 동의) 제14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15조 제1항)

◆ 수집이란 정보주체(직접)로부터 또는 제3자(간접)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함. 다만,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자료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수집한 개인정보는 목적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 개별 법령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을 허용한 경우, 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음

1.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정당화 사유(제15조 제1항)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항 제1호)

- ‘동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승낙의 의사표시로서(서명날인, 구두, 홈페이지 동의 등)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동의의 사례

- 신용카드 발급 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에 기명날인하는 경우
- 인터넷 포털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체크하는 경우
- 자문비 지급 신청서 작성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체크하는 경우

※ 동의 받을 때 의무 고지사항

- ①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 항목 ③ 보유·이용 기간
- ④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예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수집·이용 목적 : 000000000000
- 수집 항목 : 0000000000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0000000000
-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00000000 없습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장소 등에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도 된다는 명시적인 동의의사를 표시하거나, 홈페이지의 성격, 게시물 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동의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 (표준지침 제6조 제4항)

* ‘공개된 개인정보’

의결례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온라인에 공개된 게시물 수집·이용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범죄 수사와 내사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조사활동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을 개발하여 인터넷·SNS 등 온라인에 공개된 게시물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범죄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분석하여 해당 게시물에 포함된 성명,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주소, 업체명 등을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위반된다(보호위원회 결정 제2019-09-130호).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제1항 제2호)

- ‘법률’에서 수집·이용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어야 함
- 따라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시

- 신용정보법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는 행위.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 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병역법」 제11조의2(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 또는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를 위하여 파견된 군의관(軍醫官) 등이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등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 내역,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생건강기록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 대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여 그 의무 준수를 위해 개인정보를 불가피하게 수집·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말함

※ 법령상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

- 「소비자기본법」에서 사업자가 결함상품 리콜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의 게시판 사용자의 본인 확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일반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집·이용은 정보주체로부터 보다는 제3자로부터의 수집·이용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음

판례

법률에 제3자에게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제공 가능

법률에서 수집·이용을 요구하거나 허용하기만 하고 상대방(제3자)에게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도 제3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대법원 2012다 105482 판결, 2016.3.10. 선고).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제1항 제3호)**

-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 등’에서 소관업무를 정하고 있고 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불가피하게 수집할 수 밖에 없는 경우를 말함
- 예를 들어, 정부조직법, 각 기관별 직제령, 직제규칙 등 조직법뿐 아니라 「주민등록법」, 「지능정보화기본법」 등 작용법 등에서 공공기관에 소관업무 수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 하나의 공공기관에 소속된 내부 직원끼리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자 내의 개인정보취급자간 전달이므로 가능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예시

- 인사혁신처가 「정부조직법」 제22조의3,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등 관리를 위해 공무원 인사 관련파일을 수집·이용하거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라 보험급여관리 등을 위하여 진료내역 등을 수집·이용하는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제1항 제4호)

- 이 경우까지 동의를 요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제 활동을 제약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동의 없이도 수집 허용

※ 계약 체결 사례

- 보험회사가 계약체결을 위해 청약자의 자동차사고 이력, 다른 유사보험의 가입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거래 체결 전에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평가를 위해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 계약 이행 사례

-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주소,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경품행사시 당첨자에게 경품을 발송하기 위해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항 제5호)

-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란 정보주체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이익과 손해를 비교하여 이익이 월등한 경우를 말하며, 급박한지 여부는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여부를 말함

※ 급박한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 조난·홍수 등으로 실종되거나 고립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연락처, 주소, 위치정보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집안에 있는 자녀를 구하기 위해 해당 자녀 또는 부모의 이동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1항 제6호)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비교하여 전자의 이익이 명백하게 월등한 경우를 말함
-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관련성이 높고 합리적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인지 판단은 정보주체의 이익과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정당한 이익 달성 사례

- 사업자가 요금정산·채권추심 등을 위하여 고객의 서비스 이용내역, 과금내역 등의 개인정보를 생성·관리하는 경우
- 사업자가 고객과의 소송이나 분쟁에 대비하여 요금 정산자료, 고객의 민원제기 내용 및 대응 자료 등을 수집·관리하는 경우

의결례

철도 운전실에 CCTV를 설치하여 두 손을 촬영하는 것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사고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하여 폐쇄된 공간인 철도차량 운전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각종 계기판과 안전운행장치 등으로 구성된 운전제어대와 그 위에 위치한 기관사의 두 손을 촬영하고, 촬영된 영상정보를 최장 7일간 각 철도차량 운전실 저장장치에 저장하고 철도사고 시에만 사고원인 규명을 위하여 열람·이용한 사안에서 ① 철도사고 원인규명과 승객의 안전 확보가 한국철도공사의 정당한 이익에 해당하며 ② 본건 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그러한 목적 달성에 필요하며 ③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④ 본건 영상정보의 촬영 대상, 보관 기간 등을 감안하면 한국철도공사의 정당한 이익이 본건 영상정보의 위와 같은 촬영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정보주체(기관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다 명백히 우선한다는 이유로 법 제15조 제1항 제6호 사유가 있다(보호위원회 결정 제2015-12-22호).

조 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75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 제2항 제1호	제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범위 확대(제15조 제3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음

※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 관련성 판단의 고려 요소

-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수행 여부

- 위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함

참고 사례

EU의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사례

- LP음반 판매 회사가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정기적으로 LP음반의 카탈로그를 보내다가, 오디오 테이프, CD, DVD형태의 음악 카탈로그도 보내는 경우(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 2020, 96면)
- 약국에서 다른 고객의 의약품을 잘못 가져간 경우, 약국이 고객에게 위 사실을 알리기위하여 처방 병원으로부터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전화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 법령표준해설례. 25)

3.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제16조)

-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단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
- 필요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 거부 가능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수집
-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등 제공 거부 금지

조 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75조 제2항 제2호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3항 위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동의를 받는 방법(제22조)

-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함(제1항)
-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표기해야 함(제2항)
-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함(제3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필수정보(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선택정보(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함
 - 이 경우 이것이 선택정보가 아니라 필수정보(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함
 - 그러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이것이 선택정보인지 필수정보인지 불분명하다면 선택정보라고 생각하고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함

● **홍보 또는 판매가 목적일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 받아야 함(제4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 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이와 같은 특칙은 업무위탁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의 경우에도 있는데,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음(제26조 제3항).

●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됨(제5항)**

●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제6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음

위반행위	벌칙
제1항 ~ 제4항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항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6항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동의를 구체적인 방법

각각 동의	① 수집·이용 동의(제15조 제1항 제1호) ② 제3자 제공 동의(제17조 제1항 제1호) ③ 국외 제3자 제공 동의(제17조 제3항) ④ 마케팅 목적 처리 동의(제 22조 제3항) ⑤ 법정대리인의 동의(제22조 제5항)
별도 동의	⑥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제18조 제2항 제1호) ⑦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제한(제19조 제1호) ⑧ 민감정보 처리 동의(제23조 제1항 제1호) ⑨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제24조 제1항 제1호)

▶ 동의서에 특히 명확히 표시해야 하는 항목(시행령 제17조 제2항)

- ①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및 판매 권유, 기타 이와 관련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 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 ②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④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및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각각 동의를 받는 사례]

문자알림서비스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예시)			
<p>○ 00병원은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p>			
<p>□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p>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전화번호	예방접종 안내, 최신의학정보	<u>1년</u>	
<p>※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p>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p>□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p>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u>00연구소</u>	<u>맞출형 의학정보수집</u>	성별, 결혼 여부, 연령, 관심분야	<u>1년</u>
<p>※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p>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p><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p>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진료기록부 작성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병명	「의료법」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00병원장 귀중			

출처: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 14쪽.

[별도 동의를 받는 사례]

< 작성 예시 >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여권번호	출입증 발급 시, 본인확인 용도	2년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 제공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온라인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정당한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해당 법정대리인이 체크하도록 구현합니다.
- * 동의함 체크란에 디폴트로 체크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5. 동의의 철회(제39조의7)

● 철회 자유의 원칙

- 정보주체가 가지는 정보에 대한 자신의 결정권은 정보 수집뿐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므로,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어야 함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언제든지 동의 철회 가능

- 법 제39조의7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특례에서 동의 철회 자유를 명시적으로 인정
- 이와 같이 철회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도록 규정

조 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75조 제2항 제12호의5	제39조의7 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동의 철회·열람·정정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75조 제2항 제12호의6	제39조의7 제3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와 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Question 1

민원처리를 위해 다른 직원에게 민원인 전화번호를 전달해도 되는지?
(표준 해석례 20)

고객응대 등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직원에게 민원을 전달하고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요?

Answer

| 민간은 동의를 받거나 계약체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화번호 전달이 가능하나 공공은 법령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 전달이 가능

- (민간)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4호)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만약 물건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등 계약과 관련한 민원의 처리인 경우 불가피하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 (공공) 공공기관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한 민원에 대해 처리 담당자 지정 및 처리협조 등을 위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음
 - 다만, 권한없는 직원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 처리행위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음

Question 2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족도 조사를 해도 되는지?**
(표준 해석례 21)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고객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해도 되는지요?

Answer

- | 민간은 동의를 받거나 계약체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받지 않고 만족도 조사가 가능하나 공공은 법령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족도 조사가 가능**
- (민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나
 - 물건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등 계약과 관련한 만족도 조사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 (공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음

**Question 3 코로나 방역수칙 관련 펜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는?
(표준 해석례 22)**

관광지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5인 이상 투숙시 가족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 펜션 운영자가 5인 이상 투숙시 가족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관련 서류를 받아서 보관하지 말고 확인 후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따라서 이 경우 펜션 운영자가 5인 이상 투숙시 가족인지 여부를인하기 위한 서류는 받아서 보관하지 말고 확인 후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Q28. 호텔, 펜션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 ◆ 수집정보 : 예약자 성명, 차량번호(차종), 긴급 연락처
- ◆ 확인정보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은 필요한

경우 확인 후 서명받고 돌려줌

※ 서류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정보주체에게 돌려주는 것은 확인행위로서 개인정보의 처리가 아님

Question 4 **개인 진료기록을 의료진이 사전에 열람한 경우 불법인지?**
(표준 해석례 23)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후 다시 재입원하였을 때 1차 입원내역을 환자가 열람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동 간호사가 진료목적으로 열람하였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Answer

| 환자의 동의를 받아 1차 진료기록을 사전 열람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나,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에 의료기관 종사자의 환자 의료기록 열람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보호법을 적용하여야 함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음
 - 따라서 재입원 환자의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1차 진료기록을 사전 열람하려면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그런데 「의료법」에는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입니다.

Question 5 **자체감사를 위해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해도 되는지?**
(표준 해석례 32)

기관 내부에서 자체감사를 위하여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건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 당해 기관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 직원인지, 민간기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공공기관은 동의 없이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지만, 민간기관은 소속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공공기관인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과 제3항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공무원 및 소속 직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6.7.11. 제2016-11-19호 결정 참조).
 - 따라서 공공기관은 동의 없이 자체감사를 위하여 소속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민간기관인 경우) 민간기관(회사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소속 직원의 동의를 받거나 노사협의를 통해 자체감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거나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가능합니다.

Question 6

**청사 CCTV 영상을 기관 자체감사에 이용해도 되는지?
(표준 해석례 33)**

소속 공무원의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의 부당수령 등에 대한 제보나 의심 정황 발생 시, 제보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사에 방호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Answer

| 민간은 소속 직원의 동의 또는 노사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은 공공감사법에 근거하여 청사의 CCTV 영상을 자체감사에 이용할 수 있음

- (민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할 수 있으므로 소속직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CCTV 영상정보를

자체감사에 이용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음

- (공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3항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공무원 및 소속 직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보호위원회 결정 제2021-106-011호 참조)
 - 따라서, 공공기관이 청사관리 목적으로 설치하여 수집한 CCTV 영상정보를 자체감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정보주체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Question 7 SNS로 회원가입 시 동의받지 않고 추가정보를 수집해도 되는지? (표준 해석례 47)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름, 휴대폰 번호를 수집 및 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SNS 계정을 통한 간편 회원가입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SNS 회사로부터 이용자의 이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SNS 회사에서 받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우리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그 사실을 명시하고만 있습니다. SNS 회사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SNS 회사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 일반적인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39조의3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수집·이용되는 개인정보를 명확하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때 동意的 방법은 법 제22조에 따릅니다.
 - 따라서, 본인의 회사에서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내용 이외에 추가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제공받을 때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별도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기재하여 알리는 것만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Question 8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철회를 주장하며 그 파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가 법령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에 기반한 것이라면 파기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4호는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파기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법령에 기반한 것’인 경우는 파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면 동의와 무관하게 별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파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사례 중심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Ⅲ

개인정보의 제공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3.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4. 영업의 양도 등
5.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
6.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III | 개인정보의 제공

법률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시행령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
표준지침	제7조(개인정보의 제공)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개념

◆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표준지침 제7조 제1항)

☞ 개인정보의 제공에는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수기문서를 전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DB 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허용하여 열람·복사가 가능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등도 포함됨. 단, 개인정보의 제공과 아래 다른 개념과의 구분에 주의를 요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란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과 수탁자(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는 제3자에서 제외됨(표준지침 제7조 제2항).

※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구분해야 할 개념

- 개인정보의 이용: 개인정보처리자(기관·단체·법인 등) 내에서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 이전 없이 스스로의 목적으로 쓰는 것(예: 같은 개인정보처리자 내의 다른 부서가 이용) → 이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의 제공이 아님

- 업무위탁: ‘업무위탁’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제3자(수탁자)에게 이전되지만, ‘제공’은 제공받는 자의 업무를 처리할 목적 및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가 이전된다는 점이 차이점 → 업무위탁의 경우 위탁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의 제공이 아님 → 법 제26조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공과 관련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영업의 양도·합병: 개인정보의 처리 형태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리주체만 변한다는 점에서 ‘제공’과는 차이가 있음 → 법 제27조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공과 관련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이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먼저 그 목적, 형태, 당사자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것이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적인 이용, 제3자 제공, 업무위탁, 영업양도·합병 중에서 어느 개념에 해당 하는지 판단하여야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정할 수 있음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7조 제1항 제1호)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그 동의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가능함.

※ 여기에서 말하는 동의는 정보주체로부터 미리 받아 둔 동의를 말하며, 기존에 받은 동의의 범위를 넘어서 제3자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규율됨.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을 때의 의무 고지사항(제17조 제2항)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 ②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⑤ 동의 거부권이 존재하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동의서 중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부분 작성 예시

제공 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 주식회사	성명, 나이 전화번호	마케팅 및 홍보	1년 6개월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	--------------------------	-----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출처: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 XX서점은 영업의 특성상 제휴업체가 빈번히 변경된다는 이유로 회원가입신청서상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휴업체명) 및 개인정보의 제공목적”을 고지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여러 제휴업체와 제공·공유함
- XX마트는 “개장 기념 경품이벤트”를 실시하면서,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정보가 제휴 생명보험사에 제공되어 「휴일 무료 상해보험」에 가입된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제휴업체에 제공함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 **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 제2항 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제17조 제1항 제2호)**

– 법률에 제3자 제공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 법률이 구체적으로 제3자 제공을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

- 시·군·구의 장의 공직선거 입후보자에 대한 선거인명부 교부(「공직선거법」 제46조)
- 보험요율산출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계약자 교통법규위반 개인정보 제공(「보험업법」 제176조)

-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제3자 제공이 필요한 경우

※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의무 이행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불가피하게 수집·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법률’에 제한되지 않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의무도 포함됨.

※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제3자 제공이 필요한 경우의 예시

-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의 강사명단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의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이행하기 위한 교육감으로의 개인정보의 제공
- 소득지급자의 소득귀속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의무(「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8조)를 이행하기 위한 과세관청으로의 개인정보의 제공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로서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예시

- 「정부조직법」 및 각 기관별 직제·직제규칙, 개별 조직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소관 사무
- 「주민등록법」, 「국세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소관법령에 의해서 부여된 권한과 의무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등

※ ‘불가피한 경우’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법령 등에서 해당 공공기관에 부여하고 있는 권한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공공기관이 민원업무를 쉽게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피민원인이나 피민원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면 그 수집 목적 범위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예시

- 동사무소나 경찰관서가 시급히 수술 등의 의료조치가 필요한 교통사고 환자의 연락처를 의료기관에 알려주는 행위

Question 1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이름만 공개해도 위법한지? (표준 해석례 14)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목록에 개인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 공개시스템 등에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민간의 경우에도 대표자 성명을 비롯한 임원진과 업무 담당자의 이름, 개인 연락처, 사진 등은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Question 2 졸업앨범에 교사의 사진을 동의받지 않고 넣어도 되는지? (표준 해석례 16)

학생들의 졸업앨범을 제작하려 합니다. 여기에는 교직원들의 사진과 연락처가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교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만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요?

Answer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 졸업앨범을 제작할 때 앨범에 수록될 교직원에게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법률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시행령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표준지침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1)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제18조 제1항)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이란 정보주체에게 이용·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범위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용·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설명)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은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등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됨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예시

- 공무원들에게 업무용으로 발급한 이메일 계정 주소로 사전 동의절차 없이 교육 등 마케팅 홍보 자료를 발송한 경우
- 조세 담당 공무원이 자신과 채권·채무 관계로 소송 중인 사람에 관한 납세정보를 조회하여 소송에 이용한 경우
- 상품배송을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 받지 않은 자사의 별도 상품·서비스의 홍보에 이용
- 고객 만족도 조사, 판촉행사, 경품행사에 응모하기 위하여 입력한 개인정보를 사전에 동의 받지 않고 자사의 할인판매행사 안내용 광고물 발송에 이용
- A/S센터에서 고객 불만 및 불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자사의 신상품 광고에 이용
-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과 공개 취지 등에 비추어 그 공개된 목적을 넘어 DB마케팅을 위하여 수집한 후 이용하는 행위

※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의 예시

- 주민센터 복지카드 담당 공무원이 복지카드 신청자의 개인정보(홍보 마케팅 등으로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하지 않은 경우)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설학습지 회사에 제공
- 홈쇼핑 회사가 주문 상품을 배달하기 위해 수집한 고객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계열 콘도미니엄사에 제공하여 콘도미니엄 판매용 홍보자료 발송에 활용

2)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경우(제18조 제2항)

※ 유의사항

- 아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예외 사유만 적용됨
-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는 개인정보처리자(목적 외 이용·제공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함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8조 제2항 제1호)

-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18조 제2항 제2호)

- '특별한 규정'은 '법률'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시행규칙에만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되지 않음.
- 또한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야 하며, '법령상 의무이행'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되지 않음.

※ 목적 외 이용·제공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다만, 해당 법률에 목적 외 이용·제공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업무의 목적,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목적 외 이용·제공 대상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될 수 있음(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14-133호 참고)

※ 목적 외 이용·제공이 규정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 예시

- 소득세법 제17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조사, 질문
- 감사원법 제27조에 따른 감사원의 자료 요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자료제공 요구
- 병역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병무청장의 자료제공 요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 등
-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참고인 진술 청취
- 국회법 제128조 제1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로서 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각 목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8조 제2항 제3호)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제공이 허용됨.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제18조 제2항 제5호)

-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이 가능함.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8조 제2항 제6호)

-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나 국제협정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조약 등의 이행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음.

●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8조 제2항 제7호)

-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비록 범죄 수사 목적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따라서만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함.
- ‘공공기관’의 경우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음. 단, 영장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범죄의 형태나 경중, 정보주체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 이용이 없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것임.

의결례

‘피내사자’의 개인정보 제공 가능 여부

내사는 범죄혐의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 인지 전에 행해지는 수사기관 내부의 조사 활동으로서 수사와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피내사자의 개인정보 제공이 불가피하다면 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범죄의 수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보호위원회 결정 제2016-07-15호).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8조 제2항 제8호)

-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 자료제출명령 등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목적 외로 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18조 제2항 제9호)

- 형, 보호·치료감호, 보호처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을 허용하고 있음.

3) 목적 외 이용·제공시 동의를 방법(제18조 제3항)

- 당초 동의와 구분되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는 그 성질상 최초 동의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므로, 목적 외 이용·제공 사유 발생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새롭게 받아야 함.

- 동의 획득시 고지사항

※ 목적 외 ‘이용’의 경우 고지사항

- ①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 ②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④ 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에 관한 사항

※ 목적 외 ‘제공’의 경우 고지사항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 ②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⑤ 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4) 목적 외 이용·제공의 공개(제18조 제4항)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제공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목적 외 이용·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또는 제공 일자·목적·항목에 관하여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

- 단,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해 개인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요구되지 아니함.

5) 목적 외 ‘제공’시의 보호조치(제18조 제5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공과 동시에 또는 필요한 경우 제공한 이후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요청하여야 함.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표준지침 제8조 제1항).

조 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71조 제2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제18조 제1항·제2항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9조의15 제1항 제1호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제18조 제1항·제2항 위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
제75조 제2항 제1호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제18조 제3항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Question 3 병원에서 환자 연락처를 약국에 제공해도 되는지? (표준 해석례 25)

약국에서 저희 병원 처방전을 제출한 환자분께 약을 잘못 조제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급히 그 환자분 연락처를 물어보는데, 환자분 연락처를 약국에 알려줘도 되는 건가요?

Answer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병원에서 위 규정들에 따른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환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약국에 제공할 수 있으나, 사전에 위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여야 합니다(법 시행령 §14의2 ②).

Question 4 공공기관 근무자의 소속, 성명, 내선번호를 공개해도 되는지? (표준 해석례 34)

공공기관의 조직도에 공개되는 공무원(계약직 포함)의 소속, 이름, 내선번호가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인지 아니면 공개해도 무방한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비공개정보에서 제외합니다.
- 따라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공공기관 근무자, 위원회 위원, 통리장 등의 성명을 공개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아닌 업무별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5 ARS로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를 받아도 되는지? (표준 해석례 48)

매장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에게 홍보 자료를 제공하고 포인트를 적립하여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ARS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를 받으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Answer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서면,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으므로 동의받은 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
- 그런데 전화로 동의를 받을 경우 전화를 건 사실만으로 동의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특정 번호를 누르거나 동의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방법으로 동의의 의사표현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Question 6 **코로나 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도 되는지?**
(표준 해석례 8)

감염병 확진자와 관련하여, “○○시 #9번 확진자 ○○센터 ○○부장” 등 직함이나 소속기관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이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또 그와 같은 공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 부분은 실제 행정지역명과 소속기관명이 들어갈 예정

Answer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법 제2조 제1호).

- 일반적으로 행정구역, 소속기관명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4번 확진자, 직책 또는 직함’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확진자에 대한 동선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개가 가능합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020. 10. 7.자「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은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단,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① 개인별 이동경로 형태가 아닌 장소는 목록 형태로 공개하며 ②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uestion 7 **회사에서 순찰자 순찰정보 등을 공개된 장소에 게시해도 되는지?**
(표준 해석례 9)

방호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방호직의 특성상 근무중 순찰을 실시하는데 관리자가 공개적인 게시판에 순찰보고서라는 항목으로 해당근무자의 성명, 순찰포인트(순찰 위치), 누락 여부 등을 기재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닌지요?

Answer

|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 따라서,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상호), 소재지 주소 및 전화번호, 업무별 연락처, 영업실적 등 전적으로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반면,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등 사업체 운영에 관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표자 성명을 비롯한 임원진과 업무 담당자의 이름, 개인 연락처, 사진 등은 법인이나 단체에 관한 정보이면서 동시에 상황에 따라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결국, 회사 순찰근무자의 순찰 현황은 법인에 대한 정보이면서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도 있어 내부 공개가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공개하는 경우 성명의 일부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함이 바람직합니다.

Question 8 관리사무소 소장 전화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위법한지? (표준 해석례 70)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입주민 한 분이 개인적으로 본인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알려줬더니 최근 다수의 입주민들이 저의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을 제기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위 입주민이 저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관리소장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를 사적으로 제공받아 제3자에게 제공하면 사인(私人)의 행위로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 그러나 휴대전화 번호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제공받은 경우 제3자에게 알려주면 법 제19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공동주택과 관련한 개인정보처리자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개인정보취급자(직원, 수탁자, 입주자대표, 선거관리위원)가 업무로 알게 된 관리소장의 휴대전화 번호를 권한없는 제3자에 제공한 경우 제59조 제2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3.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법률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표준지침	제16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17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1)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26조)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이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함

☞ (설명) 업무위탁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모두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게 되지만, 업무위탁의 경우에는 업무위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업무처리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고 위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제3자 제공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고 제3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업무위탁과 제3자 제공의 비교]

구분	업무위탁	제3자 제공
관련조항	제26조	제17조
예시	배송업무 위탁, TM 위탁 등	사업제휴, 개인정보 판매
이전목적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 (수탁업무 처리)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처리
예측 가능성	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가능 (정보주체의 신뢰 범위 내)	정보주체가 사전 예측 곤란 (정보주체의 신뢰 범위 밖)
이전방법	원칙: 위탁사실 공개 예외: 위탁사실 고지(마케팅 업무 위탁)	원칙: 제공목적 등 고지 후 정보주체 동의 획득
관리·감독책임	위탁자 책임	제공받는 자 책임
손해배상책임	위탁자 부담(사용자 책임)	제공받는 자 부담

출처: 개인정보 보호법 해설서

2) 업무위탁의 유형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 개인정보의 수집·관리업무 그 자체를 위탁하는 경우

● 개인정보 ‘취급’ 업무 위탁

-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이 수반되는 일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 이는 다시 홍보·판매권유 등 마케팅업무를 위탁과 상품배달·애프터서비스 등 계약이행업무를 위탁으로 구분될 수 있음.

3) 업무위탁의 절차·방법

● 위탁 목적 등의 문서화

- 업무위탁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 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계약서 등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내용 등의 공개

- 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하며(영 제28조 제2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함(영 제28조 제3항).

※ 위탁업무 등의 공개방법

1.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실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4) 마케팅(홍보, 판매권유 등) 업무 위탁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의무

-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영 제28조 제4항),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통지해야 함.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는 경우

- 위탁자가 과실 없이 서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함.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함.

5) 수탁자 선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수탁자 선정시의 고려사항(표준지침 제16조)

1. 수탁자의 인력
2. 수탁자의 물적 시설
3. 수탁자의 재정 부담능력
4. 수탁자의 기술 보유의 정도
5. 수탁자의 책임능력 등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역량

6) 업무위탁자의 책임과 의무

● 수탁자에 대한 교육 및 감독의무

-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를 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가 법령 및 위·수탁 계약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함.

● 수탁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탁자의 손해배상책임

-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게 되며,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책임(대위책임)을 부담함. 단, 만약 위탁자가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수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7) 업무수탁자의 책임과 의무

● 위탁받은 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제공 금지

-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금지되는 경우의 예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이후, 위탁 업무와 별개로 수탁자의 목적으로 마케팅 등을 하는 행위는 금지됨

●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등 준용

- 수탁자도 보호법의 적용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며, 수탁자의 법규 준수 의무를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문으로 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함. 다만, 수탁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 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장)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자에 관한 조치의무(표준지침 제17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위탁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가 정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조 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75조 제4항 제5호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위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제26조 제2항 위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 제2항 제1호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을 알리지 아니한 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9조의15 제1항 제4호	수탁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제26조 제4항 관련)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 과징금

Question 9 **간편결제사에 고객의 결제를 맡기면 위수탁에 해당하는지? (표준 해석례 64)**

당사의 결제방식은 이용자가 간편결제 서비스사에 별도 가입 후 등록된 카드 또는 선불결제한 포인트로 결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가 간편결제 서비스사에게 제공하는 고객 정보는 ID와 결제상품정보이며, 결제처리 결과만 통보받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계로 보아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및 위탁자의 관리·감독이 필요한지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고,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지도 감독하는 등 위탁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업무위탁’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모두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지만, 업무위탁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처리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고 수탁자가 위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제3자 제공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고 제3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 예를 들면, 업무위탁은 전자투표 대행, 회계처리 대행, 간편결제 대행 등 위탁자의 업무를 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형태이고, 제3자 제공은 제휴사 복지포인트를 매개로 카드운영, 제휴사 포인트로 쇼핑몰 판매 등 제휴사의 업무처리를 매개로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형태입니다.

Question 10 개인정보 처리 위탁자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해야 하는지? (표준 해석례 63)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위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공개하면 되는지요?

Answer

| 법 제26조 제2항,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위탁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30조 제1항 제4호는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고,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기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도록 하였으므로 수탁자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야 합니다.

Question 11 산업안전보건법의 직무교육 기관은 수탁사에 해당하는지? (표준 해석례 65)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해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기관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교육을 진행하는 안전보건 교육기관(예: 대한산업안전협회)은 개인정보 처리 수탁사에 해당하는지요?

Answer

| ‘업무위탁’과 개인정보‘제3자 제공’ 모두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지만, 업무위탁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처리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고 수탁자가 위탁자인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제3자 제공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정보 처리가 행해지고 제3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위탁교육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직무 교육 기관이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수탁자 모두 법 제26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영업의 양도 등

법률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시행령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표준지침	-

1) 영업양도·양수, 합병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제27조)

◆ 영업양도, 합병 등으로 영업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할 때에는 기존 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DB 등에 관한 권리·의무도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승계됨. 따라서 법은 정보 주체가 회원탈퇴, 동의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미리 부여하기 위한 통지의무 등을 규정함

☞ (설명) 영업의 양도·합병은 비록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는 ‘제공’과 유사함. 그러나 영업의 양도·합병은 그 개인정보를 이용한 업무의 형태는 변하지 않고 단지 개인정보의 관리 주체만 변한다는 점에서 ‘제공’과는 차이가 있음. 그에 따라 영업의 양도·합병에 대해서는 제27조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공과 관련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적용대상이 되는 영업양도·양수, 합병 등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의 경우 적용됨

2) 통지의무 부담자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개인 정보처리자

- 미리 해당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제27조 제1항, 영 제29조 제1항)

● 영업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

- 영업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함
- 다만,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통지의무가 없음

3) 영업양도·양수, 합병 등의 통지 방법

● 통지 수단

-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이용한 개별적 통지 방법

※ 예외

1. 영업양도자등이 과실 없이 서면등의 방법으로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함(영 제29조 제2항 본문)
2.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영 제29조 제2항 단서)

● 통지사항(제27조 제1항)

※ **영업양도·양수, 합병시 통지사항**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영업양수자등)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 통지 시기

-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함 → 실제 개인정보 DB가 이전되는 시점이 아닌 합병 등 계약체결 시점에 통지하여야 함
- 영업양수자등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사실 등을 통지할 때에는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함

※ **예외**

1. 영업양도자등이 과실 없이 서면등의 방법으로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함(영 제29조 제2항 본문)
2.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영 제29조 제2항 단서)

조 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75조 제4항 제6호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사실 미통지(제27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1조 제2호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27조 제3항 위반)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Question 12 병원을 영업양도하면서 고객정보를 넘길 때 고지해야 하는지?
(표준 해석례 66)

제가 운영하는 피부클리닉 병원을 다른 분께 영업양도하면서 기존 고객 정보를 넘겨드리려고 하는데 이를 고객에게 고지해야 하는지요?

Answer

| 법 제27조 제1항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알릴 수 없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의료기관 영업양수도 계약시점에 이를 미리 정보주체에게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5. 개인정보의 국외 제공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법률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시행령	제48조의10(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표준지침	-

1) 개인정보 국외 제공이 가능한 경우(제17조 제3항)

-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필요(제3항 전단)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①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②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⑤ 동의 거부권이 존재한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함)을 모두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위 고지 항목은 일반적인 제3자 제공의 경우와 같음

● 목적 외 제공 가능 여부

-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국외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제18조 제1항)

- 그러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동의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국외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다만, 공공기관은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동의 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국외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관한 특칙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국외 제3자 제공을 포함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3항이 아닌 제39조의12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제공’뿐만 아니라 ‘처리위탁’, ‘보관’ 등의 경우에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에 유의

- 단, ‘처리위탁·보관’의 경우에는 동의 획득을 위한 의무 고지사항 모두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거나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렸다면,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시 이용자 동의 획득을 위한 의무 고지사항

①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②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③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④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시 의무 보호조치(시행령 제48조의10)

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제48조의1 제1항에 따름) ②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③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위 의무 보호조치 사항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계약내용 등에도 반영하여야 함.

2) 개인정보 국외 이전(제17조 제3항 후단)

◆ 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국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처리를 국외의 제3자에게 위탁하기 위해 국외로 전송하는 경우 등도 포함하므로 국외 ‘제공’보다 개념이 넓은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하여 법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 금지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됨.
- 위탁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처리위탁에 관한 규정(제26조)에 따라 계약서 등 문서 작성, 위탁 관련 사항의 공개 등을 준수하여야 함

위반행위	벌칙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제39조의12 제2항 본문 위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 (제39조의15 제1항 제1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의무사항 모두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보관한 경우(제39조의12 제2항 단서 위반)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 제3항 제호)

6.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법률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시행령	-
표준지침	-

◆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수탁자)는 포함되지 않음.

☞ 본 규정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재제공)을 제한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그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8조가 적용되지 않고 제19조가 적용됨.

1)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제공 금지(제19조)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제공(재제공) 금지 원칙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단, 제공받은 목적 내의 이용·제공은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용됨.

※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수집한 정보를 해당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2) 목적 외 이용·제공이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 정보주체로부터의 별도의 동의 또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19조 각 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수집·이용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신용정보이용·제공자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조 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71조 제2호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19조 위반)	5년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9조의15 제1항 제1호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제19조 위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



사례 중심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IV

개인정보의 파기

1. 개인정보의 파기
2. 파기의무 예외
3. 법령상 보관 의무 있는 개인정보의 보존방법

IV | 개인정보의 파기

법률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표준지침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제11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고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 파기란 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파쇄 또는 소각하는 등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 (설명) 개인정보의 “파기”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파쇄 또는 소각하여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함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 (설명)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하여야 함

1. 개인정보의 파기(제21조)

●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제1항)

-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 폐지, 사업 종료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 없게 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 개인정보 파기(표준지침 제10조 제1항)
- 개인정보의 보존 필요성이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됨

※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사례

- 개인정보처리자가 당초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던 보유기간의 경과
- 동의를 받거나 법령 등에서 인정된 수집·이용·제공 목적의 달성
- 회원탈퇴, 제명, 계약관계 종료, 동의철회 등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의 법적 근거 소멸
- 개인정보처리자의 폐업·청산
- 대금 완전 변제일이나 채권 소멸시효 완성일

의결례

개인정보 파기 관련 법령 해석 요청 건

구 정보통신망법 제29제1항(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면서, 같은 항의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정보통신망법 및 현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 및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단서 조항의 “다른 법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 규정(위임 규정 포함)이 개인정보의 보존에 관하여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구 위원회 결정 제2014-25-29호).

●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제2항)

- 전자기적으로 기록된 개인정보는 사회 통념상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을 적용함(표준지침 제10조 제2항)
- 전자기적으로 기록된 개인정보는 전용 소자장비로 삭제 또는 덮어쓰기 등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하거나 매체를 파괴하여 복구할 수 없도록 함(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 제1항)

- 기록물, 인쇄물, 서면 등 기록매체는 물리적으로 파쇄하거나 소각함(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 제1항)

※ 개인정보 파기 방법 예시

-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예시) 개인정보가 저장된 회원가입신청서 등의 종이문서, 하드디스크나 자기테이프를 파쇄기로 파기하거나 용해, 또는 소각장, 소각로에서 태워서 파기 등

- 전용 소자장비 이용 삭제

(예시) 디가우저(Degausser)를 이용해 하드디스크나 자기테이프에 저장된 개인정보 삭제 등

-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예시) 완전 삭제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개인정보가 저장된 하드디스크에 대해 완전 포맷(3회 이상 권고), 데이터 영역에 무작위 값(0, 1 등)으로 덮어쓰기(3회 이상 권고), 해당 드라이브를 안전한 알고리즘 및 키 길이로 암호화 저장 후 삭제하고 암호화에 사용된 키 완전 폐기 및 무작위 값 덮어쓰기 등

- 보유기간이 경과한 일부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인 경우 파기대상 개인정보 삭제 후 해당 정보가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기록물 등은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 제2항)

※ 개인정보 일부 파기 사례

- 개인정보가 포함된 여러 파일 중, 특정 파일을 파기하는 경우
- 개인정보가 저장된 백업용 디스크나 테이프에서 보유기간이 만료된 특정 파일이나 특정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만 파기하는 경우
-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에서 탈퇴한 특정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 회원가입신청서 종이문서에 기록된 정보 중, 특정 필드의 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등

● 파기절차(제4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파기 사항을 기록 관리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책임하에 파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함(표준지침 제10조 제4항)

2. 파기의무 예외(제21조 제1항 단서)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함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표 1호)]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30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0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5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1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 파일별 보유기간 규정된 개별 법령 예시

법령 및 조문	보유대상 및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기록 보존기간 :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찰보존사무규칙 제8조(보존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확정사건기록 : 시효 완성시 - 구류 또는 과료 : 3년 - 사형 무기징역, 금고형 : 영구 - 10년 이상 유기징역, 금고형 : 영구 - 10년 미만 유기징역, 금고형 : 준영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기록보존)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결혼중개계약서 등의 기록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중개계약서,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등 :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법 제15조의3(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12(장부 및 서류의 보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경력인정서발급대상·자격검정합격자명부 : 영구 - 그 밖의 인정 및 검정관련 장부 및 서류 :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14조(자료의 보존기간)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자료의 보존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사항 신고서 또는 병역사항 변동신고서 : 10년 -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 10년 - 제1호 및 제2호 외의 제출자료 :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3(서류의 보존)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서류 : 5년 - 처방전, 건강보험, 요양비 청구,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 :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부 및 증거서류 :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 :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관계 서류의 보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보존서류의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등,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성희롱 예방교육 확인, 성희롱 행위자 징계 등 조치,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및 허용, 육아휴직의 신청 및 허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및 허용 등 :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약관리법 제23조의2(판매·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3(판매·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등의 판매·구매 정보의 기록 : 3년

법령 및 조문	보유대상 및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서류의 보존)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1조(서류의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 3년 -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서류 : 5년 - 특수물질 취급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서류 : 3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거래관계 종료 : 5년(목적 달성 후 3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명부 : 5년 - 진료기록부 : 10년 - 처방전 : 2년 - 수술기록 : 10년 - 검사소견기록 : 5년 -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 5년 - 간호기록부 : 5년 - 조산기록부 : 5년 - 진단서 등 부분(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 :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 기록의 대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의7(거래기록 보존기간 및 약관 변경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만원 이하 거래기록 : 1년 - 1만원 초과 거래기록 :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기본법 제144조(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부 및 증거서류 : 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통신사실 관한 자료 : 12개월 - 시외·시내전화역무 관련 통신사실확인자료 : 6개월 -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정보통신 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 추적자료 : 3개월

● 개별 법령에서 보존기간으로 정한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3. 법령상 보관 의무 있는 개인정보의 보존방법(제21조 제3항)

-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해당 개인정보 또는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함(표준지침 제11조 제1항)
 - 미파기 개인정보가 기존 개인정보와 혼재되어 있으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유출, 오·남용의 위험성이 커지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
 - 미파기 개인정보는 다른 법령에서 보존하도록 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함
 - ※ 미파기 개인정보와 기존 개인정보가 혼재된 경우 예시
 - 회원 대상 메일 발송시 탈퇴 회원에게도 같이 발송하는 행위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파일 등을 분리 저장·관리한다는 점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함(표준지침 제11조 제2항)


[개인정보 파기 조치 예시]

➤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함


전체 파기



완전파괴
(소각·파쇄 등)



전용 소자장비
이용하여 삭제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게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위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함

일부 파기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조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73조 제1의 2호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제21조 제1항, 제39조의14)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조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75조 제2항 제4호	개인정보 파기 등 필요한 조치 아니한 경우(제21조 제1항, 제39조의6(제39조의14 준용 포함))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 제4항 제1호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경우(제21조 제3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Question 1 **이용약관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보관해도 되는지?**
(표준 해석례 13)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업체입니다. 당사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유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이용약관 내 보유기간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보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용약관 내 보유기간은 2개월이며, 전자상거래법에서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유기간은 5년임

Answer

|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해당 기간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함
 -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존할 수 있음
 - 따라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은 보존기간 5년을 적용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거래기록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보존할 수 있음

Question 2 **퇴직한 직장에서 오는 문자메시지를 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표준 해석례 39)

안녕하세요. 2017년에 퇴직한 곳에서 아직도 단체 문자 메시지가 제 휴대폰으로 전송이 되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 어떤 서류에 동의했는지 모르겠지만, 퇴사하였다면 그 정보가 삭제되어야 맞지 않은가 싶어서요.

Answer

| 해당 직장에 개인정보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를 요청하여 원치 않는 메시지 전송을 정지시킬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였음
 - 한편, 법 제36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제 37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때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 정보주체에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알려야 함.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된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 한편, 정보주체로부터 처리의 정지를 요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는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 ※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등을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됨

Question 3 **회원 개인정보 파기시 연계 회원번호도 파기해야 하는지?**
(표준 해석례 40)

회원관리 시스템에서 회원 탈퇴 시,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하는 정보는 모두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이때, 생성정보였던, 회원번호 000001도 함께 파기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회원번호 신규 생성 등을 위하여, 회원번호만 따로 순차적으로 관리하려 합니다.

Answer

|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숫자는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파기 불필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따라서,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는 모두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함
 - 다만, 법 제58조의2에 따라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따라서, 관련정보가 모두 파기되어 연계 생성된 회원번호를 더 이상 누구의 개인정보인지 알아볼 수 없다면 이는 익명 정보로서 파기하지 않아도 됨

Question 4 **개인정보를 보유기간 경과 후 연장 보존해도 되는지?**
(표준 해석례 41)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대해 '회원탈퇴 즉시 삭제'로 고지하고 있으나, 쿠폰 부정사용 등 불량회원을 식별하기 위해 일부 개인정보를 탈퇴 후 1개월 동안 보존하고 있는 경우, 수집동의서에 회원탈퇴 후 1개월까지 보관이라 명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Answer

| 개인정보 추가보관에 대한 동의를 받아 추가로 보관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추가 보관에 대하여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회원이 탈퇴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회원 가입시 혹은 탈퇴 이전에 정보주체(회원)에게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필요한 범위내 추가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5 **법정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연장하여 보존해도 되는지?**
(표준 해석례 42)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등 개인정보 보존기간을 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결제와 관련하여, 7년전 기록에 대한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 보존기간 이상 개인정보를 보존해도 되는지요?

Answer

| 고객에게 연장보존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법령에서 보존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 보존기간이 경과되면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나, 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고객에게 알리고 새로 동의를 받으면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음

Question 6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때 개인정보는 언제까지 보존해야 하는지?**
(표준 해석례 43)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급하는 지류 영수증을 전자영수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 1항(전자문서의 작성자, 수신자 및 송신·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에 따라, 전자영수증을 휴대폰으로 발급할 경우, 보존기간은 몇 년간 보존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의 경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한편, 같은 법 제6조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음
- 따라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관련 자료 보존기간에 따라 보존이 가능하고,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함

1.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2.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5년
3. 대금결제 및 재화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4.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Question 7 온라인쇼핑몰 부정행위 고객의 개인정보를 영구보존해도 되는지? (표준 해석례 44)

안녕하세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각종 이벤트를 개최할 때 별도 본인인증이 없는 간편가입 회원도 ID별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자, 이를 악용하여 수백개의 ID를 생성하여 멤버십포인트를 적립 및 사용하는 회원이 있어 회원가입 동의를 받아 부정고객에 한해 개인정보를 '영구' 보존하면서 걸러내려고 하는데, 해도 괜찮은지요?

Answer

| 개인정보 영구 보존은 보존 기한이 없으므로 법에 위반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따라서, 별도의 보존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까지 보유한다는 형태의 동의를 구하면 되나, '영구 보존'은 이러한 기한이 없으므로 법에 위반됨
- ※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영구보존할 수 있음

Question 8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매일 파기해야 되는지?
(표준 해석례 45)

안녕하세요? 병원에선 의료법 보존기간에 따라 환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매일 같이 수집되는 의료기록들에 대하여 정확히 보존기간이 지나 파기하려면 매일 파기를 진행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방법이 없지요?

① 2020.12.04. 진료기록의 파기일자 : 2025.12.04.
② 2020.12.05. 진료기록의 파기일자 : 2025.12.05.

Answer

| 보존기간 만료 후 5일째 파기가 허용되므로 최대 5일 단위 주기로 파기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태 등으로 인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므로 최대 5일 단위 주기로 파기할 수 있음
 -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해 파기가 지체된 경우에는 사유가 종료된 즉시 파기하여야 함

Question 9 키즈카페는 CCTV 영상을 며칠간 보관해야 하나요?
(표준 해석례 62)

안녕하세요? 찾아보니 일반 상가 또는 가게의 CCTV는 최대 30일까지 보관가능이라고 되어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 60일로 되어 있던데, 키즈카페(어린이 놀이카페)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최대 며칠까지 법적으로 보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 보유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동안 보관하되, 보유기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30일 이내 보관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운영자는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 촬영기간, 보관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때 보관기간은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면 됨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1조 제2항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할 수 있음
- 한편, 「영유아 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다른 법령에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사례 중심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V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의 제한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원칙적 금지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예외적 허용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절차 및 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의무
6.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대응

V |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의 제한

법률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 제한)
시행령	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의 예외)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제2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표준지침	제35조(적용범위) 제3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제37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제38조(사전의견 수렴) 제39조(안내판의 설치) 제40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제41조(보관 및 파기) 제42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제4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제45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46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제47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제48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가이드라인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1.04.)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1.04.)

<p>영상정보 처리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함 ◆ 법 제2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쇄회로 텔레비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 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p>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공개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쇄회로텔레비전 및 네트워크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더라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을 말함
<p>개인영상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함
<p>공개된 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된 장소”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출입, 접근 또는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장소를 말함 ◆ 이에 대하여 “비공개 장소”란 특정인에 한하여 출입, 접근 또는 통행이 허용되거나 그 출입, 접근 또는 통행이 금지되는 장소를 말함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개념(제2조 제7호)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건물 실내, 도로, 공원 등 일정한 공간에 기반하여 설치되어 일정한 공간이나 구역을 촬영하여야 함. 즉, 고정된 장소 이외에 이동성이 있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그 촬영기기의 설치 위치와 촬영 범위가 일정하게 한정되어 있다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함
 - ※ 버스, 택시 등 영업용 차량 내부에 설치된 CCTV는 차량 내부라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일정한 승객 탑승공간을 촬영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함
 - ※ '차량 블랙박스'와 같이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차량 주행에 따라 외부를 촬영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촬영 대상·범위가 수시로 변동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되지 않음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어느 정도 고정적·항구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설치되어야 함
 - ※ 개인이 휴대하고 있는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으로 촬영 공간과 촬영 대상 범위를 바꾸어 가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 ※ 개인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공간에 설치해 두고 영상을 촬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고정적·항구적으로 운영할 목적이 아닌 이상은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가 아님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아닌 장치를 통하여 개인을 촬영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조항이나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음
 - ※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들)에 대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음
 -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할 것

- “사물”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그 보호 대상이 되는 사람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물로 한정하여야 함
 - ※ 천문대에 설치된 망원경은 비록 일정한 공간에 지속 설치되어 우주 공간(사물)을 촬영하고 있지만, 그 촬영 대상이 사람과 일정한 생활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포함되지 않음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은 순수하게 영상만을 촬영하는 것으로 한정됨. 따라서 음성·음향을 녹음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음

● 촬영된 영상정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일 것

- 영상정보처리기기에는 사람·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촬영된 정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도 포함함. 사실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단순히 영상만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촬영 화면을 전송하여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열람·활용하는 방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음
-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같이 촬영 화면을 폐쇄망을 통해 전송하여 모니터링하는 경우 또는 네트워크카메라 등과 같이 인터넷망 등을 이용해 영상을 전송하고 열람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됨

● 대통령이 정하는 장치일 것

- 사람·사물을 촬영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매우 다양하지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모두 규율대상으로 하여 그 사용을 모두 엄격하게 규제할 경우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음. 이와 같은 현실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은 그 규율대상이 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로 제한하고 있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종류]

종류	내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해 전송 또는 저장매체에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신·조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원칙적 금지

● 공개된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의 금지

-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금지됨

공개된 장소 (예시)³⁾

- 도로, 공원, 공항, 항만, 주차장, 놀이터,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
- 백화점, 대형마트, 상가, 놀이공원, 극장 등 시설
- 버스, 택시 등 누구나 탑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
- 병원 대기실, 접수대, 휴게실
- 구청·시청·주민센터의 민원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로 민원인 또는 주민의 출입에 제한이 없는 공공기관 내부

판례

공개된 장소란?

- 다른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별다른 통제가 없고 개방되어 누구나 차량으로 통행하는 아파트단지 또는 대학구내의 통행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본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도6986 판결).
- 특정상가 건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관리인이 상주·관리하지 않고 출입차단장치가 없으며 무료로 운영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 본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781 판결).
-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인지는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3) 개인정보 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20.12, 2면.

Question 1 **공개된 채혈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표준 해석례 61)

안녕하세요? 병원인데요. 출입구는 통유리로 되어있어 외부에서도 볼 수 있으며 누구나 출입이 자유로운 채혈실에 환자 안전 및 도난 방지등을 위해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탈의 등 사생활 침해도 없는 곳으로 CCTV를 설치하면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공개된 채혈실이라면 CCTV를 설치하여 운영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출입이 제한된 비공개 장소의 경우 개인정보수집에 대해 제15조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함
 -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공개된 채혈실이라면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 다만, 비공개 장소라도 개인정보처리자가 CCTV를 설치한 경우,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등의 규정이 준용됨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네트워크 카메라’만 해당함. 따라서 휴대전화, 블랙박스, 디지털카메라 등과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율대상이 아님에 주의하여야 함

조 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75조 제2항 제7호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금지**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금지됨

조 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75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금지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비공개장소 또는 사적 장소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 ◆ “비공개 장소”란 특정인에 한하여 출입, 접근 또는 통행이 허용되는 장소를 말함
- ◆ “사적 장소”란 사생활의 비밀이 노출되지 않고,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있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함

- 「개인정보 보호법」은 특정인에 한하여 출입, 접근 또는 통행이 허용되는 사무실 또는 출입통제 구역 등과 같은 ‘비공개장소’ 또는 단독주택 등과 같은 ‘사적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비공개장소 (예시)

- 입주자만 이용 가능한 시설, 직원만 출입이 가능한 사무실,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 가능한 통제구역
- 학생, 교사 등 학교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한 학교시설(교실, 실험실 등)
- 진료실, 입원실, 수술실, 지하철 내 수유실 등 사생활 침해 위험이 큰 공간
-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유치장 등 수용자와 근무자만 출입할 수 있는 교정시설

- 비공개장소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목적이 업무를 목적으로 하고, 사람이 촬영된 영상정보를 촬영 일시 및 장소 등으로 구분하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였다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법 제

2조 제5호)에 해당함.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예외) 「형사소송법」제244조의2(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 「북한인권법」제13조 제2항 등과 같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단독주택의 현관이나 대문 등 “사적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사적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도 업무를 목적으로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임
-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단독주택·연립주택 등의 대문, 현관을 통하여 방문하는 사람만을 촬영하고, 주택 외부 등 공개된 장소가 촬영되지 않도록 CCTV의 촬영 각도를 최대한 주택의 내부 쪽으로 고정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필요한 개인영상정보가 수집되지 않도록 해야 함

Question 2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직원 복무점검에 사용해도 되는지?
 (표준 해석례 36)

회사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가 설치 되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서에 의하면 수집 및 이용 목적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및 교통사고 상황의 파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과금 관련 및 인사평가, 근무평정에 감점의 요인으로 영상정보를 활용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Answer

| 직원 동의를 받아 회사차량 내부에 블랙박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근태관리 등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노사 협의를 거쳐야 함

- 공개된 장소가 아닌 회사차량 내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적용되지 않아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 범위에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다만,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달리 영상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호법에 위반됨
 - 한편, 사업장에서 근로자 감시 설비로 CCTV를 설치하려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4호에 따라 노사 협의 후 설치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따라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Question 3 **공동주택 복도에 입주민이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표준 해석례 56)

복도식 아파트에서 8개월 전부터 이웃과 시끄럽다고 지구대에서 여러 번 다녀갔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 2대를 설치한 세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소지와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세대에서 카메라 제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치해도 되나요?

Answer

| 공개된 복도에 설치할 수 있으나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에 해당함

- 공동주택에서 공개된 복도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이 경우 법 제25조에 규정된 안내판 설치, 안전성 확보조치, 처리방침의 공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35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에 응해야 함. 위반시 과태료에 해당함
 - 다만, 개인이 자신의 집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자신의 집에 출입하는 사람만을 촬영하는 경우 개인의 사적인 공간에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호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나, 이웃 또는 지나가는 사람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촬영각도를 조절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함

Question 4 **가정집에 IP카메라를 장착, 운영하면 불법인지? (표준 해석례 52)**

CCTV로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알고 있으나 가정집에 IP 카메라를 장착하여 본인이 살고 있는 집(공간)도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Ans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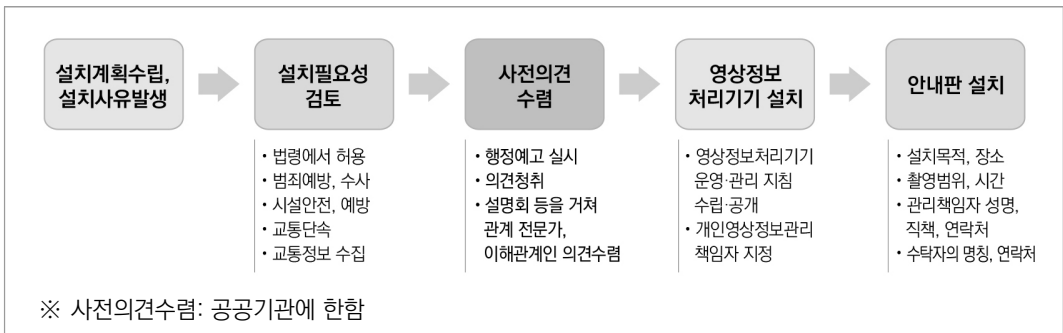
| 순수한 사적 공간에 IP카메라의 설치·운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운영 및 이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로 정의되어 있음

- 건물의 현관·복도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고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 기기는 보호법 제25조의 적용을 받으며, 그렇지 않은 비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법 제15조의 적용을 받거나 법의 적용에서 제외됨
 - 따라서, 택시, 버스 등 영업용 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외부(차량, 도로 등)를 촬영하는 ‘블랙 박스’는 일정한 공간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법 제25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차량 내부를 촬영하는 경우 법 제25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자신이 살고 있는 집안은 ‘공개된 장소’가 아닌 순수한 사적(私的) 공간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IP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으나, 운영 및 이용 과정에서 다른 정보주체와의 관계 및 상황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 예를 들어 집안에 설치 후 이웃집 또는 공개된 장소의 다른 정보주체를 촬영하는 행위 등은 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함

3.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예외적 허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절차]



●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예외적 설치·운영의 허용

◆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란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등 교정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을 말함.

-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이지만, 공익적 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이 예외적으로 허용됨. 즉, 수용자 또는 정신질환자의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 또는 정신질환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등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예외적으로 허용됨

헌법재판소 결정례

교도소 내 화장실 차폐시설의 설치 의무 인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0조는 교도관이 법 제94조에 따라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자장비로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감지기 등을 열거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162조 제3항은 “거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변을 보는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거나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자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지 아니한 경우 교도소장에게 화장실 차폐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4. 4. 16. 선고 2014헌마250 결정]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법령”이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함

- 법령에서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거나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

관련법률	내용
검역법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소장은 검역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할 수 있음
검역법 제29조의9/ 시행규칙 제25조의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역소에는 검역업무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함

관련법률	내용
<p>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단지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허용함 ✓ “공동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2호)
<p>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욕장업자는 목욕실, 발한실, 탈의실 이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음
<p>공직선거법 제17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투입한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함
<p>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5 / 시행령 제18조의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단체 등은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외 훈련장(지도자실 및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훈련시설의 출입문·복도·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p>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여객선터미널의 여객 대기지역, 항만시설 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울타리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함
<p>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교정시설의 벽돌레·감시대·울타리·운동장·거실·작업장·접견실·전화실·조사실·진료실·복도·통용문 그 밖에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81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함
<p>노면전차 건설 및 운전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교차로와 정거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p>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함
<p>도시철도법 제41조 / 시행령 제2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철도운영자는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함 [설치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도시철도차량 내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할 것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승객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관련법률	내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 시행규칙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할 수 있음 ●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보행자길에는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하여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대상구역은 보행자길 가운데 과거에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구역으로 함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6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지침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원등의 청사 정문·운동장, 외곽 담장, 생활관 내 복도, 각 생활실, 생활지도실, 그 밖에 보호소년등의 감호에 필요한 장소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함 ✓ 소년원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카메라의 설치장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사 정문 및 면회실(민원실) 2. 운동장 주변 및 외곽 담장 주변 3. 생활관 출입문 및 생활지도실 4. 생활관 내 복도 및 각 실 5. 생활관 내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 6. 생활관 외부 창문 7. 교육관 및 직업훈련장 내 각 실 8. 학생식당
생명유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은 실험실 및 보관시설의 감시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하여야 함
아동복지법 제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 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 보육서비스 지정 기관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용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관련법률	내용
<p>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 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여야 함 [예외] 1.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p>외국인보호규칙 제3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음
<p>응급의료등에 관한 법 제47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환자의 이송 상황과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차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장착 의무
<p>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통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는 계절별 1개월 이상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이용하여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함 [생태통로를 설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자연환경법 제45조)] 1. 개발사업등을 시행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개발사업등을 인·허가 받은 자 3. 생태통로가 필요한 지역에 위치한 도로 및 철도 등의 관리주체
<p>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 시행규칙 제15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무역지역의 구분별 관리권자(법 제8조 제1항)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에 대한 기록을 90일 동안 관리하여야 함
<p>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 포함)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법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함
<p>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하여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함

관련법률	내용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하공공보도시설의 부대시설로서의 중앙방재실에 자체 감시카메라(CCTV) 설비를 갖추어야 함
철도안전법 제39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철도차량 또는 철도 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4호 자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고층 건축물(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가 설치·운영하는 종합방재실의 설비로서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보안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여야 함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피보호자의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나 그 밖에 다른 피보호자의 생명·신체를 해치거나 보호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제2항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함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할 수 있음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지노사업자는 호텔의 내부 및 외부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학교체육 진흥법 제7조 / 시행령 제2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 1. 실내외 훈련장(학교운동부지도자실 및 회의실 등을 포함한다) 2.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출입문·복도·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3. 학생선수기숙사 및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만시설소유자는 범죄 예방 및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항만시설에 대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정시설의 주벽(周壁)·감시대·울타리·운동장·거실·작업장·접견실·전화실·조사실·진료실·복도·중문, 그 밖에 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함

Question 5 의결례 제2019-12-199호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 제한대상 자동차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수행 및 교통단속을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CCTV의 설치 목적에 ‘운행제한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여 병행·활용할 수 있습니까?

Answer

|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단속을 위하여 설치·운영중인 CCTV의 설치 목적에 ‘운행 제한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목적을 추가하여 병행·활용할 수 있음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제1항 제1호는 시·도지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의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지역·대상차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리고 같은 법 제31조는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도지사 등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 제한 조치를 위반한 자를 단속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용됨
-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 자동차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단속을 위하여 이미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운행제한 자동차의 단속 및 과태료 부과’라는 새로운 목적을 추가하여 병행·활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조례를 정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 제38조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의결례 제2019-12-199호)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범죄”란 법 위반으로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를 말함
 - ※ “형벌”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종류가 있음
- ◆ “수사”란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함
- ◆ “필요한 경우”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수집한 영상정보를 처리하여야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범죄”에는 형법상의 범죄는 물론 개별법이나 단속법에 따라 형벌이 부과되는 범죄도 포함함
 - ※ 예를 들면, 광고물 무단부착,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불안감조성, 음주소란 인공구조물 등의 관리소홀, 공무원 원조불응 등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범죄를 예방·수사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은행, 백화점이나 편의점, 회사의 창고 등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허용됨
 - ※ 그렇지만,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형벌을 제외한 과태료, 과징금, 시정명령, 직접강제, 즉시강제,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례

행정제재처분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범죄’는 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과해지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다. 관외택시 불법 영업행위는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은 없고 과징금 또는 면허취소 등의 행정제재 처분만이 가능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의결례 제2019-11-178호).

-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과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수사”에는 수사 권한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조사”는 물론, 범죄첩보 및 진정·탄원과 범죄에 관한 언론·

출판물·인터넷 등으로부터의 정보, 익명의 신고 또는 품문 중에서 출처·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수사 이전에 이루어지는 “내사”는 포함되지 않음

-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서는 공개된 장소에 공공기관은 물론 법인, 단체, 개인도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운영이 허용됨. 그렇지만, 수사를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경찰, 검찰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수사기관만이 설치·운영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함

●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각종 자연재해, 시설 노후화, 인위적 훼손·난동, 방화, 낙서 등으로부터 공공시설, 문화재, 사유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이 허용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행정재산 -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 재산 - 및 일반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공공시설, 행정재산, 일반재산의 유형

- 공공시설 - 도로, 공원, 철도, 수도, 항만, 공항, 녹지 또는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 운동장, 저수지, 화장장 등 공공의 업무와 용도로 사용
- 행정재산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행정목적을 위해 공용(公用)하는 재산
 - 1) 공용재산 - 청사, 관저, 공관, 막사, 관사 등
 - 2) 공공용재산 - 공원, 도로, 댐, 하천 등
 - 3) 기업용재산 - 국·공립병원, 지하철, 공공모빌리티 및 대여소 등
 - 4) 보존용재산 - 문화재, 보존림 등
- 일반재산 - 행정재산에서 폐지된 재산으로서 나대지, 전, 답, 임야, 건물 등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도로를 이용하는 각종 차량 및 사람들의 「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교통단속의 권한이 있는 기관,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찰청이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함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제한속도위반, 버스 전용차로위반, 도로의 횡단 등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등이 해당함

Question 6 **아파트에서 불법(유턴)차량 신고용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표준 해석례 55)

아파트 입구 대로변에서 불법 유턴 차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있어 당 아파트에서 불법 유턴 차량을 신고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3항에 의거하여 관리주체는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 되어 있어 아파트에서 설치하여 대로변 불법차량을 파악하여 신고 목적으로 설치하여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nswer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유턴 차량 신고 목적으로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법 유턴 차량 신고 목적으로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없음
 - 참고로, 교통단속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하려면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단속 권한이 있는 자가 설치하여야 함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란 사람 또는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행위, 활동, 기능 또는 과정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함

- 고속도로, 간선도로 등에서의 교통사고, 경로검색, 노선별 교통량, 혼잡구간, 정체구간 또는 도착지 교통 현황 등에 관한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거나 교통정보를 분석하여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요일과 시간, 도로 등 다양한 요청 조건에 따른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는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지방자치단체'로 한정됨

Question 7 **의결례 제2019-24-385호**

터널 내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그에 따른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터널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경찰청(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Answer

|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확인 및 제보를 위해 터널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5호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로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교통량 분석,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말하므로
 - 터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확인 및 제보를 위해 영상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관한 정보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터널 내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없음(의결례 제2019-24-385호)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절차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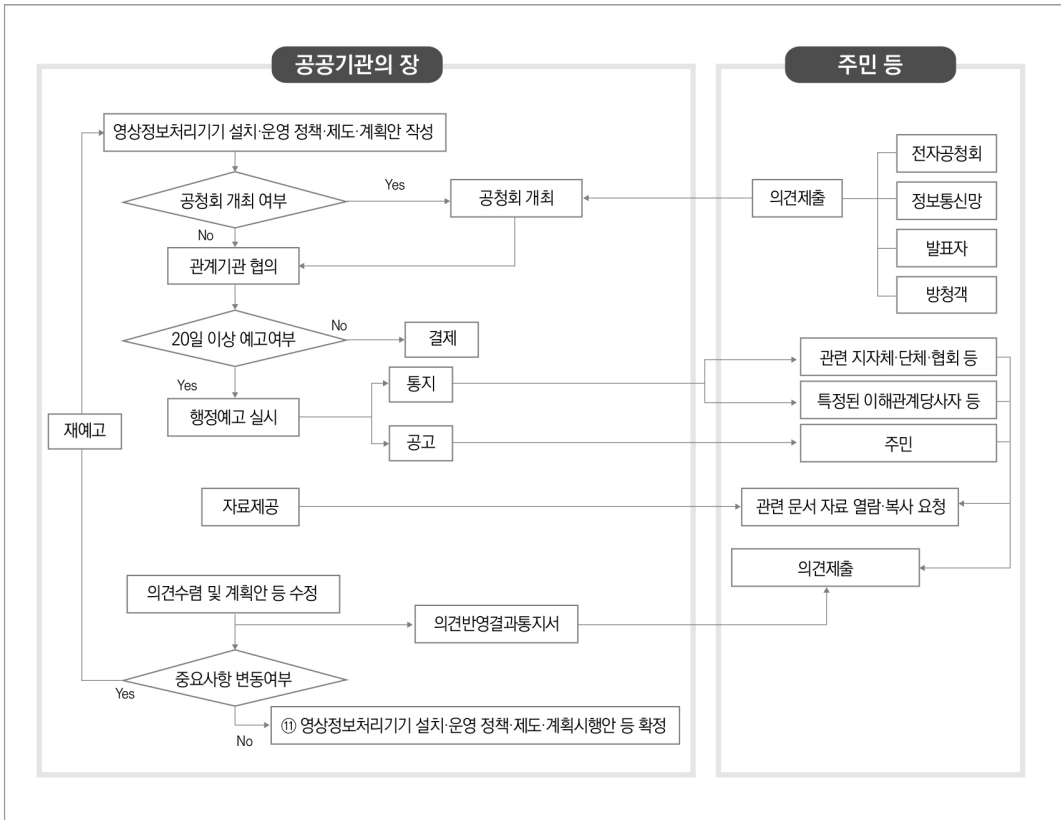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절차

- 공공기관이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을 위한 선택적 의견 수렴 절차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 의견청취 -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행정절차법」의 행정예고절차⁴⁾



4)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실무 편람, 2021. 1, 219쪽.

〔「행정절차법」의 의견청취제도〕⁵⁾

종류 구분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 권익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 • 일반·간이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 특별·정식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 • 특별절차
실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이익처분시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의견 제출의 기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인허가 등의 취소 등 처분시 의견제출기한 내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30명 이상의 당사자 등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실시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제출기회의 제시·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서) ✓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 기간 고려(10일이상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사유, 처분내용 및 청문 일시 등을 통보·처분사전 통지서(청문실시 통지) ✓ 청문개최 10일 전까지 사전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리 공청회에 관한 사항(목적, 일시, 참석자 등)을 널리 홍보·공청회개최 통지서 ✓ 공청회개최 14일 전까지 통지·공고(재개최 시 7일 전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제출방법 : 서면, 구술(출석), 정보통신망(팩스, 전화, e-mail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문주재자의 주재하에 청문 실시 • 청문일 출석진술(의견서로 대체 가능) • 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의견서 작성 후 행정청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 발표자 신청 및 공정한 선정 • 공청회 주재자의 주재 • 각계로부터 추천·신청받은 발표자의 발표, 질의·답변, 방청인의 의견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방법 :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방법: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 결과를 반영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방법: 공청회, 전자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를 반영하여 처분

5)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실무 편람, 2021.1, 122쪽.

행정예고

- “행정예고”란 행정청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정책등의 수립·시행·변경 행정예고를 할 때에는 행정예고안의 주요내용, 진행절차, 담당자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여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게재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47조 제1항, 시행령 제24조의3)
- 특히,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① 설치 목적, ② 설치대수, ③ 설치장소, ④ 촬영 시간 및 범위,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관 등을 공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앞서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정책·제도 및 계획의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2)
- 행정예고는 예고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함(행정절차법 제46조 제3항). 행정예고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행정예고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책 등에 대하여 의견을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음. 행정청은 제출된 의견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며,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함(행정절차법 제47조 제2항)

-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관계 전문가 또는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수용자’,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수용된 사람을 말함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안내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⁶⁾,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⁷⁾, 「보안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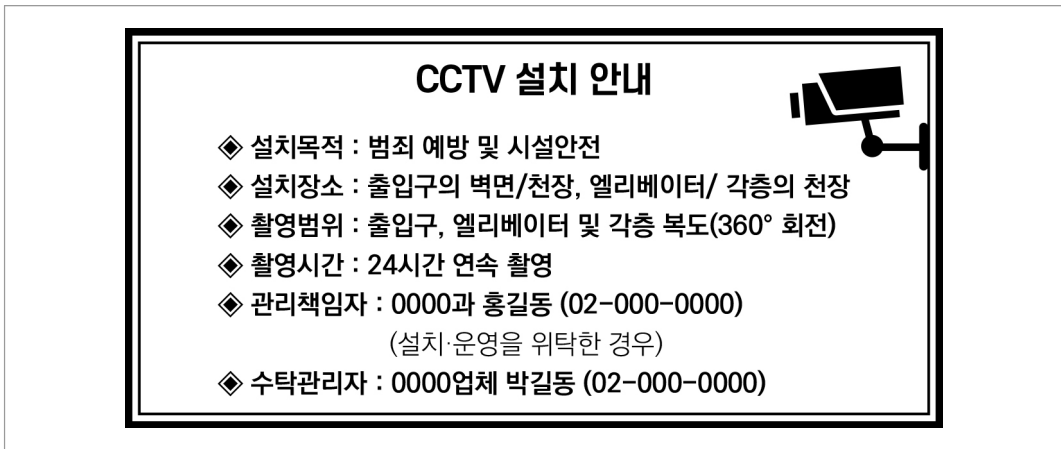
6)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용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

규정」제32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시설에 대하여는 안내판 설치 의무가 면제됨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안내판 설치 (예시)]



※ 안내판에 CCTV 그림을 표시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 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75조 제4항 제3호	제2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목적에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用)되는 시설로서 대공방어시설, 군용통신시설, 군용부두 및 전쟁장비·물자의 생산·저장시설을 말한다(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제2호, 시행령 제2조).

7)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

Question 8 CCTV 안내문에 꼭 책임자 이름을 넣어야 하는지?
(표준 해석례 58)

근무중인 사업장에 CCTV 설치 안내문을 부착하려고 하는데, 항목 중 책임자 정보는 부서명만 기입해도 되나요?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상황이라면 혹시 부서명과 전화번호만 기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 CCTV 안내판 설치 시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을 기입해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및 표준지침 제39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따라서, 안내판 설치 시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을 기입해야 하고 부서명과 전화번호만 기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게재할 수 있음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 요건

-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공개하여야 함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사항을 공개하는 방법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 신문에 실는 방법

-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며 안내판의 크기나 위치는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면서 설치하여야 함.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같은 장소 또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마다 안내판을 각각 설치하여야 함

안내판 설치 시 주의사항

1.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출입구, 정문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설치해야 함
2. 건물 내, 공원 등 설치 장소에 따라 정보주체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안내판의 글자 크기와 높이를 조절하여 설치해야 함
3. 외국인이 자유 이용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한국어와 외국어로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내판 설치 장소 (예시)

- 건물 : 건물 1층 출입구 또는 정문, 기타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한 각 층의 출입구, 안내데스크 등 눈에 잘 띄는 곳
- 건물 외의 장소(공원 등) : 각 출입구, 기둥 또는 시설물 등 눈에 잘 띄는 곳
- 상가 : 주(主)출입문 계산대 등 눈에 잘 띄는 곳
- 버스 등 대중교통 : 승하차 출입문, 버스내 노선도 옆 등 승객의 눈에 잘 띄는 곳
- 택시 : 보조석 앞, 좌석 머리받침 뒤편 등 승객의 눈에 잘 띄는 곳
- 주차장 : 입구, 정산소, 주차장 내 기둥 등 눈에 잘 띄는 곳

- 공공기관의 장이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함

Question 9 CCTV 촬영 안내문은 CCTV마다 부착해야 하는지?
(표준 해석례 57)

의료기관입니다. 복도·출입구·계단 등 공용공간에 CCTV가 100기 가량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따라 CCTV 촬영 안내판을 부착할 경우 설치장소마다 부착해야 되는지요?

Answer

|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출입구나 정문, 안내데스크 주변 등에 대표로 1개의 안내판만 부착할 수도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 및 표준지침 제39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함
 - 보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물 내 여러 대의 CCTV를 설치한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출입구나 정문, 안내데스크 주변 등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대표로 1개만 부착할 수도 있음

Question 10 CCTV로 모니터링만 해도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표준 해석례 60)

최근 공연장 내부에 무대 및 객석 안전관리용으로 CCTV를 설치하였는데, 알아보니 관리자를 선임하고 대장을 만들어 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등 법적조치 사항들이 많더군요.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만 사용하고 녹화기능은 꺼놓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Answer

| CCTV로 모니터링만 하고 녹화하지 않더라도 의무규정을 준수해야 함

- 공연장처럼 공개된 장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이 경우 법 제25조에 규정된 안내판 설치, 안전성 확보조치, 처리방침의 공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 제35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에 응해야 함. 위반시 과태료에 해당함
 - 한편, 모니터링만 하고 녹화하지 않더라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정보가 일시 저장·전송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함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의무

● 임의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금지

◆ “조작”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회전시키거나 영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등 촬영 범위나 대상을 인위적으로 변경시키는 행위를 말함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임의 조작을 금지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또한, 녹음기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일정한 장소에 지속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음성이나 음향을 녹음하는 기능을 갖추는 경우 사람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청취하거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통신비밀 보호법」(제3조 제1항·제14조)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임

조 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의 내용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①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 ②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 ③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④ 개인영상정보 취급자 교육
 - ⑤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조 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73조 제1호	제25조 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제73조 제2항 제6호	제25조 제6항을 위반하여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Question 11 CCTV 영상을 노트북에 송출하여 직원 근태관리를 해도 되는지?
(표준 해석례 59)

안녕하십니까? 모 대학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입니다. 이 곳은 경비 실장을 포함하여 4명이 격일제로 근무하는데, 경비 실장이 본인 노트북에 CCTV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퇴근후에도 집에서 근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법 위반이 아닌지요?

Answer

| 개인 노트북으로 근태를 확인하려면 안전성 확보조치 및 노사협의 등이 필요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따라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하고, 개인정보 취급자별 사용자 계정 발급, 비밀번호 설정, 인가받지 않은 자에 의한 외부접속 차단 등의 접근통제 조치도 취해야 하며, 접근 권한이 없는 자가 임의적 접근 및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 화면 옆이나 영상정보처리기기 본체에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함. 위반시 과태료에 해당함(영 제30조 및 표준지침 제3장)
 - 따라서 경비실장 개인 노트북에 CCTV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근태를 확인하려면 안전성 확보조치 및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또한, CCTV로 근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4호에 따라 노사 협의 후 설치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에 따라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수립 및 공개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함.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음

8) 시행령 제27조, 표준지침 제36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법률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으로 표시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필수 사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공개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공개하여야 함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 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실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를 말함

- 영상정보처리기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을 준용하여 지정함. 다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업무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Question 12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를 모니터링해도 되는지? (표준 해석례 54)

아파트 내 무단 폐기물 투기, 시설물 파손 등의 책임소재 확인과 관리규약에 따른 위반금 부과를 위해 관리사무실에서 CCTV를 확인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설치목적 범위 내에서 영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음

- 공동주택처럼 공개된 장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영 제25조 등에 따라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 보유자를 지정하여 설치목적 범위 내에서 영상을 모니터링할 수 있음

- 다만, 관리규약에 따른 위반금 부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없음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집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개인영상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요건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함

Question 13 CCTV 사고영상을 직원 교육에 이용해도 되는지? (표준 해석례 29)

저희 병원에서 범죄 예방 및 시설안전 목적으로 설치해둔 CCTV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뻔한 모습이 촬영되었는데요, 직원들의 사고예방 교육을 위해 이 영상을 이용해도 될까요?

Answer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영상정보를 사고예방 교육에 이용할 수 있음. 다만,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조치하는 것이 바람직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통해 수집한 영상을 직원들 사고예방 교육을 위하여 이용하려면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다만, 사고 영상이 공개될 경우 예상치 못하게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조치 하여 이용하는 방안이 더욱 바람직함
 - 참고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촬영된 영상의 경우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Question 14 **청사 CCTV 영상을 기관 자체감사에 이용해도 되는지?**
(표준 해석례 33)

소속 공무원의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의 부당수령 등에 대한 제보나 의심 정황 발생 시, 제보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사에 방호 목적으로 설치된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Answer

| 민간은 소속 직원의 동의 또는 노사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은 공공감사법에 근거하여 청사의 CCTV 영상을 자체감사에 이용할 수 있음

- (민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할 수 있으므로 소속직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CCTV 영상정보를 자체감사에 이용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음
- (공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3항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공무원 및 소속 직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함(의결례 제 2021-106-011호 참조)
- 따라서, 공공기관이 청사관리 목적으로 설치하여 수집한 CCTV 영상정보를 자체감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정보주체 등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Question 15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 CCTV 영상을 입주민이 열람해도 되는지? (표준 해석례 37)**

아파트 입주민이 본인 이외 특정시간대 승강기 내부 이용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에서는 동의를 필요한 사항으로 경찰관 입회하에 검색이 가능하다고 통보하고 있는데, 적절한 처리인지요?

Answer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경찰 입회하에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해당 영상정보 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따라서, 관리사무소는 해당 CCTV 영상에 수록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열람을 허용하되, 관리사무소에서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 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하도록 하여 열람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함
 - 한편,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따른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 현장에 입회한 사실만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제3자에게 영상정보를 열람하도록 할 근거는 되지 않음

●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보관기간동안만 보관하여야 함.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관기간 동안 보관한 후, 그 보관기간이 끝나면 즉시 파기하여야 함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Question 16 키즈카페는 CCTV 영상을 며칠간 보관해야 하나요? (표준 해석례 62)

안녕하세요? 찾아보니 일반 상가 또는 가게의 CCTV는 최대 30일까지 보관가능이라고 되어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 60일로 되어 있던데, 키즈카페(어린이 놀이카페)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최대 며칠까지 법적으로 보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 보유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동안 보관하되, 보유기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30일 이내 보관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운영자는 영상 정보처리기의 설치근거, 촬영기간, 보관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정보처리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때 보관기간은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면 됨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1조 제2항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할 수 있음
 - 한편, 「영유아 보육법」 제15조의4 제3항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CCTV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다른 법령에서 영상 정보의 보관기간이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필수 사항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개인영상정보 파기 시 기록·관리 사항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 요구 또는 열람 후 파기 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시 기록사항

1.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 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위의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양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1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2	<input type="checkbox"/> 이용 <input type="checkbox"/> 제공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파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함⁹⁾

9) 다만, 민간기업·단체·개인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는 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의 규정이 적용된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무 위탁계약서의 필수 사항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를 위탁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함.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함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위탁 사무 내용 및 수탁자 공개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
-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공개하여야 함
 1.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실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 위탁자는 사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수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함

-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됨

●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개인정보보호 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게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https://intra.privacy.go.kr/)에 등록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함
- ※ 공공기관 외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체점검 등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자체점검 시 고려 사항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6.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대응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 대상 및 방법**

-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열람 등을 요구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개인 영상정보의 열람등을 요구하여야 함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에 대한 본인등 확인 및 조치의무**

- 열람등 요구를 받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반드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여부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요구받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 그렇지만, 해당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Question 17 차량사고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CCTV 영상을 제공해도 되는지? (표준 해석례 38)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간 사고 확인을 위해 차주(정보주체)의 보험사에서 열람 요청시 영상자료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 정보주체는 대리인을 통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해당 영상정보 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 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보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요구 등의 절차를 대리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이 때 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방법에 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조치 시 주의사항**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을 요구받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알아볼 수 없게 하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영상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수수료와 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음

Question 18 CCTV 열람 신청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지?
(표준 해석례 67)

CCTV 열람 신청시 모자이크 처리 비용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인 부담인지, CCTV운영 담당기관 부담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 열람에 드는 비용은 열람요구자가 부담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등 해당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운영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사전에 공개한 열람절차와 방법에 따라 열람을 실시하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취한 후 열람물을 제공해야 함
 - 한편,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에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한 정보주체에게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열람요구자가 비용을 부담함
 - 참고로, 시중에 보급된 비식별조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열람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함

Question 19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영상을 공개해도 되는지?
(표준 해석례 15)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지체없이 공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이 참관할 수 없었던 회의영상 공개를 요구 하였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공개가 안 되는 게 맞는지?

Answer

| 회의 영상을 촬영·공개하려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8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함
 - 한편, 회의록과 별개로 회의에서 영상을 촬영·공개하려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따라서, 동의를 받지 못한 정보주체 등의 개인정보가 회의 중 영상을 타고 유출된 경우 법 제59조 제2호 또는 제3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회의영상의 공개시 주의가 요구됨

●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의 거부**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를 받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열람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열람등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열람 등을 요구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함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의 거부 요건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참고

어린이집에서의 영상정보의 열람 방법 및 절차

어린이집에서 설치·관리되고 있는 CCTV에 의하여 촬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1항)

<어린이집에서의 영상정보 열람 허용 사유>

1. 보호자가 자신의 자녀 또는 보호하고 있는 아동의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어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2.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어린이집과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 안전사고의 조사 및 처리와 관련하여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으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열람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음

<어린이집에서의 영상정보 열람 절차>

1. 열람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정보 열람 허용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CTV 설치·관리자(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열람 요청 ✓ 보호자가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영상정보열람요청서 또는 의사소견서의 제출 필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또는 공문서 등의 제출 필요
2. 열람결정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설치·관리자는 '열람요청 거부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 ✓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요청 거부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열람 허용

3. 영상정보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설치·관리자는 통지한 열람장소와 시간에 열람 허용할 것 ✓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와 자녀 또는 보호아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 ✓ 정당한 열람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또는 공문서 등의 확인
4. 열람조치사항 기록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설치·관리자는「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열람조치사항을 기록하고 관리

- 영상정보 열람 요청을 받은 CCTV 설치·관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영상정보 열람 요청 거부 사유〉

1.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 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요구 및 조치**

-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등 대상이 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음.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의 기록 및 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에 대한 조치를 하거나 요구에 대하여 거부를 한 때에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또는 거부 시 기록·관리 사항

1.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 적용의 일부 제외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7조 제1항·제2항(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및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를 적용하지 않음

법적용의 일부제외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지 및 동의획득 의무
⇒ 안내판 설치 등의 의무로 대체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정보주체에게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알리고 개별적으로 동의
⇒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불특정 다수의 특성상 동의곤란
-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영업의 양도·합병시 통지의무
⇒ 불특정 다수의 특성상 통지 곤란
-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의무
⇒ 불특정 다수의 특성상 통지 곤란
-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 요구
⇒ 특정 정보주체만 처리정지 불가

-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영상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개인영상정보의 제공 요건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

(민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공공)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찾아보기: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www.pipc.go.kr/np/>) > 정책·법령 > 지침·가이드라인



사례 중심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VI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처리 제한

1.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2.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VI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포함) 처리 제한

법률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시행령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음

☞ (설명)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의해서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하며, 이들 정보가 민간 분야에서 DB매칭 키 등으로 남용되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이 높은 정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임.
이는 개인에게 부여된 것이어야 하므로 기업, 학교 등이 소속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사번, 학번 등은 고유식별정보가 될 수 없고, 법인이나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도 고유식별정보가 될 수 없음.

◆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고, 법률 등에 근거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리가 허용됨

☞ (설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에게 개인별로 부여한 고유 등록번호로 생년월일, 성별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된 고유 등록번호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로 이러한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보호를 다른 고유식별정보 보다 더욱 강화함으로써 관행적 동의 절차에 따른 오·남용과 유출시 2차 피해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1.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제24조)

●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제1항)

- 고유식별정보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함(시행령 제 19조 제1항)
- 다만,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처리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로 보지 아니 함 (시행령 제19조 제1항 단서)
 - ※ 고유식별정보로 보지 않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고유식별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항 제1호)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를 열거하고 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는 가능함(제1항 제2호)

-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분리해서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때 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함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란, 원칙적으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것을 말함
- ‘법령’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외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포함되며 이에 첨부된 별지 서식이나 양식도 포함됨

[고유식별정보 처리 요구, 허용 법령]

관련법률	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4. 외국인의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2. 피성년후견인들의 성명, 성별, 출생 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같음하여 국적 및 외국인 등록번호 기록) 3. 성년후견인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또는 사무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된 사무소를 기록하고,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같음하여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기록)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제2조	1. “특정사항”이란 피성년후견인등, 후견계약의 본인 또는 사전처분의 본인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함. 다만, 피성년후견인등·후견계약의 본인·사전처분의 본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 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국적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법무부장관 등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 다른 법령에서 신원이나 연령확인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를 별도로 받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수단을 이용함

[신원, 연령확인 의무 법령]

관련법률	내용
「청소년보호법」 제16조 (판매금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심야시간대의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음(제1항)

관련법률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본인확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함(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하여야 함(제1항)

판례

출생연도가 고유식별정보인지 여부

출생연도가 사실상 고유식별정보로 기능한다고는 볼 수 없고, 출생연도에 관하여 법률상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함(제3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시행령 제21조 제1항)

● **위원회는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정기조사를 2년 단위로 수행함(제4항, 제5항)**

- 위원회는 시행령 제21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5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였는지를 2년마다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함
- 위원회는 시행령 제21조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음

▶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조사**

- ① (조사대상) 공공기관, 5만명 이상 정보주체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② (조사주기) 2년마다 1회 이상
 - ※ 짝수년도 : 행정기관 등, 홀수년도 : 각급 학교
- ③ (조사방법) 고유식별정보 보유현황 및 안전성 확보조치 자체점검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 종합 포털(privacy.go.kr)에 등록
- ④ (수행기관) 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 및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 경력,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인종이나 민족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조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71조 제4호	고유식별정보 처리기준 위반(제24조 제1항)	5년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제73조 제1호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제19조 위반)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제75조 제2항 제6호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제24조 제3항)	3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제24조의2)

●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고, 예외적인 사유에만 허용됨(제1항)

-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므로 부령 등 시행규칙을 근거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제1호)

- 명백히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반드시 급박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다른 수단에 의하여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면 급박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음(제2호)
-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현재 고시는 제정되어 있지 않음)
- 이러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저장·보유하는 것도 금지되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의결례

금융회사의 신분증 진위확인 정보 공유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실지명의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증 진위확인 정보를 금융회사 간에 공유하기 위하여 금융실명법을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으며, 금융결제원 또한 해당 정보 공유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습니다.(위원회 결정 제2021-104-007호)

-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 조치하여 보관함(제2항)
 -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21조의2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른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 인터넷 홈페이지로 회원 가입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함(제3항, 제4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함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구분	대체수단	근거
본인확인기관	• 아이핀, 휴대전화, 신용카드, 토스	- 정보통신망법(제23조의2), 본인확인지정기준 고시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 NHN페이코, 신한Sign, 네이버 인증서	- 전자서명법(제8조)

- 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음

조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73조 제1호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으로 개인정보가 침해당한 경우(제24조 제3항)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제75조 제2항 제4의2호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처리(제24조의2 제1항)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 제2항 제4의3호	주민등록번호 보호를 위한 암호화 조치 위반(제24조의2 제2항)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 제2항 제5호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제공 위반(제24조의2 제3항)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 제2항 제6호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제24조 제3항)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참고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면서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같은 벌칙 규정 적용
-----------	--

Question 1 운전면허나 여권번호를 별도 동의로 수집할 수 있는지?

회원의 운전면허번호나 여권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와 혹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이와 같은 항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 근거없이 회원의 운전면허번호나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나, 수집·이용 목적 등을 알리고 별도의 동의를 받으면 수집할 수 있음

- 고유식별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의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함
- 이러한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 등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나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
 - 정보주체(회원)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회원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0조 준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고유식별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고유식별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고유식별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회원)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2년에 1회 이상 조사
 - 이러한 조사는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함

Question 2 주민등록증의 개인정보는 어디까지 수집할 수 있는지? (표준 해석례 49)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 사업자가 주민등록증을 수집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어느 정도 수집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민등록번호 첫 번째 뒷자리,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사진 중에서….

Answer

| 이름, 생년월일, 성별,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사진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므로 동의를 받아 수집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
 - 이 때 주민등록번호란 주민등록법 제7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생년월일, 성별을 포함한 13자리의 번호임
 - 따라서 이름, 생년월일, 성별,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사진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므로 동의를 받아 수집할 수 있음

Question 3 세입자 전세대출에 집주인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한지? (표준 해석례 50)

얼마 전 저는 집 주인으로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는다고 하여, 부동산 중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찍어 보내달라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도 되는지요?

Answer

| 집주인이 금융기관에 질권설정을 하는데 있어 본인확인을 위해 생년월일 및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령 제4조의2 등에 따라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함
- 그러나, 전세대출에서 집주인은 금융기관에 제3채무자로서 질권설정을 하는 것이므로 실명제와 직접 관련이 없고 금융기관은 사인간의 채권채무관계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생년월일 및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음(주민등록법 제25조(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 채권채무 관계에서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다만, 채권채무 관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으므로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도록 뒤 6자리에 대해 비식별조치가 필요함

Question 4 **가족수당 지급을 위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도 되는지?**
(표준 해석례 51)

현재 회사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할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임직원의 가족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족수당 지급을 위해 근로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도 수집, 이용할 수 있는지요?

Answer

| 가족수당 계산을 위하여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 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 임금대장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근로자 개인별로 적도록 하였으므로 근로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는 있으나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근거로는 볼 수 없음
 - 따라서, 가족수당 계산을 위하여 생년월일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을 수 있음



사례 중심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VII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 민감정보 처리 제한
 - 민감정보의 범위

VII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법률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시행령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1. 민감정보 처리 제한

◆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별도로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와 개별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음

☞ (설명)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하며, 개인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사회적 차별을 야기하거나 현저히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보다 엄격히 보호되어야 함

●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 민감정보는 처리가 제한됨(제1항)

- 민감정보란 1) 사상·신념 2)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3) 정치적 견해 4)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함
- ‘사상·신념 정보’란 개인의 가치관에 기초로 하여 형성된 사유체계, 개인이 굳게 믿고 지키고자 하는 믿음·생각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각종 이데올로기 또는 사상적 경향, 종교적 신념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함
-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보’란 노동조합 또는 정당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 이외에 노동조합비 또는 당비 납입내역 등 그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포함

- ‘정치적 견해 정보’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말함
- ‘건강 및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란 개인의 과거 및 현재의 병력(病歷), 신체적·정신적 장애 (장애등급 유무 등), 성적 취향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함(혈액형은 해당하지 않음)
-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란 해당 정보를 수집·처리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함

2. 민감정보의 범위(시행령 제18조)

◆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특정 개인의 생체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함

☞ (설명)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생체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함

- ‘생체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①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②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하거나 ③개인에 관한 특징(연령·성별·감정 등)을 알아보기 위해 ④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함

①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

- 신체적 특징 : 지문, 얼굴, 홍채·망막의 혈관 모양, 손바닥·손가락의 정맥 모양, 장문, 귓바퀴의 모양 등
- 생리적 특징 : 뇌파, 심전도, 유전정보 등
- 행동적 특징 : 음성, 필적, 걸음걸이, 자판입력 간격·속도 등

②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 지문·홍채·얼굴 등에서 추출한 특징점 등을 이용(비교·대조)하여 특정 개인임을 확인

- 인증 : 이용 권한이 있는 특정 개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생체정보를 기기 등에 저장된 정보와 대조하여 본인 여부 확인

※ (예시) 지문을 입력하면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을 허용하는 출입통제 시스템

- 식별 : 개인의 생체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다수의 생체정보와 대조하여 여러 사람 중 특정 개인을 구분하여 확인

※ (예시) 기 등록된 여러 가족 구성원의 음성 중 지금 말하는 사람을 확인하여 대답하는 인공지능 스피커

③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인증·식별 목적이 아닌, 사람의 연령·성별·감정 등의 상태를 확인 또는 분류하는 것

※ (예시1) 안면인식을 통해 연령이나 성별 등을 추정하여 이용자를 분류하는 행위

※ (예시2) 이용자의 얼굴을 자동 인식해 눈·코·입 위치에 맞는 스티커를 얼굴위에 덧입히는 것

④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 센서 입력장치 등을 통해 이미지 등 원본정보를 수집·입력 하고 해당 원본정보로부터 특징점을 추출하는 등 개인을 인증·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전 과정

● ‘생체인식정보’란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할 목적으로 처리되는 정보

- 생체정보는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되는 ‘생체인식정보’와 인증·식별 목적이 아닌, 개인에 관한 특징(연령·성별·감정 등)을 알아보기 위해 처리되는 일반적인 생체정보(이하 “일반적인 생체정보”)로 구성

참 고

‘생체인식정보’와 ‘일반적인 생체정보’의 구분 및 예시

- 얼굴 사진(영상)의 경우
 - 생체인식정보 : 얼굴 사진(영상)에서 특징점 등을 기술적으로 추출하여 개인의 인증·식별 목적으로 출입통제(안면인식) 시스템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생체인식정보에 해당
 - 일반적인 생체정보 : 얼굴 사진(영상)에서 특징점 등을 기술적으로 추출하지만 특정 개인의 인증·식별 목적이 아닌 성별, 감정상태(웃는 모습, 화난 모습 등)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생체정보’에 해당
- 음성의 경우
 - 생체인식정보 : AI 스피커에서 입력된 사람의 음성을 통해 특징점 등을 기술적으로 추출하여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여 응답하는 경우는 생체인식정보에 해당
 - 일반적인 생체정보 : AI 스피커에서 입력된 사람의 음성을 통해 특징점 등을 기술적으로 추출하지만 특정 개인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화자의 감정상태(화난 목소리, 기쁜 목소리 등)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생체정보’에 해당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2021.9.

- 생체인식정보는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 목적으로 입력장치 등을 통해 수집·입력되는 ‘생체인식 원본정보(이하 “원본정보”)’와 이로부터 특징점을 추출하는 등의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되는 ‘생체인식 특징정보(이하 “특징정보”)’로 구분
 - 원본정보는 생체인식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크므로 원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저장 시 암호화, 원본정보를 특징정보 생성 후에도 보관하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 보관 등 별도의 보호조치 필요
 - 특징정보는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민감정보인 특징정보는 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에 따라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또는 법령에서 특징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 가능

●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도 민감정보**

- 인종은 인류를 지역과 신체적 특성에 따라 구분한 것이고, 민족은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상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 집단으로서, 인종이나 국가 단위인 국민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금지되며,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와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처리할 수 있음**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 등(법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공범위 등(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분리해서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 법령에서 민감정보 종류를 열거하고 그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법정서식에 민감정보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도 포함)

※ 별도 동의 없는 민감정보 처리(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민감정보 관련 ‘환자에 관한 기록’의 범위가 아닌 것(의료법 제21조)

- 환자로부터 채취한 검체(조직 슬라이드 등) 자체
- 의료기관 종사자의 개인적인 메모
- 진료기록에 대한 시스템 접속 기록 또는 열람자 목록 등
- 의료기관 밖의 환자기록(환자가 사본 발급한 진료기록 등)은 일반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대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가이드라인(의료기관편)]

법제처
해석

18-0310, 2018.8.6.

【질의】 「의료법」 제21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의료인 등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 제출로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의료인 등은 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로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헌재
결정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요양급여내역은 건강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이 규정한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민감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368 전원재판부 결정).

의결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체감사를 위한 소속 직원의 운전경력증명서 수집에 관한 건

운전경력증명서의 법규위반 사항에 기재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자체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부터 운전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정보 중 성명, 생년월일, 법규위반 사항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위원회 결정 제2020-13-244호).

●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함(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시행령 제4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조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71조 제2호	민감정보 처리기준 위반(제23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제39조의15 제1항 제3호	이용자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제23조 제1항 제1호)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100분의 3 이하 과징금
제73조 제1호	민감정보 보호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으로 개인정보 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3조 제2항)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제75조 제2항 제6호	민감정보 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제23조 제2항)	3천만원 이하 과태료

Question 1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을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지방병무청은 복무기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지방병무청이 보유한 질병·심신장애 진료과목과 판정 급수, 강력범죄경력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범죄명과 선고형 등에 관한 정보를 각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의결례 제2020-13-247호).

Answer

|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으로 질병·심신장애 진료과목과 판정 급수, 강력범죄경력 있는 사회복지요원의 범죄명과 선고형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로 지방병무청은 각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므로 처리하여서는 안됨
 - 다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제1호)
 -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제2호)
- 현행 법령에는 지방병무청이 복무기관에 사회복지요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범죄경력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령해석만으로 사회복지요원의 민감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정보주체가 복무기관에 자신의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대상과 목적을 구체화하여 법령에 규정하여야 함



사례 중심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VIII

가명정보의 처리 등

-
1. 가명정보의 처리 등
 2. 가명정보 처리시 금지의무

VIII | 가명정보의 처리 등

법률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시 금지의무 등)
----	---

1. 가명정보의 처리 등(제28조의2)

◆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

☞ (설명)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하며, 개인정보처리자는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 범위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으나,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 가능함

●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처리 범위 내에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음(제1항)

- 통계란 특정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량적인 정보로 시장조사와 같은 상업적 목적의 통계처리도 포함

· 직접(1:1) 마케팅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의 통계는 해당하지 않음

※ 통계 작성 예시

· 회사가 도로구조 개선 및 휴게공간 추가설치 등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월별 시간대별 차량 평균속도, 상습 정체구간, 사고구간 및 원인 등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백화점, 마트 등 유통경로별 상품판매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판매 상품을 구입한 회원의 연령,

성별, 선호색상, 구입처, 기능 및 가격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 지자체가 연령에 따른 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편의시설(문화센터, 도서관, 체육시설 등)의 이용 통계(위치, 방문자수, 체류시간, 나이대, 성별 등)를 생성·분석하여 적합한 지역에 신규 편의시설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의미

- 과학적 연구는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하며 자연과학, 사회과학,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능
- 과학적 방법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 가능한 질문에 관해 연구하는 것을 의미
- 과학적 연구는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 연구, 응용 연구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위해서도 수행할 수 있으며, 민간 투자 연구, 기업 등이 수행하는 연구도 가능

※ 과학적 연구 예시

- 코로나19 위험 경고를 위해 생활패턴과 코로나19 감염률의 상관관계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건강 관리용 모바일 앱을 통해 수집한 생활습관, 위치정보, 감염증상, 성별, 나이, 감염원 등을 가명 처리하고 감염자의 데이터와 비교·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는 경우
- 연령, 성별에 따른 체중관리 운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또는 운동관리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하여 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맥박, 운동량, 평균 수면시간 등에 관한 정보와 이미 보유한 성별, 연령, 체중을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 공익적 기록보존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열람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의미

-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기업,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하여 기록을 보존하는 경우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 인정됨

※ 공익적 기록보존 예시

- 연구소가 현대사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 중에서 사료가치가 있는 생존 인물에 관한 정보를 기록·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안 됨(제2항)

- 가명 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는 추가 정보 외에도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들은 명칭, 종류, 형태, 내용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제3자가 법에서 허용하는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지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으며, 제3자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중 제공대상이 되는 가명정보와 결합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목록 등을 확인하여 가명 처리할 때 고려할 수 있음
- 가명정보를 합법적인 목적으로 처리하는지와 가명정보가 재식별 되지 않는지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제3자에게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별도 계약 체결 가능

※ 잘못된 제3자 제공 사례(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호텔에서는 최고급 객실을 이용한 VIP등의 특이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호텔 투숙 및 서비스 금액 등을 ○○분석회사에 제공하고, ○○분석회사는 해당 정보를 분석하여 시간에 따른 객실 이용현황 및 서비스이용에 대한 조사 연구를 수행
- (처리현황) ○○분석회사는 온라인 SNS정보 및 다양한 기업의 정보를 수집하여 다양한 연구 조사를 실시하는 회사로써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준수하고 있음
○○호텔은 회원번호와 이름을 가명처리하고, 나이, 성별, 등급, 예약방법, 객실정보, 체크인, 체크아웃, 서비스 이용금액을 제공
- (문제점) ○○분석회사의 분석담당자는 특정일에 최고급 객실을 이용한 내용을 분석과정에서 인지할 수 있으며, 기존 업무(온라인 SNS정보 수집)를 수행하며 공개된 정보(예 : 개인이 SNS에 올리는 정보, 여행후기 등)를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있음
- (해결방안) ○○호텔은 제공하는 가명정보에 포함된 특이정보(최고급 객실)를 삭제 또는 가명처리 등을 수행하여야 함

2. 가명정보 처리시 금지의무(제28조의5)

●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의 가명정보 처리금지(제1항)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란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로 가명정보 중 일부의 정보주체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다수의 정보주체에 해당하는 것일 수도 있음
-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들은 명칭, 종류, 형태나 내용을 불문하고 처리해서는 안됨
- 가명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론 그에 소속된 개인정보취급자나,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 또는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명정보를 입수한 자 등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안됨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 즉시 해당 정보 처리 중지 및 회수·파기(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처리중지, 회수, 파기 등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여함
- 가명정보 처리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해당 가명정보 처리중지 및 회수·파기를 완료하여야만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조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71조 제2호	가명정보 처리 규정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제28조의2)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제71조 제4의 3호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제28조의 5 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제28조의6 제1항		전체 매출액 100분의 3 이하 과징금
제75조 제2항 제7의2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가명정보의 이용을 중지하지 않거나 또는 회수·파기하지 아니한 자 (제28조의5 제2항)	3천만원 이하 과태료

Question 1 가명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대가를 받고 제공할 수 있는지?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는지와 이러한 가명정보를 공개하면서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에 해당해야 함.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가명정보의 공개는 사실상 제한되며, 가명정보 제공 대상이나 가명처리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가를 받고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가명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개의 목적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고(제28조의2 제1항 위반 우려), 불특정 다수 중 누군가는 공개하는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제28조의2 제2항 위반 우려), 가명 정보의 공개는 사실상 제한됨
- 가명정보를 과학적 연구 등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명정보 제공 대상이나 가명처리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명처리 하는 것과 그 가명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판매가 목적인 경우로 볼 수 있어 허용되지 않음
- 추가로 가명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목적 범위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이므로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목적으로 제공받았어도 통계작성 외에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 등으로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음



사례 중심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IX

공개한 개인정보의 처리

IX | 공개한 개인정보의 처리

표준지침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하였다고 할 것임

☞ (설명)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의사로 SNS 등 다양한 경로와 매체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되기도 하며, 학업이나 직업 등 공적 활동을 통해 불가피하게 공개되는 경우가 있음

◆ 공개된 개인정보는 사회통념상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수집·이용이 가능함

☞ (설명)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적극적인 공개행위에 의해 직접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제3자에 의해 소극적,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사회통념상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또한 공개된 개인정보를 객관적으로 보아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동의의 범위가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정보주체의 공개의사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거나와 정보주체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무의미한 동의절차를 밟기 위한 비용만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됨

●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명함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함(표준지침 제3항)

-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를 제공받음으로써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함
- 다만 차량외부에 부착되어 상시 공개되는 자동차등록번호 등을 누구나 알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주체인 차량소유자가 특정서비스를 목적으로 수집제공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 공개된 매체등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함 (표준지침 제4항)

- 개인정보 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

※ 공개된 개인정보 예시(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

- (공개형 SNS 메시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개 목적이나 대상의 제한없이 불특정 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SNS에 공개한 여행후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 (인터넷 게시물) 불특정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블로그, 게시판 등의 게시물에 포함된 개인정보

※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된 정보를 수집·저장·조합·분석 등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식별화 조치를 취한 후 수집·저장·조합·분석 등을 처리하여야 함 (제4조 제1항)
-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그 사실과 목적을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해 공개하고, 이용자 등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처리정지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함(제4조 제2항 및 제3항)

판례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에게 제공한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그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한 것이므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수집·이용·제공 등의 처리를 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16.8.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의결례**국토교통부의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단속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운행 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국토교통부는 시·도지사 등의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불법명의 자동차 단속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불법명의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제공하는 바, 이러한 자동차등록번호는 이미 공개된 정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번호·운행지역·운행 일시 등 운행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회 결정 제2020-10-178호).

Question 1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해당 교수가 재직 중인 학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집하여 별도의 사이트에서 유료로 제공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Answer

| 학과 홈페이지 등에 자발적으로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이므로 유료 등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여도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 정보주체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미 공개한 개인정보는 공개 당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나 제3자 제공 등의 처리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의를 하였다고 할 것임
- 공개된 개인정보를 객관적으로 보아 정보주체가 동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동意的 범위가 외부에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또다시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정보주체의 공개의사에도 부합하지 않고 정보주체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무의미한 동의절차를 밟기 위한 비용만을 부담시키는 결과가 됨
- 추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는 공개된 개인정보 등을 수집·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러한 사후통제에 의하여 보호 받게 됨

- 따라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나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인지는 공개된 개인정보의 성격, 공개의 형태와 대상 범위, 정보주체의 공개 의도 내지 목적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자의 정보제공 등 처리의 형태와 정보제공으로 공개의 대상 범위가 원래의 것과 달라졌는지, 정보제공이 정보주체의 원래의 공개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사례 중심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X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1. 개인정보의 열람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권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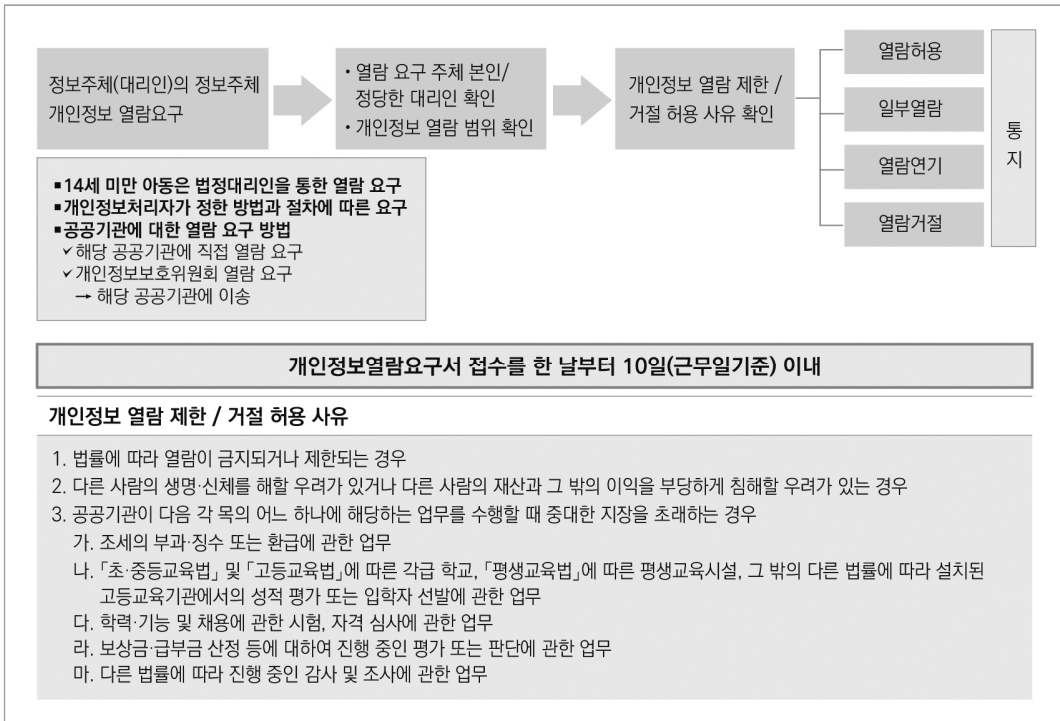
X |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법률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연기 및 거절)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제48조(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표준지침	제31조(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 제32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3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제34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제45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상) 제46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고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7호) 제3조(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열람	◆ “열람”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 열람이 허용되는 개인정보를 해당 개인 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보는 것을 말하며 사본을 포함함
정정요구	◆ “정정요구”란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가 그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처리자에게 잘못된 개인정보를 고쳐서 바로잡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함
삭제요구	◆ “삭제요구”란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가 그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처리자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청구하는 행위를 말함

1. 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처리 절차]



● 개인정보 열람의 대상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음. 열람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가 직접 제공한 개인정보는 물론 제3자 또는 공개된 정보원 으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자가 생산한 개인정보(민원처리기록, 주민등록등본 등 온라인문서발급기록, 진료기록, 생계급여지급내역, 신용평가, 인사평가, 거래내역, 진료기록 등), 서비스제공 등의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개인정보(수발신내역, 입출기록, 쿠키, 로그 기록 등) 등을 포함함

Question 1 개인 진료기록을 의료진이 사전에 열람한 경우 불법인지? (표준 해석례 23)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 후 다시 재입원하였을 때 1차 입원내역을 환자가 열람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동 간호사가 진료목적으로 열람하였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Answer

| 환자의 동의를 받아 1차 진료기록을 사전 열람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나, 「의료법」 제21조(기록열람)에 의료기관 종사자의 환자 의료기록 열람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보호법을 적용하여야 함
-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음
 - 따라서 재입원 환자의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가 1차 진료기록을 사전 열람하려면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Question 2 재개발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열람시 동의가 필요한지?
(표준 해석례 31)**

우리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4항에 따라 조합원 등이 요청할 경우 조합원 명부를 열람시켜주고 있으나, 일부 조합원이 자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 재개발 조합은 조합원 명부에 포함된 조합원 상호간 정보제공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가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함. 다만,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열람이 허용되지 않음

● 개인정보 열람 방법 및 절차

- 정보주체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사항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보주체는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함. 다만, 공공기관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와 같거나 보다 쉬워야 한다”는 것을 말함

개인정보 열람 요구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할 때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

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대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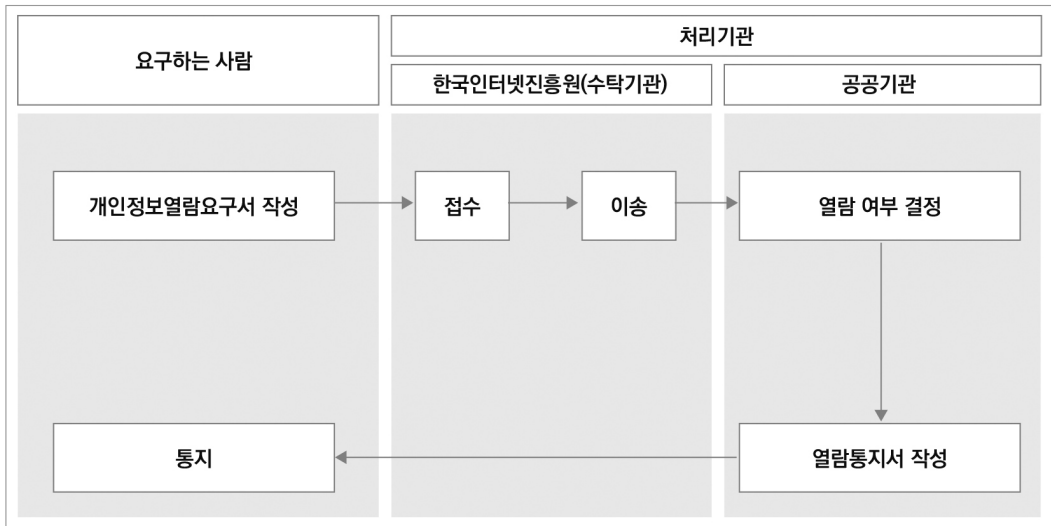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해야 함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small>※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 쪽)</small>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귀하		
작성방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요구내용'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input type="checkbox"/>]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small>210mm × 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small>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됨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처리 절차]



●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한 대응

① 열람 조치 및 통지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 경우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등을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다만,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음

② 열람의 연기

-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받았지만,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음. 열람연기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연기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연기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열람연기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③ 열람제한

-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다음의 개인정보 열람 제한·거절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 그리고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등을 ‘일부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다만,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음

개인정보 열람 제한·거절 사유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④ 열람거절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열람 제한·거절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열람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열람(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개인정보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일부열람 <input type="checkbox"/> 열람연기 <input type="checkbox"/> 열람거절) 통지서		
(알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일부열람 <input type="checkbox"/> 열람연기 <input type="checkbox"/> 열람거절)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물·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열람 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팩스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②우송료
	수수료 산정 명세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용합니다.	
<p>「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발신명의 직인</p>		
210mm×297mm[신문용지 64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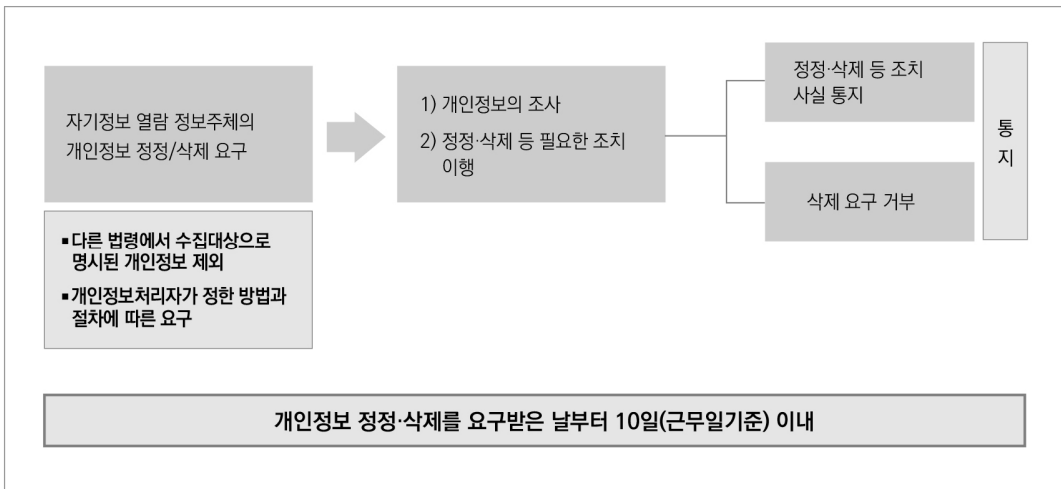
조 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75조 제2항 제10호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 제4항 제9호	제35조 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가명정보의 적용 제외

- 가명정보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보 주체는 가명정보에 대하여 열람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권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처리 절차]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의 주체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임.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개인정보 보존 의무를 규정한 법령]

법령이름	내용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p>제41조(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 의무 등) ① 법 제15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살인·인질강도 등 개인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조 제1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 12개월. 다만, 시외·시내전화역무와 관련된 자료인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2. 법 제2조 제11호 마목 및 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 3개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p>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도로교통법 시행령	<p>제94조(범칙금의 납부 통고 등) ①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63조에 따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범칙금 납부통고서와 범칙금 영수증서 및 범칙금 납부 고지서(이하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발급하고, 범칙금 납부 고지서 원부와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본인의 위반 사실을 인터넷 조회·납부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이 시스템을 통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등을 발급받거나 바로 범칙금을 낸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등을 발급한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및 운전면허번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p>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① 법 제5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징수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성명(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포함한다), 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주소, 체납액(체납된 징수금, 연체금 및 체납 처분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류·납부기한·금액 및 체납요지 등을 말한다.</p>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대상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가운데 정보주체가 열람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한정됨.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정정·삭제 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방법 및 절차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와 같거나 보다 쉬워야 한다”는 것을 말함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할 때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

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홈페이지에 정정·삭제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에 대한 대응

① 증거자료의 조사 등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 정정·삭제

-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그렇지만,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한 개인정보가 다른 법령에서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함. 따라서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 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조사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조 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73조 제2호	제36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제75조 제2항 제11호	제3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등 조치 및 통지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정·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그 결과 정보주체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개인정보 정정·삭제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조 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75조 제4항 제9호	제3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 알리지 아니 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함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방법]

방법	예시
완전파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가 저장된 회원가입신청서 등의 종이문서, 하드디스크나 자기테이프를 파쇄기로 파기하거나 용해, 또는 소각장, 소각로에서 태워서 파기 등
전용소자장비 이용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가우저(Degausser)를 이용해 하드디스크나 자기테이프에 저장된 개인정보 삭제 등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가 저장된 하드디스크에 대해 완전포맷(3회 이상 권고) 데이터 영역에 무작위 값(0, 1 등)으로 덮어쓰기(3회 이상 권고) 해당 드라이브를 안전한 알고리즘 및 키 길이로 암호화 저장 후 삭제하고 암호화에 사용된 키 완전 폐기 및 무작위 값 덮어쓰기 등

③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통지 등

-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정정·삭제하거나 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사항을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알리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필요한 조치의 방법과 절차는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등 조치 및 통지’에 따름

④ 삭제 거부의 통지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삭제의 요구에 따르지 않기로 한 사실, 그 이유와 이익제기 방법을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개인정보를 수집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법령]

법령 이름 및 조문	내용 및 수집하는 개인정보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후보자명부 - 성명, 현주소, 최종학교명, 병역관계(군별, 전역 구분), 임명연월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 신고번호), 국적, 체류자격, 월소득액 등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 시행규칙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부고지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근로기준법 제48조 / 시행령 제27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금대장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고용 연월일,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 시행규칙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증 발급 신청 - 신청인 및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칙금납부통고서·범칙금영수증서·범칙금납부고지서의 발급 -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및 운전면허번호, 통고처분 연월일 등
약사법 제3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제기록부 - 환자의 인적 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등
의료법 제18조 / 시행규칙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방전 -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의료인의 성명·면허종류 및 번호 등
지능형전력망법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능형전력망 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 시행령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태료 부과 고지서 -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 원인인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법령 등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서]

개인정보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요구 내용	
<input type="checkbox"/> 정정·삭제 <input type="checkbox"/> 처리정지 조치 내용	
<input type="checkbox"/> 정정·삭제 <input type="checkbox"/>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p>「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발신명의 직인</p> <div style="background-color: #cccccc; text-align: center; padding: 5px;">유의사항</div> <p>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p>	
210mm×297mm[신분용지 54g/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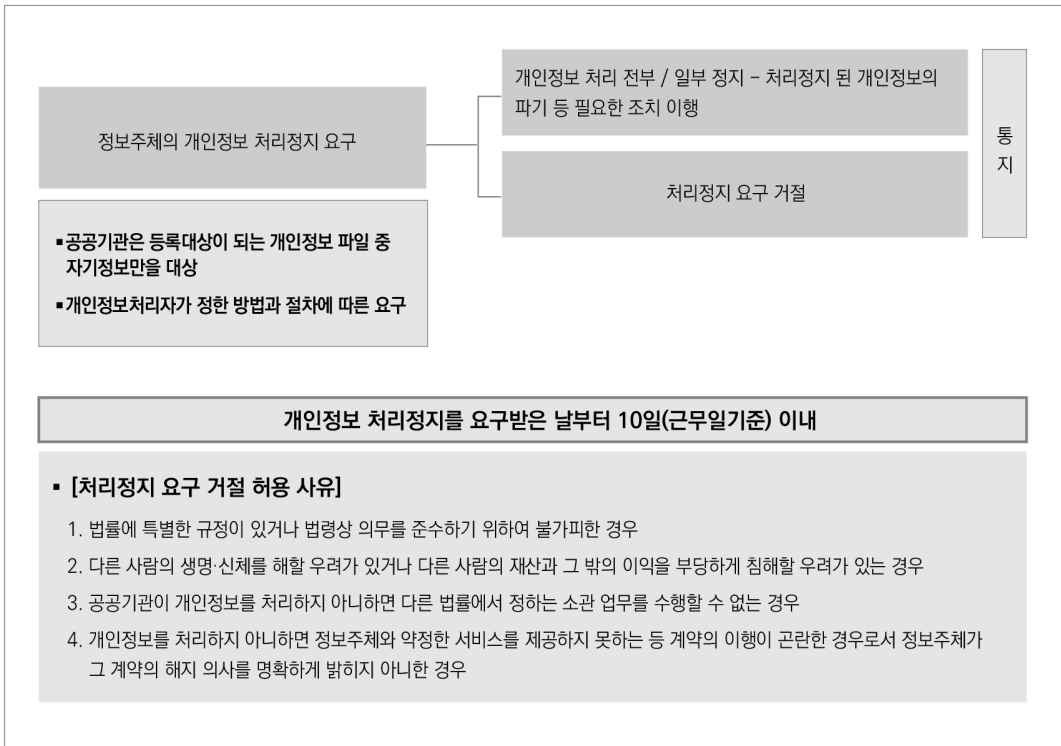
조 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75조 제4항 제9호	제36조 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가명정보의 적용 제외

- 가명정보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보주체는 가명정보에 대하여 정정·삭제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처리 절차]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정보주체는 요구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음
-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할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만을 대상으로 함. 따라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해당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없음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없는 개인정보파일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정보주체가 그 처리에 동의한 것을 철회하는 것보다 그 범위가 넓으며, 그 대상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처리정지 요구권과 동의권 철회의 차이]

처리정지요구권	동의권 철회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 관계 없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를 한 개인정보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방법 및 절차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정지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여기에서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은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와 같거나 보다 쉬워야 한다”는 것을 말함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할 때 주의하여야 하는 사항

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은 홈페이지에 처리정지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대응

① 개인정보 처리정지 조치 및 통지

- 이 개인정보 처리정지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함.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조 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73조 제3호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제75조 제2항 제12호	제3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② 개인정보 처리정지 거절 및 통지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음.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서]

개인정보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주민번호: , 주소)
요구 내용	
<input type="checkbox"/> 정정·삭제 <input type="checkbox"/> 처리정지 조치 내용	
<input type="checkbox"/> 정정·삭제 <input type="checkbox"/>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p>「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발신명의 직인</p> <div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cccccc; padding: 5px;">유의사항</div> <p>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p>	
210mm×297mm[신문용지 54g/m ²]	

조 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75조 제4항 제9호	제3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③ 처리정지 요구된 개인정보의 파기 등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파기를 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자는 파기 이외에 정보주체가 요구한 처리정지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최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예를 들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정지가 요구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도록 해당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별도의 개인정보파일에 분리·보관하거나, 해당 개인정보가 처리정지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하여야 함

● 가명정보의 적용 제외

- 가명정보에는 이름, 연락처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보주체는 가명정보에 대하여 처리정지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다만,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가 가명정보로 처리되기 이전에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등

● 권리행사 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대리인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②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을 통하여서만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음. 그러므로 14세 이상의 정보주체는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음. 대리인이 정보주체를 대리하여 열람등 요구를 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의 “위임장(법정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지 않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함

[위임장]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 열람등요구에 대한 대응

① 정보주체 본인 확인 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이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같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음
- 정보주체 본인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본인확인을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면 됨

[본인확인 방법]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핀인증, 휴대폰인증, 간편인증(kb모바일인증서, PAYCO, 삼성PASS, 카카오톡, 통신사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및 비밀번호, 지문보안인증 등
오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② 정보주체의 대리인 확인 방법

- 정보주체의 대리인 확인에 대하여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본인확인을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면 됨
- 따라서 열람등요구를 하려는 정보주체의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 본인에 관한 신원확인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와 대리인 사이의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다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같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음

[정보주체와 대리인 사이의 대리관계 증명 방법 (예시)]

정보주체와 대리인 사이의 대리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
법정대리인의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확인

③ 공공기관의 특례

- 공공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④ 열람등요구 방법의 제공 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 열람등요구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같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음
- 또한, 정보주체가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행사 방법, 예를 들면, 방문,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웹사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⑤ 이의제기절차 마련 및 안내 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함. 특히 이의제기를 받은 후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한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기관 내부의 통제장치를 마련하여야 함

● 수수료 및 우송료 청구

-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사람에게 수수료와 사본의 우송을 청구받은 경우에 한하여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음.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함
-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게 할 수 있음

수수료 또는 우송료 내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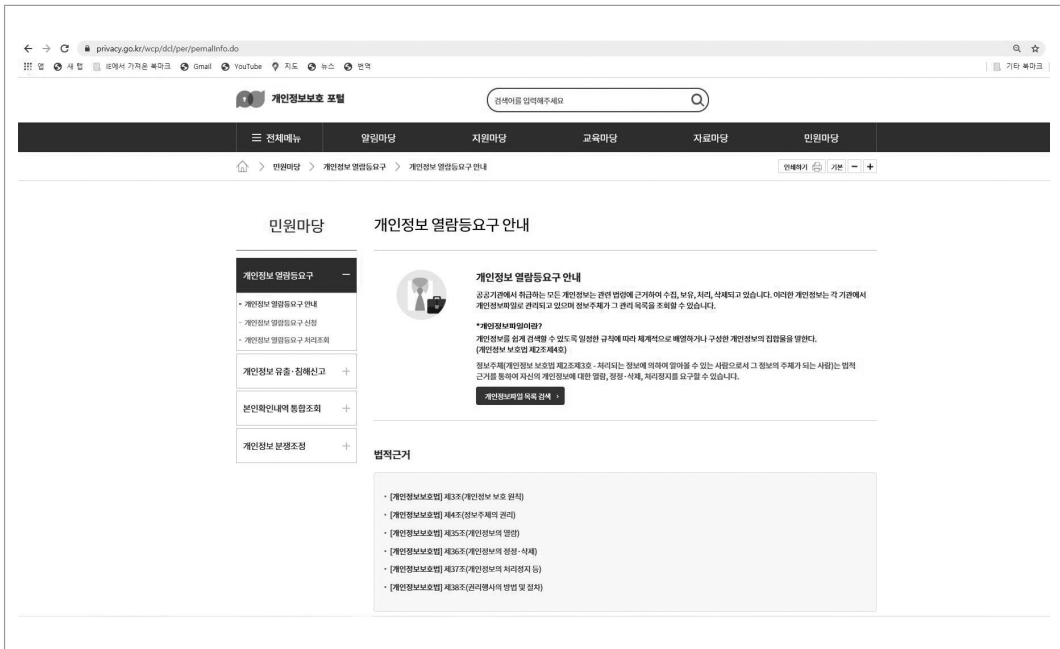
1. 국가기관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에게 내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 정하는 방법

-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음
- 다만, 정보주체가 단순히 ‘궁금하다’ 또는 ‘확인해 보고 싶다’는 등의 사유로 열람등요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한 정보주체에게 수수료와 우송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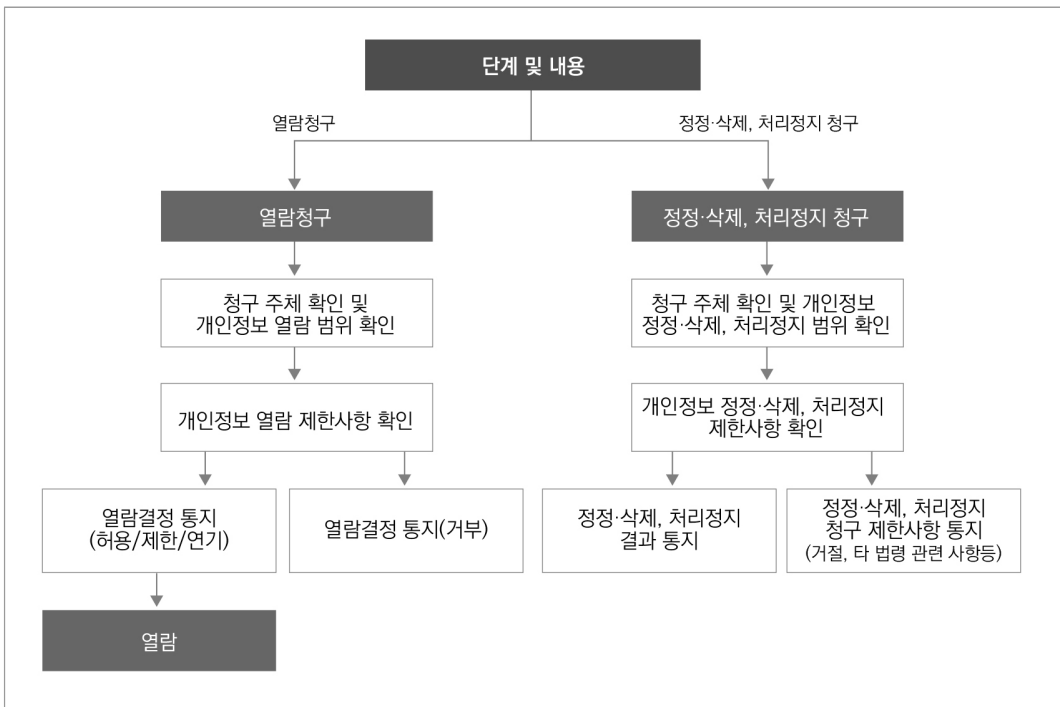
● 열람등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 공공기관은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를 갈음하여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그 밖의 절차를 정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에 관한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의 메뉴 가운데 ‘민원마당’ 내 ‘개인정보 열람등요구’에서 열람등요구의 안내를 받고, 신청 및 처리 조회를 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의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신청 및 처리 조회]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신청 방법 및 절차]





사례 중심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XI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1.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2. 개인정보처리자 유형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이행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안전조치
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 조치
6.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7. 개인정보의 파기

XI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법률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표준지침	제47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제3조 (안전조치 기준 적용) 제4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 (접근 권한의 관리) 제6조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제9조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제10조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제11조 (물리적 안전조치) 제12조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제13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구 분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유량 (전체 총합)			
		1만명 미만	1만명~10만명 미만	10만명~100만명 미만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공공기관	유형2(표준)		유형3(강화)	
	대기업				
	중견기업	유형2(표준)		유형3(강화)	
	중소기업				
	소상공인	유형1(완화)	유형2(표준)		
	개인				
단체	유형1(완화)	유형2(표준)		유형3(강화)	

유 형	적용대상
유형 1 (완화)(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유형 2 (표준)(1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 1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유형 3 (강화)(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단체

1.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부과함.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그 당시의 최신보안 기술 등을 고려해서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시행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성 확보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고시’(告示)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고시”는 법령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법령 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법규적 사항을 정하거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함

판례

고시에서 정하는 조치 기준을 준수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고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으로도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나아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고 이러한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4904, 24911, 24928, 24935 판결).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관리 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구 분	내 용
관리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접근 권한의 관리
기술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통제 •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물리적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안전조치

2. 개인정보처리자 유형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이행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에 대한 입증책임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함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안전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계획, 규정, 지침 등을 말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 결정 절차를 통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내부관리계획 포함 사항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유형 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유형 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2호-제14호까지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의 포함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연 1회 이상으로 내부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하여야 함

● 접근권한의 관리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관리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함

※ 업무용 컴퓨터의 경우에도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이 설치·운영되어 다수의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될 수 있음. 다만,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운영되지 않는 PC, 노트북과 같은 업무용 컴퓨터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제외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은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자에 한정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접근권한에 대한 조치

-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함
 - ① 가명정보에 접근권한이 있는 담당자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명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담당자와 추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담당자를 반드시 구분하여야 함
 - ② 가명정보에 접근권한이 있는 담당자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야 함
 - ③ 소상공인으로서 가명정보를 취급할 자를 추가로 둘 여력이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의 분리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접근권한 부여 및 접근권한의 보유현황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등 접근권한을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함
 - ※ 예를 들면, 직원의 퇴직 시 해당 직원의 계정을 지체없이 변경·말소하는 조치 등을 내부관리계획 등에 반영하여 이행하도록 함
 - ※ 또한, 직원의 퇴직 시 계정 말소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퇴직점검표에 사용자계정의 말소 항목을 반영하여, 계정 말소 여부에 대해 확인을 받을 수도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는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발급과정과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보관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별로 사용자계정(ID)을 발급하고,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별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추적성을 확보하여야 함

◆ **“책임추적성”(Accountability)이란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용자계정을 기반으로 책임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말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특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DB관리자의 비밀번호는 복잡하게 구성하고 변경 주기를 짧게 하는 등 강화된 안전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다만, 비밀번호 이외의 추가적인 인증에 사용되는 휴대폰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은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함**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 규칙

-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 최소 8자리 이상 :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 ※ 문자 종류 :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 최소 10자리 이상 : 하나의 문자 종류로 구성한 경우
 - ※ 단, 숫자로만 구성할 경우 취약할 수 있음
-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
 - 동일한 문자 반복(aaabbbb, 123123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등), 일련번호(12345678 등), 가족 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하지 않음
- 비밀번호가 제3자에게 노출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해야 함
 - ※ 안전한 비밀번호 설정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암호이용활성화 홈페이지 (<https://seed.kisa.or.kr>)에서 제공하는 “패스워드 선택 및 이용 안내서”나 비밀번호 안전성 검증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사용자계정 잠금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계정정보·비밀번호 입력과 동시에 추가적인 인증수단(인증서, OTP 등)을 적용하여 정당한 접근권한자임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함
 - ※ 개인정보취급자에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다시 부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개인정보 취급자 여부를 확인 후 계정 잠금 해제 등의 조치가 필요함

[접근권한 관리의 안전조치 기준에 따른 적용 유형]

접근권한의 관리	유형1 (완화)	유형2 (표준)	유형3 (강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	○

접근권한의 관리	유형1 (완화)	유형2 (표준)	유형3 (강화)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 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	○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⑦ [별표]의 유형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6항을 아니할 수 있다.			

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접근통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또한,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 정책 설정,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이상 행위 대응, 로그 훼손 방지 등 적절한 운영·관리가 필요함

◆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함

접근통제시스템의 필요 기능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포트(Port), 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하도록 함 (침입차단기능)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포트(Port), MAC(Media Access Control) 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하고 접근 제한·차단 등 적절한 대응 조치를 하여야 함 (침입탐지 기능)

침입차단 및 침입탐지 기능을 갖춘 장비의 설치 방법 (예시)

- 침입차단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설치·운영
- 웹방화벽, 보안 운영체제(Secure OS) 등 도입
- 스위치 등의 네트워크 장비에서 제공하는 ACL(Access Control List : 접근제어목록) 등 기능을 이용하여 IP주소 등을 제한함으로써 침입차단 기능을 구현
- 공개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운영체제(OS)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여 해당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 다만, 공개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안이 이루어지는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정기적인 업데이트 여부 등 확인 후 적용 필요
- 이외에도, 인터넷데이터센터(IDC),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 등도 활용 가능

-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접근통제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OS)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설정하고 이용할 수 있음

업무용 컴퓨터 (윈도우의 경우) 방화벽 설정 방법

- 업무용 컴퓨터 : 제어판 >> Windows 방화벽 >> Windows 방화벽 설정 또는 해제
- ※ 업무용 컴퓨터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개인용 방화벽 설정 시 외부 IP로부터 시도되는 불법적인 접근 등을 차단함

-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운영체제(OS)나 별도의 보안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음. 모바일기기에서는 네트워크 및 소프트웨어 통제, 인입 포트 차단 등의 접근통제기능을 제공하는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접근통제기능을 제공하는 방화벽 등 애플리케이션(App)을 설치·운영을 할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을 적용하여야 함. 다만, 인증수단만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통신보안을 위한 암호화 기술의 추가 적용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안전한 접속수단을 권고함

◆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이란 개인정보취급자가 사업장 내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해 원격으로 접속할 때 IPsec이나 SSL 기반의 암호 프로토콜을 사용한 터널링 기술을 통해 안전한 암호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안 시스템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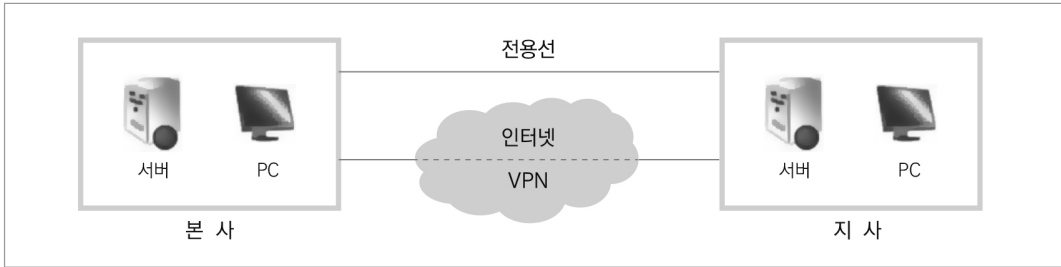
- ① “IPsec”(IP Security Protocol)이란 인터넷 프로토콜(IP) 통신 보안을 위해 패킷에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프로토콜 집합을 말함
- ② “SSL”(Secure Socket Layer)이란 웹 브라우저(클라이언트)와 웹 서버(서버)간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기 위해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보안 프로토콜을 말함
 - ※ IPsec, SSL 등의 기술이 사용된 가상사설망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잘 알려진 취약점 (예시: Open SSL의 HeartBleed 취약점)들을 조치하고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전용선”이란 물리적으로 독립된 회선으로서 두 지점 간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회선으로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본점과 지점간 직통으로 연결하는 회선 등을 말함

◆ “안전한 인증수단”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사용자를 식별하고 확인하는 다음과 같은 수단 등을 말함

- ① 인증서(PKI, Public Key Infrastructure) :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대방과의 신원확인, 거래 사실증명, 문서의 위·변조 여부 검증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전자서명으로서 해당 전자서명을 생성한 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
- ② 보안토큰 : 암호 연산장치 등으로 내부에 저장된 정보가 외부로 복사, 재생성되지 않도록 공인인증서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스마트카드, USB 토큰 등이 해당
- ③ 일회용 비밀번호(OTP, One Time Password) : 무작위로 생성되는 난수를 일회용 비밀번호로 한 번 생성하고, 그 인증값이 한 번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

[가상사설망 및 전용선 구성 예시]



-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해 열람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통제 등 조치 내용 (예시)

- 인터넷 홈페이지 중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는 사이트 또는 URL (Uniform Resource Locator)에 대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함
- 인터넷 홈페이지의 설계·개발 오류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상 부주의 등으로 인터넷 서비스 검색엔진(구글링 등) 등을 통해 관리자 페이지와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웹 취약점을 점검함(권고사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P2P, 공유설정은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다만,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해 권한이 있는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에 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업무상 필요에 따른 접근통제 시 주의사항

-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라도 드라이브 전체 또는 불필요한 폴더가 공유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유폴더에 개인정보파일이 포함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함

- 이외에도 상용 웹메일, 웹하드, 메신저, SNS 서비스 등을 통하여 고의 혹은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조치 등이 해당될 수 있음
- ※ P2P, 웹하드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사용금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상에서 해당 포트를 차단하는 등 근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공개된 무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신뢰되지 않은 무선접속장치(AP), 무선 전송구간 및 무선접속장치의 취약점 등에 의해 열람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에 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접근통제 등에 관한 안전조치 방식

- 비밀번호 등 송신 시 SSL, VPN 등의 보안기술이 적용된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암호화하여 송신
 - ※ 모바일기기, 노트북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개인정보 전송시, 전송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별도의 앱(APP)이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송
- 고유식별정보 등이 포함된 파일 송신 시 파일을 암호화하여 저장 후 송신
 - ※ 모바일기기, 노트북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파일송신시, 암호화 저장 후 송신
- 개인정보 유출 방지 조치가 적용된 공개된 무선망을 이용
 - ※ 모바일기기, 노트북에서 설치자를 신뢰할 수 있고 관리자 비밀번호 등을 포함한 알려진 보안 취약점이 조치된 무선접속장치에 안전한 비밀번호를 적용한 WPA2(Wi-Fi Protected Access 2)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공개된 무선망 사용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하여야 함. 인터넷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점검할 때에는 기록을 남겨 책임추적성 확보 및 향후 개선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인터넷 홈페이지의 취약점 점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체 인력, 보안업체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취약점 점검은 상용 도구, 공개용 도구, 자체 제작 도구 등을 사용할 수 있음

웹 취약점 점검 항목 (예시)

- 웹 취약점 점검 항목 예시 : SQL_Injection 취약점, CrossSiteScript 취약점, File Upload 및 Download 취약점, ZeroBoard 취약점, Directory Listing 취약점, URL 및 Parameter 변조 등
 - ※ 잘 알려진 웹 취약점 점검 항목은 행정안전부,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 한국인터넷진흥원(KrCERT), OWASP(오픈소스웹보안프로젝트) 등에서 발표하는 항목 참조
 - ※ 웹 취약점 점검과 함께 정기적으로 웹 셸 등을 점검하고 조치하는 경우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는 위험성을 더욱 줄일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접속의 차단에는 업무용 컴퓨터의 화면보호기 등은 접속차단에 해당하지 않음

◆ “접속의 차단”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업무용 컴퓨터 등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말함

-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업무처리를 하지 않아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된 이후, 다시 접속하고자 할 때에도 최초의 로그인과 같은 방법으로 접속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모바일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

- 비밀번호, 패턴, PIN, 지문, 홍채 등을 이용한 화면 잠금 설정
- 디바이스 암호화 기능을 사용한 APP, 데이터 등의 암호화
- USIM 카드 잠금 설정

- 모바일기기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한 원격 잠금 및 원격 데이터 삭제
- 중요 개인정보 처리 모바일 기기의 경우 MDM 등 모바일 단말 관리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원격 잠금, 원격 데이터 삭제, 접속통제 등
 - ※ MDM(Mobile Device Management)은 무선망을 이용해 원격으로 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기기를 제어하는 솔루션으로서, 분실된 모바일기기의 위치추적, 잠금설정, 정보삭제, 특정 사이트 접속 제한 등의 기능 제공
 - ※ 모바일기기의 도난 또는 분실 시 원격 잠금, 데이터 삭제 등을 위해 제조사별로 지원하는 '킬 스위치(Kill Switch) 서비스' 또는 이동통신사의 '잠금 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접근통제의 안전조치 기준에 따른 적용 유형]

접근권한의 관리	유형1 (완화)	유형2 (표준)	유형3 (강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	○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 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④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접근권한의 관리	유형1 (완화)	유형2 (표준)	유형3 (강화)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기기의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	○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모바일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⑧ [별표]의 유형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 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함

◆ "생체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①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②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하거나 ③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④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의 통신 암호 프로토콜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SSL 적용 (예시)]



- 보조저장매체를 통해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도 암호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 등이 사용 될 수 있음

◆ "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쉽게 연결·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함

보조저장매체를 통한 암호화 방법

- 암호화 기능을 제공하는 보안 USB 등의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전달
- 해당 개인정보를 암호화 저장 한 후 보조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전달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정보를 제외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암호화 조치가 필수는 아니지만, 개인정보의 위·변조 및 유·노출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암호화 조치를 하도록 권장됨
-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생체정보를 DB 또는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노출 또는 위·변조되지 않도록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비밀번호, 생체정보의 암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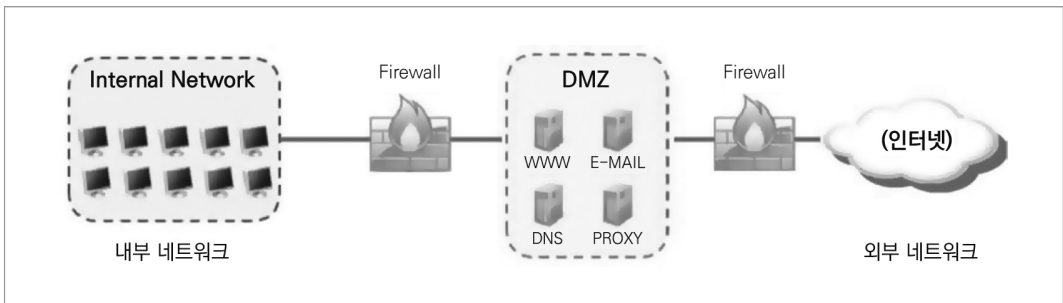
-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 ※ 일방향 암호화는 저장된 값으로 원본 값을 유추하거나 복호화 할 수 없도록 한 암호화방법을 말함
 - ※ 인증검사를 할 때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를 일방향 함수에 적용하여 얻은 결과값과 시스템에 저장된 값을 비교하여 인증된 사용자임을 확인함
- 생체정보를 식별 및 인증 등의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복호화가 가능한 양방향 암호화 저장을 할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함

- ◆ “인터넷 구간”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인터넷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구간을 말함
- ◆ “DMZ 구간”이란 인터넷과 내부망 사이에 위치한 중간 지점 또는 인터넷 구간 사이에 위치한 중간지점으로서 인터넷 구간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한 영역을 말함(침입차단시스템등으로 접근 제한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해당)
- ◆ “내부망”이란 접근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차단되어 외부에서 직접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을 말함

- 인터넷 구간이나 DMZ 구간은 외부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하므로 외부자의 침입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DMZ 구간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함. 또한, 비밀번호 및 생체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도 암호화하여 저장해야 함

[DMZ 구간 (예시)]



-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 기준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2. 공공기관 이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 내부망에 주민등록번호를 저장하는 경우, 법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또는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의 결과에 관계없이 암호화하여야 함

◆ “위험도 분석”이란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를 말함

- 내부망에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 여부 및 적용 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정보를 암호화 하는 경우에는 국내 및 미국, 일본, 유럽 등의 해외 암호연구 관련 기관에서 사용 권고하는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함

[국내·외 암호 연구 관련 기관의 권고 암호 알고리즘 (예시)]

분류	미국(NIST)	일본 (CRYPTREC)	유럽 (ECRYPT)	국내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AES-128/192/256 3TDEA	AES-128/192/256 Camellia-128/192/256	AES-128/192/256 Camellia-128/192/256 Serpent-128/192/256	SEED HIGHT ARIA-128/192/256 LEA-128/192/256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메시지 암호·복호화)	RSA (사용 권고하는 키길이 확인 필요)	RSAS-OAEP	RSA-OAEP	RSAES
일방향 암호 알고리즘	SHA-224/256/384/512	SHA-256/384/512	SHA-224/256/384/512 Whirlpool	SHA-224/256/384/512

※ 안전한 암호알고리즘, 암호화 방식 등은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를 참조하고, 해당 자료는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privacy.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 국내외 암호 연구 관련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암호이용활성화 홈페이지(<https://seed.kisa.or.kr>)의 “암호 표준화 및 유관기관”에서도 확인 가능함

※ 국가정보원 검증대상 암호 알고리즘 목록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함
- ③ 암호 키는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호화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암호 키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라이프사이클 단계별 암호 키 관리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함

암호 키 관리 (예시)

1. 준비 단계: 암호 키가 사용되기 이전의 단계

- 암호 키 생성
 - 암호 키 생성에 필요한 난수는 안전한 난수발생기(RNG)를 이용하여 생성
 - 비대칭키 알고리즘 키 생성 방식: 디지털 서명을 위한 키 쌍 생성, 키 설정을 위한 키 쌍 생성
 - 대칭키 알고리즘 방식: 미리 공유된 키, 패스워드, 다수의 암호 키를 이용한 키 생성 등
- 암호 키 분배
 - 대칭키 알고리즘 키 분배 방식: 수동적 키 분배, 자동화된 키 전송 등
 - 비대칭키 알고리즘의 키 분배 방식
 - 기타 키 자료 생성 및 분배 방식: 영역 파라미터, 초기값, 공유된 비밀, RNG 시드, 다른 공개 및 비밀정보, 중간값, 난수, 패스워드 등

2. 운영 단계: 암호 키가 암호 알고리즘 및 연산에 사용되는 단계

- 암호 키의 유효기간동안 사용되는 키 자료들은 필요에 따라 장비 모듈에 보관되거나 별도의 저장 매체에 보관 등으로 저장해야 함
- 암호 키는 하드웨어 손상 또는 소프트웨어 오류 등의 사유로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용성 보장을 위해서는 키 백업 및 키 복구 등이 가능해야 함
- 암호 키가 노출되거나 노출의 위협이 있는 경우 그리고 암호 키 유효기간의 만료가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암호 키를 다른 암호키로 안전하게 변경해야 함

3. 정지 단계: 암호 키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지만, 암호 키에 대한 접근은 가능한 단계

- 암호 키 보관 및 복구
 - 암호 키는 수정이 불가한 상태이거나 새로운 보관 키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암호화
 - 운영 데이터와 분리되어 보관하며, 암호 정보의 사본들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보관
 - 암호 키는 응용프로그램의 소스 프로그램 내에 평문으로 저장 금지
 - 암호화되는 중요한 정보에 대한 보관 키는 백업되어야 하며, 사본은 다른 곳에 보관 등
- 모든 개인 키나 대칭 키의 복사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즉시 파기하여야 함
- 암호 키 손상시 유효기간 내에 키 자료를 제거하고, 보안 도메인에 속해있는 실체의 권한을 삭제하여 말소된 실체의 키 자료의 사용을 방지해야 함

4. 폐기 단계: 암호 키가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는 단계(폐기 또는 사고 상태)

- 일반적으로 폐기 단계의 키 자료에 대한 모든 기록은 삭제(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감사를 목적으로 특정 키 속성 유지가 필요할 수도 있음)
- 폐기 상태의 암호 키와 사고 상태의 암호 키들의 특성에 대한 기록 유지 등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부터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기기에 내려 받아 저장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탑재된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해당 파일을 암호화하여 불법적인 유·노출 및 접근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함

오피스에서 파일 암호화 설정방법

- 한컴오피스 : 파일 →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 문서 암호 설정에서 암호 설정 기능
- MS 오피스 : 파일 →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 도구 → 일반옵션에서 암호 설정 기능

[암호화 적용 기준 요약표]

구 분		암호화기준		
정보통신망, 보조저장매체를 통한 송신시	비밀번호, 생체정보,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송신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저장시	비밀번호		일방향(해쉬함수) 암호화저장	
	생체정보		암호화저장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암호화저장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운전면허 번호	인터넷구간,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지점(DMZ)	암호화저장
내부망에 저장		암호화저장 또는 다음 항목에 따라 암호화 적용여부·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공공 기관의 경우, 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에 저장시	비밀번호, 생체정보,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저장 ※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저장	

[개인정보 암호화의 안전조치 기준에 따른 적용 유형]

접근권한의 관리	유형1 (완화)	유형2 (표준)	유형3 (강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생체인식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	○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 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2.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	○	○
부칙 제2조(적용례) 영 제21조의2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 적용시기 이후에는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제7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	○	○
⑧ [별표]의 유형1 및 유형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6항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함
- ◆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함.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함

보관·관리하여야 하는 접속기록

- ① 계정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ID 등 계정 정보
- ② 접속일시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 ③ 접속자정보 : 접속한 자의 PC, 모바일기기 등 단말기 정보 또는 서버의 IP주소 등 접속주소
- ④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 기록하는 정보주체 정보의 경우 민감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으므로 정보주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보(가명정보ID, 일련번호 등)가 있다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항목으로 해당 정보를 기록하여야 하며, 정보주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는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항목을 남기지 아니할 수 있음
 - ※ 검색조건문(쿼리)을 통해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했을 경우 해당 검색조건문을 정보주체 정보로 기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DB테이블 변경 등으로 책임추적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시점의 DB를 백업하는 등 책임추적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⑤ 수행업무 :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정보
 -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이 수행업무에 해당할 수 있음

검색조건문(쿼리) 예시

- ‘김’씨 성을 가진 회원을 조회하는 경우
 - ※ 정보주체의 정보 : `SELECT * FROM student WHERE name LIKE '김%';`
 - ※ name: 학생이름(컬럼), student: 학생정보(테이블)
- 영화를 연간 50회 이상 관람한 고객에게 VIP 등급부여
 - ※ 정보주체의 정보 : `UPDATE member SET membership='VIP' WHERE movie_count_per_year>=50;`
 - ※ member: 회원정보(테이블), membership: 고객정보(컬럼), movie_count_per_year: 연간 영화관람 건수(컬럼)

접속기록 항목 예시

- 계정 : A0001(개인정보취급자 계정)
- 접속일시 : 2019-02-25, 17:00:00
- 접속지 정보 : 192.168.100.1(접속한 자의 IP주소)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CLI060719(정보주체를 특정하여 처리한 경우 정보주체의 식별정보)
- 수행업무 : 회원목록 조회, 수정, 삭제, 다운로드 등
 - ※ 위 정보는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환경에 따라 책임추적성 확보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로 기록해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접속기록을 최소 보관기간 이후에도 즉시 삭제하지 않고, 책임추적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중요도 및 민감도 등을 고려하여 내부 관리계획에 보관기간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비인가자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시도기록 및 정보주체에 대한 접속기록까지 보관·관리하고 정기적으로 확인·감독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비정상 행위 등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접속기록 내 비정상 행위 (예시)

- 계정 : 접근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계정으로 접속한 행위 등
- 접속일시 : 출근시간 전, 퇴근시간 후, 새벽시간, 휴무일 등 업무시간 외에 접속한 행위 등
- 접속지 정보 : 인가되지 않은 단말기 또는 지역(IP)에서 접속한 행위 등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특정 정보주체에 대하여 과도하게 조회, 다운로드 등의 행위 등
- 수행업무 : 대량의 개인정보에 대한 조회, 정정, 다운로드, 삭제 등의 행위 등
- 그 밖에 짧은 시간에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지역(IP)에서 접속한 행위 등

- 개인정보처리자는 접속기록 점검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부서가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거나 특정부서가 여러 개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점검할 수 있음
- 특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내부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의 오·남용이나 유출을 목적으로 다운로드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지체없이 개인정보취급자가 다운로드한 개인정보를 회수하여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다운로드”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개인정보를 엑셀, 워드, 텍스트, 이미지 등의 파일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말함

다운로드 사유확인이 필요한 기준 책정 (예시)

- (다운로드 정보주체의 수) 통상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건수가 일평균 20건 미만인 소규모 기업에서 개인정보취급자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사유 확인
- (일정기간 내 다운로드 횟수) 개인정보취급자가 1시간 내 다운로드한 횟수가 20건 이상일 경우 단시간에 수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행위에 대한 사유 확인
- (업무시간 외 다운로드 수행) 새벽시간, 휴무일 등 업무시간 외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 사유 확인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 기록을 다음과 같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특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임의적인 수정·삭제 등이 불가능하도록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관리 방법

- 상시적으로 접속기록 백업을 수행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이외의 별도의 보조저장매체나 별도의 저장장치에 보관
- 접속기록에 대한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D-ROM, DVD-R, WORM(Write Once Rad Many) 등과 같은 덮어쓰기 방지 매체를 사용
- 접속기록을 수정 가능한 매체(하드디스크, 자기테이프 등)에 백업하는 경우에는 무결성 보장을 위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별도의 장비에 보관·관리
- ※ 접속기록을 HDD에 보관하고,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MAC 값, 전자서명 값 등)는 별도의 HDD 또는 관리대장에 보관하는 방법 등으로 관리할 수 있음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하여야 함.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보안프로그램의 설치·운영시 준수사항

- ① 보안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 ②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 ③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 ① 보안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은 실시간 감시 등을 위해 항상 실행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실시간으로 신종·변종 악성프로그램이 유포됨에 따라 백신 상태를 최신의 업데이트 상태로 적용하여 유지해야 함. 특히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민감한 정보 등 중요도가 높은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키보드, 화면, 메모리해킹 등 신종 악성프로그램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보안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백신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은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야 함

[백신소프트웨어 설정 (예시)]

자동, 예약 업데이트	실시간, 예약 검사														
 <p>The screenshot shows the '환경설정' (Settings) window for an antivirus program. The '자동 업데이트 설정' (Automatic Update Settings) secti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It includes options for '자동 업데이트 설정' (Automatic Update Settings), '자동 업데이트 주기' (Automatic Update Cycle) set to '일일' (Daily), and '자동 업데이트 시간' (Automatic Update Time) set to '오후 12:00'. There are also checkboxes for '백신 업데이트 설정' (Virus Update Settings) and '백신 검사 업데이트 설정' (Virus Scan Update Settings).</p>	 <p>The screenshot shows the '환경설정' (Settings) window for an antivirus program. The '실시간 검사' (Real-time Scan) secti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It includes options for '실시간 검사' (Real-time Scan) and '예약 검사' (Scheduled Scan). Below this, there is a section for '예약 검사 설정' (Scheduled Scan Settings) with a table for configuring scans.</p> <table border="1" data-bbox="726 964 1223 1001"> <thead> <tr> <th>이름</th> <th>주기</th> <th>날짜</th> <th>시간</th> <th>종류</th> <th>검사할 항목</th> <th>설정 방법</th> </tr> </thead> <tbody> <tr> <td>예약검사</td> <td>일일</td> <td>12:00</td> <td>오후 12:00</td> <td>정기</td> <td>검사할 항목</td> <td>사용자</td> </tr> </tbody> </table>	이름	주기	날짜	시간	종류	검사할 항목	설정 방법	예약검사	일일	12:00	오후 12:00	정기	검사할 항목	사용자
이름	주기	날짜	시간	종류	검사할 항목	설정 방법									
예약검사	일일	12:00	오후 12:00	정기	검사할 항목	사용자									

- ②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 업체에서 보안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 운영체제(OS)·응용프로그램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는 악성프로그램 경보가 발령되었거나, 응용프로그램,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함
 - 운영체제나 응용프로그램 보안 업데이트 시 현재 운영중인 응용프로그램의 업무 연속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안 업데이트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한 자동으로 보안 업데이트가 설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한컴 오피스, MS 오피스 등 개인정보처리에 자주 이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은 자동업데이트 설정 시, 보안 업데이트 공지에 따른 즉시 업데이트가 용이함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적용 사항, 적용 일자 등 설치·변경·제거 사항을 기록하는 등 현상관리를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음

③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백신소프트웨어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 발견된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스파이웨어 등의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치료 등의 대응조치를 하여야 함
- 발견된 악성프로그램에 대해 백신소프트웨어에서의 삭제, 치료 등의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등을 분리하는 등 악성프로그램의 확산 방지를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 불법 또는 비인가된 보안프로그램 사용 시 신규 취약점 등을 삭제하기 위한 업데이트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악성코드 침투경로로 이용되어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함에 따라 정품 S/W만을 사용하도록 함

●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 “관리용 단말기”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관리용 단말기에 대한 안전조치 내용

- ①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 ②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 ③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①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특정 직원 등에 한하여 접근을 허용하는 등 업무관련자 이외의 인가 받지 않는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접근통제 등의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함

②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관리용 단말기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용 단말기를 통한 개인정보의 공유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시 고려사항

- 관리용 단말기의 종류에 따른 특성, 중요도
- 관리용 단말기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빈도 및 수행업무
- 관리용 단말기를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악성코드
- 전파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 등

③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감염방지를 위한 보안 프로그램의 최신상태 유지, 보안 업데이트 실시, 발견된 악성프로그램의 삭제 등 대응조치 등을 적용하여야 함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예시)

- 관리용 단말기 현황 관리(IP주소, 용도, 담당자, 설치 위치 등)
- 중요 관리용 단말기를 지정하여 외부 반출, 인터넷 접속, 그룹웨어 접속의 금지
- 관리용 단말기에 주요 정보 보관 및 공유 금지
- 비인가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부팅암호, 로그인 암호, 화면보호기 암호 설정
- 보조기억매체 및 휴대용 전산장비 등에 대한 접근 통제
- 정당한 사용자인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유지
- 악성코드 감염 방지를 위한 보안 프로그램의 최신상태 유지, 보안 업데이트 적용, 악성프로그램
- 삭제 등 대응조치
- 보안 상태 및 사용현황에 대한 정기점검 등

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 조치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의 수립·운영

-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함.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음

- ◆ “전산실”이란 다량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물리적인 공간으로 전기시설(UPS, 발전기 등), 공조시설(항온항습기 등), 소방시설(소화설비 등)등을 갖춘 시설을 말함
- ◆ “자료보관실”이란 가입신청서 등의 문서나 DAT(Digital Audio Tape), LTO(Linear Tape Open), DLT(Digital Linear Tape), 하드디스크 등이 보관된 물리적 저장장소를 말함

출입통제방법 (예시)

- 물리적 접근 방지를 위한 장치(예시) : 비밀번호 기반 출입통제 장치, 스마트 카드 기반 출입통제장치, 지문 등 생체정보 기반 출입통제 장치 등
- 수기문서 대장 기록 방법(예시) : 출입자, 출입일시, 출입목적, 소속 등

● 개인정보의 안전한 장소에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은 금고,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USB메모리, 이동형 하드디스크 등의 보조저장매체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가 저장·전송되는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시 고려사항

- 보조저장매체 보유 현황 파악 및 반출·입 관리 계획
- 개인정보취급자 및 수탁자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 보조저장매체의 안전한 사용 방법 및 비인가된 사용에 대한 대응
- USB를 PC에 연결시 바이러스 점검 디폴트로 설정 등 기술적 안전조치 방안 등

-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보조저장매체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이 필수는 아니나, 관련 대책 마련을 권장함

6.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함(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 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의 손실 및 훼손 등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문서화하여 마련하고 이에 따라 대처하여야 함.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대응절차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대응절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대응절차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사업주·대표·임원 등에게 보고 후,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해·재난 발생 시 혼란을 완화시키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함.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 계획은 위기대응 매뉴얼 등에 포함할 수 있음
-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 백업 및 복구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함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및 백업 복구 계획 (예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성요소(개인정보 보유량, 종류·중요도, 시스템 연계 장비·설비 등)
- 재해·재난 등에 따른 파급효과(개인정보 유출, 손실, 훼손 등) 및 초기대응 방안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 우선순위, 목표시점 시간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 방안(복구센터 마련, 백업계약 체결, 비상가동 등)
- 업무분장, 책임 및 역할
- 실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정기적 점검, 사후처리 및 지속관리 등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기준에 따른 적용 (예시)]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유형1 (완화)	유형2 (표준)	유형3 (강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별표]의 유형1 및 유형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개인정보의 파기

● 파기 시기

-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 파기 방법

-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파기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업체를 활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 파기의 시행 및 파기 결과의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아래 수행되어야 하며,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는 방법]

파기방법	예시
완전파괴 (소각·파쇄 등)	개인정보가 저장된 회원가입신청서 등의 종이문서, 하드디스크나 자기테이프를 파쇄기로 파기하거나 용해, 또는 소각장, 소각로에서 태워서 파기 등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디가우저(Degausser)를 이용해 하드디스크나 자기테이프에 저장된 개인 정보 삭제 등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개인정보가 저장된 하드디스크에 대해 완전포맷(3회 이상 권고), 데이터 영역에 무작위 값(0, 1 등)으로 덮어쓰기(3회 이상 권고), 해당 드라이브를 안전한 알고리즘 및 키 길이로 암호화 저장 후 삭제하고 암호화에 사용된 키 완전 폐기 및 무작위 값 덮어쓰기 등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일부만 파기하는 경우”는 저장중인 개인정보 중 보유기간이 경과한 일부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등이 있음

- 운영 중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여러 파일 중, 특정 파일을 파기하는 경우
- 개인정보가 저장된 백업용 디스크나 테이프에서 보유기간이 만료된 특정 파일이나 특정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만 파기하는 경우

-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에서 탈퇴한 특정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 회원가입신청서 종이문서에 기록된 정보 중, 특정 필드의 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 일부 파기 방법]

파기대상	일부 파기 방법 및 예시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방법 예시 :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상용 도구 등에서 제공하는 삭제 기능을 사용하여 삭제, 백업시 파기 대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백업 등 (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상용 도구 등에서 제공하는 삭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복구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해야 복구 및 재생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복구 및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하는 방법 예시 : 복구 관련 기록·활동에 대해 모니터링하거나 주기적 점검을 통해 비인가 된 복구에 대해 조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 회원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삭제 시, 해당 신청서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제거되도록 절삭, 천공 또는 펜 등으로 마스킹

판례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할 의무 위반의 판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보보안 기술 수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종과 영업 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하고 있던 전체적인 보안조치의 내용, 정보보안조치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 및 그 효용의 정도, 해킹기술 수준과 정보보안기술 발전 정도에 따른 피해 발생 회피 가능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내용과 개인정보 누출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게 되는 피해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당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07994, 판결]

- 정보통신부장관이 마련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5-18호 및 제2007-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해킹 등 침해사고 당시의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준수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 43994, 2013다44003(병합) 판결].

조 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73조 제1호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제75조 제2항 제6호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사례 중심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XII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1.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2. 개인정보처리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3.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책임
4.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소멸

XIII |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법률	제39조(손해배상책임)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1.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야 하고, 둘째,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셋째,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넷째,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침해행위를 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과 책임능력이 있어야 함

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한 침해행위의 존재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어야 함. 따라서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 경우에는 해당 법률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짐
-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법질서 전체의 입장과 객관적으로 모순·충돌하는 경우로 한정함.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선량한 사회풍속, 조리, 사회통념 등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됨.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히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②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의 발생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함. 여기에서의 손해는 재산적·경제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도 포함하고, 손해액에 대한 증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정보주체에게 있음

※ 예를 들면, 신용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유출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사용, 불법대출 등으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유출에 따라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스팸메일, 마케팅광고 등이 수신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됨

판례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 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제3자가 유출된 개인정보를 열람하였는지 또는 제3자의 열람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제3자의 열람 가능성이 있었거나 앞으로 열람 가능성이 있는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확산되었는지, 개인정보 유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이 발생하였는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는 어떠한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가 취하여졌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 222310, 222327 판결).

판례

정신적 손해의 부인

주유 관련 보너스카드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 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로부터 고객센터 운영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을 주식회사 관리팀 직원 병이, 정 등과 공모하여 무 등을 포함한 보너스카드 회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고객정보를 빼내어 DVD 등 저장매체에 저장된 상태로 전달 또는 복제한 후 개인정보유출사실을 언론을 통하여 보도함으로써

집단소송에 활용할 목적으로 고객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언론관계자들에게 제공한 사안에서, 개인정보가 병에 의하여 유출된 후 저장매체에 저장된 상태로 공범들과 언론관계자 등에게 유출되었지만 언론보도 직후 개인정보가 저장된 저장매체 등을 소지하고 있던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저장매체와 편집 작업 등에 사용된 컴퓨터 등이 모두 압수, 임의제출되거나 폐기된 점, 범행을 공모한 병 등이 개인정보 판매를 위한 사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 개인정보가 전달 또는 복제된 상태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개인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들이 모두 회수되거나 폐기되었고 그 밖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흔적도 보이지 아니하여 제3자가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이용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개인정보를 유출한 범인들이나 언론관계자들이 개인정보 중 일부를 열람한 적은 있으나 개인정보의 종류 및 규모에 비추어 위와 같은 열람만으로 특정 개인정보를 식별하거나 알아내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무 등에게 신원확인, 명의도용이나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등 후속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추지할 만한 상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무 등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

- 손해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받은 손해 가운데 사회 일반의 관념상 통상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통상 손해를 넘어서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특별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음. 특별손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정보주체가 입증하여야 함

③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한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개인정보처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한 침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즉,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무한히 연결되는 사실 가운데 객관적으로 보아 위법행위로부터 일반적으로 초래되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정보주체가 증명하여야 함

◆ “상당성”은 가해행위 당시에 평균적 일반인이 알 수 있었던 사정과 가해자가 특히 알고 있었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함.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④ 고의·과실 및 책임능력의 존재

- ◆ “고의”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알면서도 위법행위를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그 위법행위를 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됨
- ◆ “과실”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신의칙(信義則)상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함을 인식하지 못한 것, 즉, 개인정보처리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 개인정보처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은 물론 책임 능력이 있어야 함
- 개인정보처리자의 선임·지휘·감독을 받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고의·과실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봄. 또한,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수탁자의 고의·과실도 개인정보처리자 자신의 고의·과실로 봄

●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임. 그렇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은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음. 즉,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2. 개인정보처리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배상을 하도록 한 제도를 말함

● 개인정보처리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개인정보처리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어야 하고, 둘째, 개인정보의 분실 등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며, 셋째, 개인정보의 분실 등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의 분실 등의 발생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어야 함. 즉,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개인정보의 분실 등이 발생하였거나,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도 개인정보의 분실 등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하여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야 함

② 정보주체에 대한 손해의 발생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개인정보의 분실 등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함. 여기에서의 손해에는 재산적·경제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를 포함함
- ※ 분실 또는 유출된 은행계좌번호, 체크카드번호 등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예금이 불법으로 인출되어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분실 또는 유출된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로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우편물, 스팸메일이 수신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함

③ 개인정보의 분실 등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분실 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함. 즉, 개인정보의 분실 등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하여야 함

● 법원에 의한 손해배상액 결정

-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분실 등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징벌적 손해배상 산정시 필수적 고려 사항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입증책임

-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①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② 개인정보의 분실 등 발생, ③ 손해의 발생, ④ 개인정보의 분실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⑤ 실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함
- 그렇지만,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원칙인 과실책임의 원칙에 대한 불합리한 훼손을 막고, 책임이 가중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불합리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3.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책임

◆ “법정손해배상”이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분실 등으로 인한 구체적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 법률에 규정된 손해액의 규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법정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정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어야 하고, 둘째, 정보

주체가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셋째,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의 분실 등

- ◆ “고의”란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법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그 위법행위를 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됨
- ◆ “과실”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신의칙(信義則)상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법령에 위반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즉,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 ◆ “분실”이란 개인정보처리자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잃어버리는 것을 말함
- ◆ “도난”이란 권한 없는 자의 절도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잃게 된 것을 말함
- ◆ “유출”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하는 것을 말함
- ◆ “위조”는 권한 없는 자가 개인정보를 새롭게 생성하는 것을 말함
- ◆ “변조”는 권한 없이 기존 개인정보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함
- ◆ “훼손”이란 개인정보 효용(效用)을 해치는 것을 말함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어야 함. 특히, “개인정보의 유출”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유출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②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배상을 청구

- 법정손해배상은 피해자인 정보주체에게 손해액 증명의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제도임. 그 결과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인 정보주체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는 없음. 다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함
- 정보주체가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비롯하여 손해액의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

③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

-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분실 등으로 정보주체가 실제 받은 손해의 범위에서 이루어짐. 따라서 정보주체는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300만 원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

- 법정손해배상청구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음. 그 결과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 법정손해배상청구의 행사 시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책임은 서로 별개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인정되며 그 요건 및 효과 또한 서로 다르므로 소송과정에서 어느 조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것인지 정보주체가 선택·결정하여야 함
- 한편, 원고인 정보주체가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라도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그 청구를 법정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할 수 있음. 이것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 반대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같은 취지에 근거하여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실손해를 입증함으로써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함

4.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소멸

- 「개인정보 보호법」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그러므로 「민법」상의 일반규정이 적용되어 손해배상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또는 법정 손해배상책임 모두에 대하여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가해 개인정보처리자를 안 날로부터 3년(“시효기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제척기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함



사례 중심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XIII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 등

XIII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 등

● 형사처벌

조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70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 기타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 	10년 이하 징역 / 1억원 이하 벌금
제71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그 사정을 알고 제공받은 자 포함) 2. 불법정보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자(그 사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 받은 자 포함) 3. 민감정보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4. 고유식별정보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4의2. 가명정보 결합 제한기준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공한 자(그 사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 포함) 4의3.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4의4. 개인정보 정정·삭제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4의5.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4의6.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5.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그 사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 받은 자 포함) 6.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한 자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조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72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 자(그 사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를 포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제73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당한 자 개인정보 미파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방송사업자등 포함)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조 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제75조 제1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의 수집기준을 위반한 자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 탈의실·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 제2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획득 시,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 획득 시, 직접마케팅 업무위탁으로 인한 개인정보 제공 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필요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정보주체 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개인정보를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미이용기간 경과 개인정보를 파기 등 필요한 조치 하지 아니한 자 포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암호화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조 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기준을 위반한 자 7-2. 가명정보 처리 중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 중지·회수·파기를 하지 아니한 자 7-3. 거짓으로 인증내용을 표시 또는 홍보한 자 8. 개인정보 유출사실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를 부당하게 제한·거절한 자 11.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정정·삭제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2. 처리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의2.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 12의3. 유출등 통지·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한 자 12의4.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등 통지·신고 또는 통지·신고에 갈음한 조치를 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자 12의5. 수집방법보다 쉬운 개인정보 동의 철회·열람·정정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12의6. 개인정보 동의 철회에 따른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12의7.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12의8.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3.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75조 제3항	1.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손해배상 보장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국외 처리위탁·보관 시 고지사항을 공개하지 않거나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75조 제4항	1. 미파기 개인정보의 별도 보존의무를 위반한 자 2. 동의획득 방법을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 3.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적법한 문서에 의하지 않고 업무를 위탁한 자 5. 업무위탁시 공개의무를 위반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조 문	위반행위	벌칙수준
	6. 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이전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6의2. 가명정보 처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7.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자 8.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거부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관계물품·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로 제출한 자 11.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사례 중심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참고

-
1. 개인정보 관련 법령·고시, 가이드라인 등 현황
 2. 개인정보 보호 수준진단 체계도

1. 개인정보 관련 법령·고시, 가이드라인 등 현황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고시, 가이드라인 등 자료는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www.privacy.go.kr>), 자료마당'에서 확인 가능

● 총괄표

구분	법	대통령령	고시	해설서	가이드라인
현황	1	1	11	4	30

● 법·시행령

No.	구분	주요내용	제정	개정
1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	2011.3	2020.2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2011.9	2021.2

● 고시

No.	구분	주요내용	제정	개정
1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2020.8
2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 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등		2020.8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 처리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		2020.8
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		2020.8

No.	구분	주요내용	제정	개정
5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가명 정보의 결합·반출에 관한 기준·절차 등		2020.9
6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가명정보의 결합·반출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2020.12
7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자율 규제를 수행하는 단체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020.8
8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		2020.8
9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2020.8
10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등에 관한 고시	• 개인정보보호 인증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2020.8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실시 하는 조사의 절차와 방법, 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020.12

● 해설서

No.	구분	주요내용	제정	개정
1	개인정보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판례, 해석 등	2011.3	2020.10
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해설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 의무)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 해야 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에 대한 기준 해설	2011.9	2020.12
3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 정보통신망법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 조치)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 해야 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기준 해설	2008.5	2020.12
4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보호 수준을 진단하여 암호화에 상응 하는 조치 필요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	2012.3	2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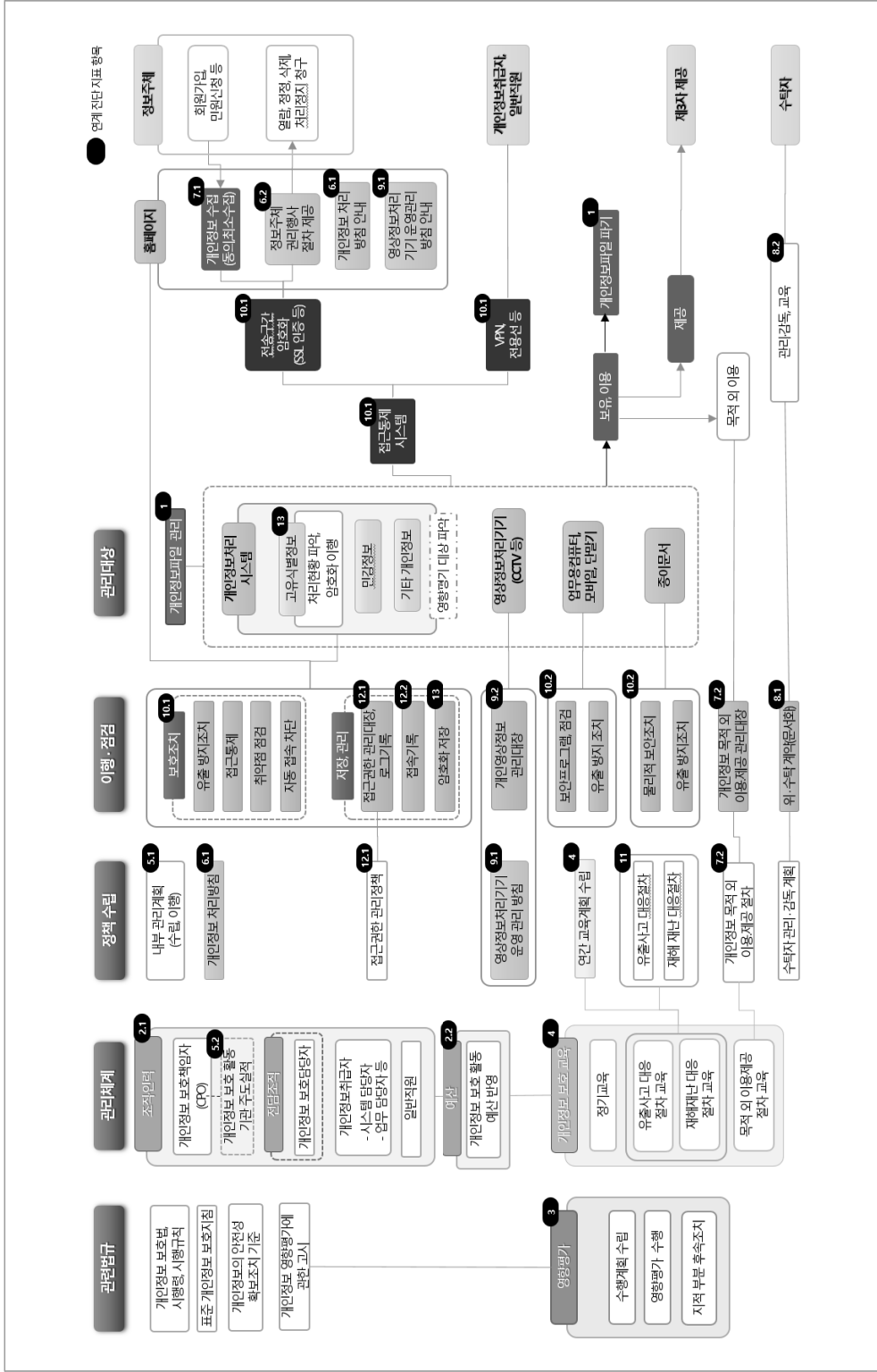
● 가이드라인·안내서 등

No.	구분	주요내용	제정	개정
1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수집 원칙, 필요 최소한 개인정보 수집, 정보주체의 동의권 보장,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등 개인정보 처리자 조치 요령 등 	2016.11	2020.12
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공공·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 및 민간분야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운영 세부기준 	2012.3	2021.4
3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세부 기준 	2011	2020.12
4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절차 및 평가 항목별 주요 점검사항 등 안내 	2011.12	2020.12
5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안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노출 원인별 사례 및 조치 방법 안내 	2008.2	2020.12
6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대응 절차, 방법 제시 ※ '표준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행안부)과 통합 	2016.8	2020.12
7	자율규제단체 참여사를 위한 업종별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규제단체의 업무별 개인정보 처리 및 안정성 확보 조치 등(총 6종) ※ 여행, 학원, 호텔, 대중골프장, 렌터카, 공인중개사 	2019.12	2020.12
8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단계별 개인정보 파기, 이해하기 쉬운 동의서 작성, 개인정보 열람 요구 운영,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운영,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운영 등의 세부기준 	2014.11	2020.12
9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본인의 접근배제 요청, 사업자의 접근배제 판단·조치 	2016.4	2020.12
10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용대상, 보험 최저 가입금액 기준,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보험과의 관계, 과태료 등 ※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자가진단 안내(2019.11)' 통합 	2019.6	2020.12

No.	구분	주요내용	제정	개정
11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	• 국내대리인 역할 및 자격, 지정 절차 제재규정 안내	2019.3	2020.12
12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개념 및 판단 기준, 위·수탁 단계별 조치사항	2018.6	2020.12
13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	• 암호화 종류 및 제도, 암호화 구현 및 관리, 암호화 추진 절차 및 사례	2012.10	2020.12
14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파기, 고유 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개인정보 안전조치 등 세부사항 안내	2019.6	2020.12
15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IoT 환경에서 자동으로 처리 되는 개인정보의 침해 사례 및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수칙	2020.2	2020.12
16	[금융 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금융분야 개인정보 처리 세부 기준	2013.7	-
17	[사회복지시설 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사회복지시설의 개인정보 관련 주요 사항, 사회복지시설의 대상 별 개인정보 보호 요령 및 사례	2013.12	2020.12
18	[의료기관 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의료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한 개인정보 처리기준 등	2012.9	2020.12
19	[약국 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 약국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모든 업무 과정에 고려하여야 할 절차와 규칙 정의 등	2013.12	2020.12
20	[학원·교습소 편]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학습자·강사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원·교습소 등의 개인정보 보호 요령, 준수 사항 등	2013.12	2020.12
21	[인사·노무 편]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고용분야 개인정보 처리 세부 기준	2013.12	-
22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가명정보의 처리, 결합·반출에 대한 방법 및 절차와 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 등	2020.9	-

No.	구분	주요내용	제정	개정
23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부처합동: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분야의 가명·익명처리 절차 및 방법, 가명정보 결합·반출 절차 등 안내 	2020.11	-
24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부처합동: 보건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의료 분야의 가명처리 절차 및 방법, 가명정보 결합 및 활용 절차, 안전·보호 조치 등 	2021.1	-
25	개발자 대상 개인정보 보호조치 적용 안내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자가 준수해야하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 사항 등 	2020.12	-
26	코로나19 관련 얼굴촬영 열화상카메라 운영 시 개인정보보호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열 증상자 등 확인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 운영 시 개인정보 처리 원칙 등 	2020.11	-
27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체정보 보호원칙,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2007.7	2021.9
28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원칙, 이용자의 통제권 행사 방법 	2017.2	-
29	AI 개인정보 보호 자율 점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환경에서의 개발자 및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등 	2021.5	-
30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구조, 의료 등 긴급상황 별 개인정보 처리, 제공 사례 등 	2021.10	-

2. 개인정보 보호 수준진단 체계도





사례 중심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부록

1. 개인정보 보호법 / 276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316
3.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 351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367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385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 39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10-30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3. 24.>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2. 4.>

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4.>

1. 제7조의8 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2. 제7조의9 제1항의 심의·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 ③ 삭제 <2020. 2. 4.>
 - ④ 삭제 <2020. 2. 4.>
 - ⑤ 삭제 <2020. 2. 4.>
 - ⑥ 삭제 <2020. 2. 4.>
 - ⑦ 삭제 <2020. 2. 4.>
 - ⑧ 삭제 <2020. 2. 4.>
 - ⑨ 삭제 <2020. 2. 4.>

제7조의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그 외 위원 중 2명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2명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3명은 그 외의 교섭단체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 또는 단체(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에 3년 이상 임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이들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던 사람
 4. 개인정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 ④ 위원장, 부위원장, 제7조의13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 위원이 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3(위원장) ① 위원장은 보호위원회를 대표하고, 보호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4(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꺾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5(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7조의7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6(겸직금지 등)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
- ② 제1항에 따른 영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7(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계획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3.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고충처리·권리구제 및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술개발의 지원·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의 해석·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7. 제33조 제3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8. 제28조의6, 제34조의2, 제39조의15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9. 제61조에 따른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10.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11. 제65조에 따른 고발 및 징계권고에 관한 사항
12. 제66조에 따른 처리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13.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4. 소관 법령 및 보호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5.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2명 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 사업자로부터의 의견 청취
 2.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사실조회 요구
- ③ 제2항 제2호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 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⑤ 보호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10(회의) ①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보호위원회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11(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호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12(소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13(사무처) 보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사무처를 두며,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조의14(운영 등) 이 법과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8조 삭제 <2020. 2. 4.>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9조(기본계획)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4.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
5.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의 활성화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 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2017. 7. 26., 2020. 2. 4.>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7. 24.>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 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시행 지원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시행 지원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6.>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 제2항 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 및 제39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④ 공공기관은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 8. 6.]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3. 29.>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3. 29.>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 3. 29.>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2017. 7. 26., 2020. 2. 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 3. 29., 2017. 4. 18.>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18.>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4. 18.>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15. 7. 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2017. 7. 26., 2020. 2. 4.>

[본조신설 2013. 8. 6.]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 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5조까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2020. 2. 4.>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①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또는 제58조의 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 절차와 방법, 전문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절차, 관리·감독,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8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8조의5 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중 큰 금액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34조의2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28조의7(적용범위) 가명정보는 제20조, 제21조, 제27조, 제34조 제1항,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의3, 제39조의4, 제39조의6부터 제39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3의2.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 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요건, 업무,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①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5.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6.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5.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 ③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과 제4항에 따른 공개의 방법,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공개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2. 4.>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2.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 또는 방해한 경우
 3. 제8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2. 4.>
-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인증, 제3항에 따른 인증

취소,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심사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2. 4.>

⑥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심사를 수행할 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등에 관하여는 전문성과 경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그 밖에 개인정보 관리체계, 정보주체 권리보장, 안전성 확보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①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② 영향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수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그 위험 정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⑤ 보호위원회는 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육성,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⑥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평가기준, 영향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영향평가를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2. 4.>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2. 4.>

1. 제24조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2.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주민등록번호의 정도
3.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⑤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8. 6.]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제35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제1항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해당 정보주체에게 정정·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또는 삭제 요구, 통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제39조의7에 따른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② 삭제 <2015. 7. 24.>
-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 7. 24.>
-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6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신설 2020. 2. 4.>

제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하는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위험성 및 결과, 이용자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4(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에 대한 특례) ① 제34조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2.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5.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5(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대한 특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7(이용자의 권리 등에 대한 특례) ①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철회,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에 따른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

재생활 수 없도록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3조, 제39조의3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17조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10(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신용 카드정보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삭제·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11(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2. 제39조의4에 따른 통지·신고
 3. 제63조 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12(국외 이전 개인정보의 보호)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위탁·보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이라 한다)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30조 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보관에 따른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이전되는 개인정보 항목
2.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이전일시 및 이전방법
3.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및 보유·이용 기간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는 “제3국에서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13(상호주의) 제39조의12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14(방송사업자등에 대한 특례) 「방송법」 제2조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은 조 제6호·제9호·제12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사업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시청자”는 “이용자”로 본다.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①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7조 제1항·제2항, 제18조 제1항·제2항 및 제19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한 경우
2. 제22조 제6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3. 제23조 제1항 제1호(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수집한 경우
4. 제26조 제4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특례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제29조의 조치(내부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39조의3 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7. 제39조의12 제2항 본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과 비슷한 규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4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⑥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⑦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20. 2. 4.>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7. 24.>
-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1.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경험한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 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⑦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 접수,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 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4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3조(조정 신청 등) 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44조(처리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5조(자료의 요청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7조(분쟁의 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8조(조정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 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9조(집단분쟁조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⑥ 제48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 ⑦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⑧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조정절차 등) ①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및 조정업무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분쟁조정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개정 2020. 2. 4.>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 나.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제52조(전속관할) 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53조(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54조(소송허가신청)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제기단체가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2.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55조(소송허가요건 등)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제54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 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56조(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51조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2.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제57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①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

② 제55조에 따른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③ 단체소송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보칙 <개정 2020. 2. 4.>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 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 4.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 ②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 제22조, 제27조 제1항·제2항, 제34조 및 제3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창회, 동호회 등 친목 도모를 위한 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0조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8조의2(적용제외) 이 법은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0. 2. 4.]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제60조(비밀유지 등)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 1. 제7조의8 및 제7조의9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업무
 - 1의2.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업무
- 2. 제33조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 3. 제40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

제61조(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된 법령이나 조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보호위원회에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개인정보침해 신고 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③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상담
2. 사실의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에 딸린 업무

④ 보호위원회는 제3항 제2호의 사실 조사·확인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2. 4.>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 및 해당 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④ 보호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검사권한을 수행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에게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보호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이 해당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2. 4.>

⑤ 보호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검사권한을

수행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에게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하거나, 처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⑥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4.>

⑦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2017. 7. 26., 2020. 2. 4.>

⑧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2. 4.>

⑨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제64조(시정조치 등)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 법을 위반한 자(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1.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속 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② 보호위원회는 이 법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이 있는 자(대표자 및 책임있는 임원을 포함한다)를 징계할 것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고발을 하거나 소속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징계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람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는 제61조에 따른 개선권고, 제64조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 제65조에 따른 고발 또는 징계권고 및 제7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연차보고) ① 보호위원회는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매년 개인정보 보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3. 29.〉

1.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및 그 구제현황
2.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결과
3. 개인정보 보호시책의 추진현황 및 실적
4. 개인정보 관련 해외의 입법 및 정책 동향
5. 주민등록번호 처리와 관련된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의 제정·개정 현황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시책에 관하여 공개 또는 보고하여야 할 사항

제6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제6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① 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공무원이 아닌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 2. 4.〉

②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20. 2. 4.〉

제10장 벌칙 〈개정 2020. 2. 4.〉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4.〉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 제1항·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 제5항, 제27조 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 4의2. 제28조의3을 위반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제공받은 자
- 4의3. 제28조의5 제1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 4의4. 제36조 제2항(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와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제38조 제2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4의5. 제39조의3 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4의6. 제39조의3 제4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5.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 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 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2. 제59조 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7. 24., 2016. 3. 29., 2020. 2. 4.>

1.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6항, 제28조의4 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 1의2. 제21조 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2. 제3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3.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제7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의2(몰수·추징 등)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 1.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2. 제22조 제6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 3.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8. 6., 2014. 3. 24., 2015. 7. 24., 2016. 3. 29., 2017. 4. 18., 2020. 2. 4.〉
- 1.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3항 또는 제2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2. 제16조 제3항 또는 제22조 제5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3.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4. 제21조 제1항·제39조의6(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4의2.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 4의3. 제24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5. 제24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6항, 제28조의4 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한 자
 - 7의2. 제28조의5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파기하지 아니한 자
 - 7의3. 제32조의2 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8.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9.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11. 제3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37조 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2의2. 제39조의3 제3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12의3. 제39조의4 제1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자
 - 12의4. 제39조의4 제3항을 위반하여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12의5. 제39조의7 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동의 철회·열람·정정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12의6. 제39조의7 제3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와 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12의7. 제39조의8 제1항 본문(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 12의8. 제39조의12 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64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2. 4.>
 1. 제39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의11 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39조의12 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39조의12 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보관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20. 2. 4.>
 1. 제21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3. 제25조 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5.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6의2. 제28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8.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 제3항·제4항, 제36조 제2항·제4항 또는 제3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0. 제63조 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1. 제63조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 8. 6.]

부칙 <제16930호, 2020. 2.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보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능조정에 따른 소관 사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중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보호위원회가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관 사무 중 제7조의8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무는 보호위원회가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위와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 중 그 소관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보호위원회의 행위 또는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행한 고시·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신고 등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행위 중 그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보호위원회로 이관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행위 또는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보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행위나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행위나 보호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7조의3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심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법 제32조의2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거나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이 법 제32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거나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전문기관은 이 법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권한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제2호 중 “개인정보보호윤리”를 “인터넷 윤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으로 한다.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로 한다.

③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1항 중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를 “전자정부”로 한다.

④ 주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 제6항 제1호 중 “관계 행정기관(「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을 “관계 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이 법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승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의 사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행정안전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1. 2. 5] [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2, 타법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 7. 14.>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 1의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제4조 삭제 <2020. 8. 4.>

제4조의2(영리업무의 금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 제7조의6 제1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1. 법 제7조의9 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조정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본조신설 2020. 8. 4.]

제5조(전문위원회)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8. 4.>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는 경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6. 7. 22., 2020. 8. 4.>

1. 보호위원회 위원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관계 공무원
3.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사업자단체에 속하거나 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③ 삭제 <2020. 8. 4.>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를 위하여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정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및 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등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령의 제·개정
3.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협력 및 의견조정
4.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5.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이가 필요한 사항

③ 정책협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정책협의회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은 보호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정책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또는 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 및 분야별 협의회 의장은 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⑥ 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야별 협의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출석,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제5조의3(시·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①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시·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
2. 관계 기관·단체 등의 의견 수렴 및 전달
3. 개인정보 보호 우수사례 공유
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도협의회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제6조(의사의 공개) 보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공개한다. 다만,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 등의 파견) 보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20. 8. 4.>

제9조(출석수당 등) 보호위원회, 전문위원회 또는 정책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법 제7조의9 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사람 또는 정책협의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 8. 4.>

제9조의2(정책·제도·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 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정책·제도 및 법령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 제5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권고사항의 이행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제9조의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절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이하 “침해요인 평가”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법령안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
2.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제도의 도입·변경에 따른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자체 분석
3.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제도의 도입·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대책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요인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2.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의 적정성
3.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4. 그 밖에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법령안에 반영하는 등 권고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 침해요인 평가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⑥ 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22.]

제10조 삭제 <2020. 8. 4.>

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3년마다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2020. 8. 4.>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중장기 계획과 시책 등을 반영한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의 목표, 추진방향 및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③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해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2020. 8. 4.>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기본계획 중 다음 해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12월 31일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개정 2020. 8. 4.>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의 범위와 방법)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관리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여부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4. 정보주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처리정지의 요구 및 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의 준수에 관한 사항 등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 ③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법 제11조 제1항”은 “법 제11조 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제14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위원회는 법 제13조 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 제3항 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제15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제15조의2(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대상·방법·절차) ① 법 제2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는 자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 또는 제37조 제4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

[본조신설 2016. 9. 29.]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6.>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한 파기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8. 6.,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 10. 17.>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나. 제19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2조 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0., 2017. 10. 17.>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 제6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7. 10. 17.>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7. 10. 17.>

제18조(민감정보의 범위) 법 제2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 9. 29., 2020. 8. 4.>

1.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4.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 제2항 제5호부터 제9호

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6. 9. 29., 2017. 6. 27., 2020. 8. 4.〉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제20조 삭제 〈2014. 8. 6.〉

제21조(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하여는 제30조 또는 제4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9조”는 “법 제24조 제3항”으로,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로 본다. 〈개정 2020. 8. 4.〉

② 법 제2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
2.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 ③ 보호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2년마다 1회 이상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온라인 또는 서면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⑤ 법 제2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
 2. 법 제24조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전문개정 2016. 9. 29.]

제21조의2(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적용 대상 등) ①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라 암호화 조치를 하여야 하는 암호화 적용 대상은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암호화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7년 1월 1일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개인정보처리자: 2018년 1월 1일
- ③ 보호위원회는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암호화 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5. 12. 30.]

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한의 예외) ① 법 제25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5. 29., 2020. 8. 4.〉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①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 ② 법 제25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급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1. 삭제 <2016. 9. 29.>
2. 삭제 <2016. 9. 29.>
3. 삭제 <2016. 9. 29.>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25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1.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25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으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법 제25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29., 2020. 8. 4.>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목·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 ④ 법 제25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9. 29.>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 제2항”은 “법 제25조 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으로 본다. <개정 2016. 9. 29.>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 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보호위원회는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①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5.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 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위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위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위탁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실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 ④ 법 제26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⑤ 위탁자가 과실 없이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위탁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 ⑥ 위탁자는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법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는지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① 법 제2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 ②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영업양도자등”이라 한다)가 과실 없이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 8. 4.>
 1.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
 2. 영업양도자등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다목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제4장의2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2020. 8. 4.>

제29조의2(결합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① 법 제28조의3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2.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관련 정책 및 절차 등을 마련할 것
3.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재정 능력을 갖출 것
4.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66조에 따른 공표 내용에 포함된 적이 없을 것

②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법 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③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결합전문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 ⑤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결합전문기관 스스로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결합 및 반출 등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⑥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 ⑦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거나 보호위원회 또는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합전문기관을 지정,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제29조의3(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 ① 결합전문기관에 가명정보의 결합을 신청하려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결합신청자”라 한다)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결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합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결합신청자 관련 서류
2. 결합 대상 가명정보에 관한 서류
3. 결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에 필요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결합전문기관은 법 제28조의3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필요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결합신청자는 법 제28조의3 제2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이 결합한 정보를 결합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결합전문기관에 설치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가 된 공간에서 제2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를 가명정보 또는 법 제58조의2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결합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결합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반출을 승인해야 한다. 이 경우 결합전문기관은 결합된 정보의 반출을 승인하기 위하여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1. 결합 목적과 반출 정보가 관련성이 있을 것
2. 특정 개인을 알아볼 가능성이 없을 것
3. 반출 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이 있을 것

⑤ 결합전문기관은 결합 및 반출 등에 필요한 비용을 결합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명정보의 결합 절차와 방법, 반출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제29조의4(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 등) ①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합전문기관의 업무 수행능력 및 기술·시설 유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② 결합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년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실적보고서
 2. 결합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1.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승인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
2. 결합신청자의 가명정보 처리 실태
3. 그 밖에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8. 4.]

제29조의5(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4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 및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이하 이 조에서 “추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0조 또는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2.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의 분리 보관. 다만, 추가정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3. 가명정보와 추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분리.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가명정보를 취급할 자를 추가로 둘 여력이 없는 경우 등 접근 권한의 분리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권한만 부여하고 접근 권한의 보유 현황을 기록으로 보관하는 등 접근 권한을 관리·통제해야 한다.
- ② 법 제28조의4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명정보 처리의 목적
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3.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5.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8. 4.]

제29조의6(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8조의6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개인 정보처리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 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28조의6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법 제28조의6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절차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20. 8. 4.]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① 법 제30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9. 29., 2020. 8. 4.>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삭제 <2020. 8. 4.>
 3. 제30조 또는 제4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실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실는 방법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1조 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3.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6. 7. 22.>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마. 시·도 및 시·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바. 시·군 및 자치구: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 사. 제2조 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 나. 임원(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 없이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 8. 4.>
- 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 제2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3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 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3.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4. 제4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5.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제34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등)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법 제32조 제1항 및 이 영 제33조에 따른 등록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을 등록하거나 변경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34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제48조의 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의 수립 등을 포함한 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② 법 제32조의2 제1항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3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34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 대상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목록
 2.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수립·운영하는 방법과 절차
 3.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및 보호대책 구현과 관련되는 문서 목록
- ③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과 인증의 범위 및 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는 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원이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⑤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인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신청, 인증심사, 인증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인증서의 발급 등 개인정보 보호 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제34조의3(개인정보 보호 인증의 수수료) ① 신청인은 인증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에 투입되는 인증 심사원의 수 및 인증심사에 필요한 일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제34조의4(인증취소) ①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34조의2 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 또는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관보 또는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제34조의5(인증의 사후관리) ① 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법 제32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34조의2 제5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제34조의6(개인정보 보호 인증 전문기관) ① 법 제32조의2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9. 29., 2017. 7. 26., 2020. 8. 4.〉

1. 한국인터넷진흥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보호위원회가 지정·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 가. 제34조의8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 5명 이상을 보유할 것
 - 나. 보호위원회가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
-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지정과 그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제34조의7(인증의 표시 및 홍보) 법 제32조의2 제6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받은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제34조의8(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①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 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인증심사에 필요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한다.

- ② 인증기관은 법 제32조의2 제7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와 관련하여 금전, 금품,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한 경우
 3.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교육과정의 이수, 인증심사원 자격의 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 〈개정 2016. 9. 29.〉

1.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6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법 제33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2. 개인정보 보유기간

제37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2., 2017. 7. 26., 2020. 8. 4.>

1. 최근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법인
 - 가. 영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 나.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정보보호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축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분석·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 보호 대책의 제시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 다. 「전자정부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
 - 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에 해당하는 업무 중 정보보호컨설팅 업무
 - 마.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2. 별표 1의2에 따른 전문인력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는 법인
3. 다음 각 목의 사무실 및 설비를 갖춘 법인

- 가.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
- 나.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

②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1. 정관
2. 대표자의 성명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보호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고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1. 평가기관의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와 대표자의 성명
2.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 그 조건의 내용

⑤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된 평가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원하는 경우나 폐업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은 지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평가기관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보호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① 법 제33조 제6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22.>

1. 해당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는 개인정보의 종류·성질, 정보주체의 수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2. 법 제24조 제3항, 제25조 제6항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3.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별 조치 여부
4.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의무 위반 요소에 관한 사항

②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제3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기 전에 그 영향평가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영향평가서에

제3호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7. 22., 2017. 7. 26., 2020. 8. 4.>

1. 개인정보파일 운용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개인정보파일 운용의 목적
 2.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개요
 3.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4. 영향평가 수행 인력 및 비용
- ③ 보호위원회는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39조(개인정보 유출 신고의 범위 및 기관) ① 법 제34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란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7. 10. 17.>

② 법 제34조 제3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각각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개정 2015. 12. 30., 2016. 7. 22.>

제40조(개인정보 유출 통지의 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유출 사실을 알고 긴급한 조치를 한 후에도 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유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 제3항 및 이 영 제39조 제1항에 따라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서면등의 방법과 함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제40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0. 8. 4.>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위반사실, 부과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④ 법 제34조의2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8. 6.]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17.>

1.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정보주체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것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의 지속적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창구 또는 방법과 동일하게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3.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홈페이지에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공개할 것

③ 정보주체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해당 공공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④ 법 제35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7. 10. 17.>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제42조 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등(제42조 제1항에 따라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즉시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통지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연기 및 거절)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 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법 제35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4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제41조 제2항을 준용하되, “열람”은 “정정 또는 삭제”로 본다. <개정 2017. 10. 17.>

②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정정·삭제하거나 그 개인정보 정정·삭제에 관한 요구 사항을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7.>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제4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려면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에는 제41조 제2항을 준용하되, “열람”은 “처리 정지”로 본다. <개정 2017. 10. 17.>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2020. 8. 4.>

제45조(대리인의 범위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주체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46조(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의 확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41조 제1항에 따른 열람, 제43조 제1항에 따른 정정·삭제, 제44조 제1항에 따른 처리정지 또는 법 제39조의7 제1항에 따른 동의 철회 등의 요구(이하 이 조, 제47조 및 제48조에서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받았을 때에는 열람등요구를 한 사람이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4.>

②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할 수 없거나 정보주체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① 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낸다.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2.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제48조(열람 요구 지원시스템의 구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를 갈음하여 해당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그 밖의 절차를 정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열람등요구 및 그에 대한 통지에 관한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6장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 <신설 2020. 8. 4.>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그로부터 이용자(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지휘·감독을 받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
 - 다.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시행
 -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의 설치·운영
 -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한 외부 인터넷망 차단[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 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만 해당한다]
 - 라.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 및 변경 주기 등의 기준 설정 및 운영
 - 마.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의 저장 및 이의 확인·감독
 -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4.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 나.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및 제18조 제3호에 따른 정보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 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신·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
 - 라. 그 밖에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치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백신소프트웨어 설치 및 주기적 갱신·점검 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총론 제48조의2는 제48조의14로 이동 <2020. 8. 4.>]

제48조의3(법정대리인 동의의 확인방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39조의3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8. 4.]

제48조의4(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9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른 통지·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신고해야 한다.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39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제4항에 따른 홈페이지 게시를 갈음할 수 있다.
-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 제39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호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제48조의5(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특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39조의6 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의6 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법 제39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

관리해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③ 법 제39조의6 제2항에서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분리·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법 제39조의6 제2항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제48조의6(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법 제39조의8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② 법 제39조의8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③ 법 제39조의8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하 이 조에서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라 한다)은 법 제39조의9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1.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②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경우 최저가입금액(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최소적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다만,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험 또는 공제 가입과 준비금 적립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금액과 준비금 적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별표 1의4에서 정한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가입 대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법 제39조의9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8. 4.]

제48조의8(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요청 기관) 법 제39조의10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 기관”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제48조의9(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39조의1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6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제48조의10(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법 제39조의12 제2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야 하는 보호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법 제39조의12 제2항 본문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에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에 반영해야 한다.

③ 법 제39조의12 제2항 단서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등의 방법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제48조의11(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39조의15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9조의15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법 제39조의15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별표 1의5와 같다.
[본조신설 2020. 8. 4.]

제48조의1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보호위원회가 법 제39조의15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부과금액·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금융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제48조의13(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39조의15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8. 4.]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48조의14(당연직위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제48조의2에서 이동 <2020. 8. 4.>]

제49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0조 제6항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 7. 22.>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시간·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조정부의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조정부의 장은 조정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0조(사무기구) ① 법 제40조 제8항에 따른 분쟁조정 접수 및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 처리는 보호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수행한다. <개정 2020. 8. 4.>

② 사무기구는 분쟁조정 접수·진행 및 당사자 통지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8. 4.>
[전문개정 2016. 7. 22.]

제51조(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운영) ①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날짜·시간·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집단분쟁조정 신청 대상) 법 제4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다음 각 목의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가.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다.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정보주체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① 법 제49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 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0.>

제54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법 제49조 제2항 후단의 공고기간에 문서로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참가 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 인정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55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①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후 제52조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정보주체는 당사자에서 제외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5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고 나면 그 후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중 일부가 같은 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더라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한다.

제56조(수당과 여비) 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분쟁조정 세칙)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집단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58조(개선권고 및 징계권고) ① 법 제61조 제2항·제3항에 따른 개선권고 및 법 제65조 제2항·제3항에 따른 징계권고는 권고 사항, 권고 사유 및 조치 결과 회신기간 등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는 권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권고 내용대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59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 보호위원회는 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 신고의 접수·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30., 2017. 7. 26., 2020. 8. 4.>

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 제4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검사권한을 수행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검사 대상 및 사유를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보호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해당 공무원이 검사에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8. 4.>

④ 제3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사 일정, 검사 범위 및 방법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8. 4.>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계획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검사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검사 기간은 보호위원회와 협의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8. 4.>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3조 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청받거나 처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0. 8. 4.>

⑦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 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동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8. 4.>

제61조(결과의 공표) ①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1. 위반행위의 내용
2. 위반행위를 한 자
3.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고발, 징계권고 및 과태료 부과の内容 및 결과

②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③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제62조(권한의 위탁) ① 삭제 <2015. 12. 30.>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24조의2 제4항에 따른 대체가입수단 제공의 지원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30., 2017. 7. 26., 2020. 8. 4.>

1. 「전자정부법」 제72조 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 한국인터넷진흥원
3. 대체가입수단의 개발·제공·관리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재정적 능력과 설비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기관·단체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30., 2017. 7. 26., 2020. 8. 4.>

1.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2. 법 제33조 제5항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육성 및 영향평가 기준의 개발
3. 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열람 요구의 접수 및 처리
4. 법 제63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법 제62조에 따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의 접수·처리 및 상담과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5. 제37조 제2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접수

④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를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5. 12. 30., 2017. 7. 26., 2020. 8. 4.>

제6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호위원회(제62조 제3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1. 법 제7조의9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의2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 방법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제반조치 마련 및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의6, 제34조의2 및 제39조의15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4. 법 제62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무
 5. 법 제63조 제1항,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검사 및 점검에 관한 사무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 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8. 4.>

[본조신설 2014. 8. 6.]

[제목개정 2020. 8. 4.]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 8. 4.>

1. 제48조의6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자의 범위, 통지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 및 통지 주기와 방법: 2020년 8월 5일
2. 제48조의7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2020년 8월 5일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17. 7. 26., 2020. 8. 4.>

1. 삭제 <2018. 12. 24.>
2.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2015년 1월 1일
- 2의2. 제37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요건 등: 2016년 1월 1일
3. 삭제 <2018. 12. 24.>
4. 삭제 <2018. 12. 24.>
5. 삭제 <2018. 12. 24.>

③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0. 8. 4.>

1. 제29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의 결합: 2020년 8월 5일
2. 제29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2020년 8월 5일

[전문개정 2014. 12. 9.]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5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8. 4.>

부칙 〈제30892호, 2020. 8.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행한 지정, 조치, 통지, 신고,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민감정보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개인 정보로서 제18조 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과징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 사목을 삭제한다.

②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로 한다.

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36조 제2항 및 제37조 제4항”을 “제36조 제2항, 제37조 제4항 및 제39조의7 제3항”으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 제2항 제18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⑤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제39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48조의4”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1429호, 2021. 2. 2.>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5 제1항 제3호 단서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32조 제3항 본문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8.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7호, 2020. 8. 11., 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53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되, 게재를 시작하는 날은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구성)

제3조(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① 법 제18조 제2항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32조 제1항과 영 제34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및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따른다.

③ 영 제37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2. 영 제3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 현황
 - 나.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 다. 영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3.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영 제3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④ 법 제33조 제1항과 영 제37조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 ⑤ 법 제33조 제6항과 영 제37조 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 사항 신고서에 따른다.
- ⑥ 법 제35조 제2항과 영 제41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의 요구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른다.
- ⑦ 법 제35조 제5항과 영 제41조 제4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및 일부열람의 통지, 법 제35조 제3항 후단과 영 제42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연기의 통지, 법 제35조 제4항과 영 제42조 제2항에 따른 열람거절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에 따른다.
- ⑧ 법 제36조 제6항과 영 제43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 법 제37조 제5항과 영 제44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 ⑨ 영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위임장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4조(서면 등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법 제22조 제2항에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2.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도록 할 것
3.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

부칙 〈제2020-7호, 2020. 8. 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파일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시에만 작성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공기관 명칭	주소	등록부서	전화번호
등록항목	등록정보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등록 변경등록) 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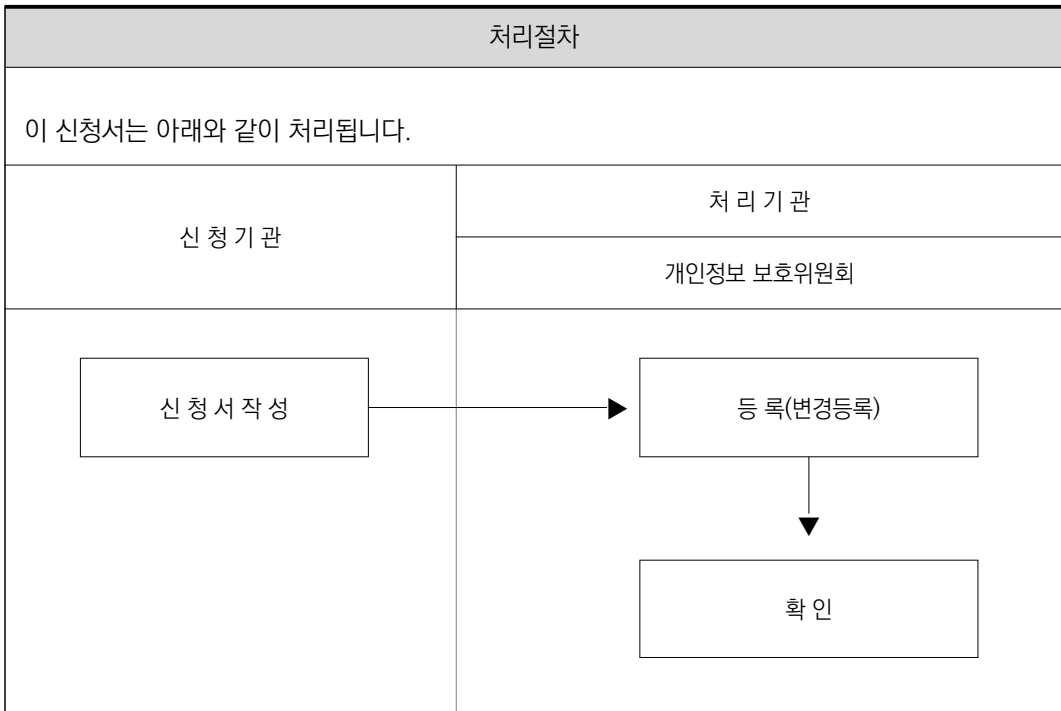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귀하

(뒤 쪽)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법인 설립일
	소재지	전화번호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수		명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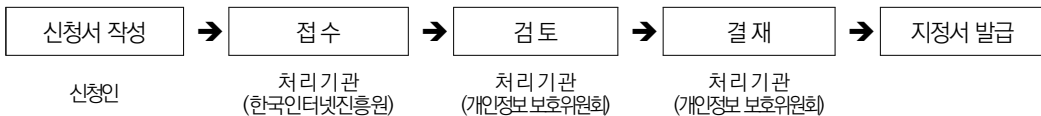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다음의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현황 나.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출입국관리법」 제88조 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

처리절차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현황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영향평가 수행인력 총수			명					
일련 번호	성명	생년 월일	입사일	보유자격증 (취득연월일)	자격증 취득 후 업무 수행 경력 (년 개월)	전문분야	학위 및 학과	비고

유의사항

전문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업무 분야를 말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소재지	

①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

[] 있음 [] 없음

②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 설비

명칭	설비 등의 세부사항	수량	비고

③ 기록 및 자료의 안전관리 설비

명칭	설비 등의 세부사항	수량	비고

작성 방법

①의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춘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있음'란에 [√] 표시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없음'란에 [] 표시를 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

1. 대 표 자:
2.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3. 법 인 명:
4. 주 소:
5. 전화번호:
6. 지정요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따라 위의 법인을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하였으므로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인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일		
구분	종 전	변 경
수행 인력		
사무실 및 설비		
평가 기관 양도·양수 또는 합병 등	종전 법인	법인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변경 법인	법인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법인 명칭·주소·전화번호 및 대표자 변경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6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1. 양도·양수·합병 등의 경우 양도·양수 또는 합병 계약서 등 사본 1부 2. 그 밖의 변경사항 증명서류 각 1부
------	---

유의사항

위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별지로 작성하거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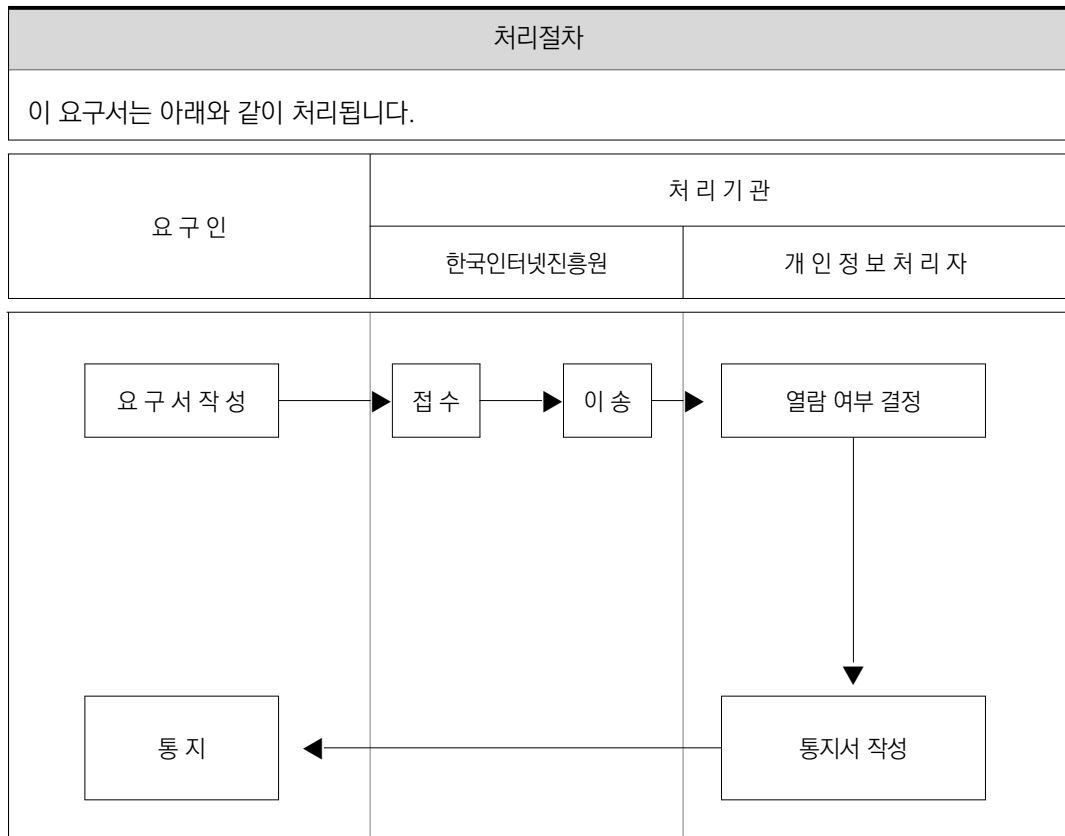
요구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귀하

작성 방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요구내용'란은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input type="checkbox"/> 열람 <input type="checkbox"/> 일부열람 <input type="checkbox"/> 열람연기 <input type="checkbox"/> 열람거절)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물·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열람 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팩스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 또는 제42조 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냅니다.
 - 가.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 나.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낼 수 있습니다.
3.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요구 내용	
<input type="checkbox"/> 정정·삭제 <input type="checkbox"/> 처리정지 조치 내용	
<input type="checkbox"/> 정정·삭제 <input type="checkbox"/>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발신명의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서식]

위임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 2020. 8. 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 2020. 8. 11., 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영리목적의 사업자, 협회·동창회 등 비영리기관·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 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친목단체”란 학교, 지역, 기업,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단위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자원봉사, 취미, 정치, 종교 등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사람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각종 동창회, 동호회, 향우회, 반사회 및 동아리 등의 모임을 말한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3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7.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영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9.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1. “공개된 장소”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파일과 인쇄물, 서면 등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익명에 의하여 업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를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지 않고는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4.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5.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 6.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등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이하 “명함등”이라 함)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명함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등”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 ⑥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 매체나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책자 등을 물리적으로 이전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 또는 공동 이용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 ② 법 제17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정보주체의 대리인(명백히 대리 범위 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과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이하 같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②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자는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알리는 경우에는 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연락처를 함께 알려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 제20조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 전문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② 영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절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55조 및 제56조를 적용한다.

제11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물리적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저장·관리한다는 점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는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에 한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법 제18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3. 법 제22조 제3항에 해당하여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
4. 주민등록번호 외의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없는 경우
5. 민감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법령에 민감정보 처리 근거가 없는 경우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또는 동의 거부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영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친목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친목단체의 가입을 위한 성명, 연락처 및 친목단체의 회칙으로 정한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와 관련된 인적 사항
 2. 친목단체의 회비 등 친목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납부현황에 관한 사항
 3. 친목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성원의 참석여부 및 활동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친목단체의 구성원 상호 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생일, 취향 및 가족의 애경사 등에 관한 사항
- ⑦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법정대리인의 동의) ① 영 제17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제14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사실과 그 사유 및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제2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제16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 각 호 및 영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 담당자 연락처, 수탁자의 관리 현황 점검 결과 등 개인정보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7. 영 제3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 제3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영 제31조 제3항 제3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이 발행될 때마다 계속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2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제2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교육) 영 제32조 제4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개설 운영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내용
2. 법 제31조 제2항 및 영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호위원회는 매년 초 당해 연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등의 단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리적·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신고 등

제25조(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

제26조(유출 통지시기 및 항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우선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 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유출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27조(유출 통지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28조(개인정보 유출신고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보호위원회 또는 영 제39조 제2항의 전문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영 제39조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26조 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26조 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2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29조(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
 2. 그 밖에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에는 유출 통지·조회 절차, 영업점·인터넷회선 확충 등 고객 민원 대응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고객불안 해소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복구 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 침해 사실의 신고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상담
 2. 개인정보 침해 신고에 대한 사실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실 안내 및 시정 유도
 4. 사실 조사 결과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고의 종결 처리
 5. 법 제43조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안내 등을 통한 고충 해소 지원

제6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1조(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5조 제3항 후문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영 제4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35조 제4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2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가 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3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에 따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와 영 제47조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준용한다.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35조(적용범위) 이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의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3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제37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③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관리 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8조(사전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영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9조(안내판의 설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설치목적 및 장소
- 2. 촬영범위 및 시간
-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나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③ 공공기관의 장이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 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40조(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등)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호 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1조(보관 및 파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42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관한 확인 시기)
 -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4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영 제27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영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등 요구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

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 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 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 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 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상)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제44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상'을 활용할 수 있다.

제46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44조 제2항에 따른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47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영 제30조 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다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제2조 제4호에 따른 '소상공인'은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48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①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통보하고 영 제34조 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외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체점검 등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기관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제1절 총칙

제49조(적용대상) 이 장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2.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6.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제50조(적용제외)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

2.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파일
 - 가.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나.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라. 공공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 마.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3.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파일
 - 가.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 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 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4.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5.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 금융업무 취급을 위해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와 절차

제51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특별자치시도, 기초자치단체는 보호위원회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 ③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은 교육부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상위 관리기관을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①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취급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신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 7.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 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 12.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고시 제3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부에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교육부의 확인을 받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상위 관리기관에 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상위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등록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4조(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등록과 관리) ①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학교 포함) 등 전국적으로 단일한 공통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기관은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② 전국 단일의 공통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은 해당 중앙부처에서 등록·관리해야 한다.

제55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 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 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제55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보호위원회에 통보한다.

제57조(등록·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53조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제53조 제2항 및 제53조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등록하지 않은 개인정보파일이 있는 경우
3. 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파일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그 결과를 등록사항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호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할 수 있다.

⑤ 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제58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공공기관은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59조(개인정보파일 이용·제공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60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①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영」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③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하여 보유할 수 있다.

제61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파기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삭제 현황을 종합하여 매년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62조(친목단체에 대한 벌칙조항의 적용배제) ① 친목단체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는 법 제75조 제1항 제1호, 법 제75조 제2항 제1호, 법 제75조 제4항 제8호 및 법 제75조 제4항 제8호의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벌칙규정은 친목단체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3조(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시행 전에 근거법령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당해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적법한 처리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기존의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새롭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영, 고시 및 이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 법 시행 전에 법률의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시행 전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기존의 수집목적 범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새롭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목적으로 법 시행 전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부칙 <제2020-1호, 2020. 8. 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정 2020.8.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2호

개정 2021.9.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신기술개인정보과), 02-2100-3063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2.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기업 집단을 말한다.
5.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영 제3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10.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한다.
11. “위험도 분석”이란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소를 식별·평가하고 해당 위험요소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12. “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1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 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14. “공개된 무선망”이란 불특정 다수가 무선접속장치(AP)를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망을 말한다.
15.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16. “생체정보”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 16의2. “생체인식정보”란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17. “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CD(Compact Disk), DVD(Digital Versatile Disk)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용이하게 연결·분리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18. “내부망”이란 물리적 망분리, 접근 통제시스템 등에 의해 인터넷 구간에서의 접근이 통제 또는 차단되는 구간을 말한다.
19. “접속기록”이란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수행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접속”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데이터 송신 또는 수신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20. “관리용 단말기”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제3조(안전조치 기준 적용)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해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제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7.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 9.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10.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1.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12. 위험도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 13. 재해 및 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14.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1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별표]의 유형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고, [별표]의 유형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으로 점검·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 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별표]의 유형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6항을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접근통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가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의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 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모바일 기기의 분실·도난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당 모바일 기기에 비밀번호 설정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⑧ [별표]의 유형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생체인식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2. 암호화 미적용시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 ⑧ [별표]의 유형1 및 유형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6항을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오·남용,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 2.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 3.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제10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 2.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 3.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별표]의 유형1 및 유형2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제14조(재검토 기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8월 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2호, 2020. 8. 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2호, 2021. 9. 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 보유량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유형	적용 대상	안전조치 기준
유형1 (완화)	· 1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 제5조 : 제2항부터 제5항까지 · 제6조 : 제1항, 제3항, 제6항 및 제7항 · 제7조 :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3조
유형2 (표준)	·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 1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 개인	· 제4조 :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5호, 제3항부터 제4항까지 · 제5조 · 제6조 : 제1항부터 제7항까지 · 제7조 :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항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3조
유형3 (강화)	·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대기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 단체	·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정 2020.8.11.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5호

개정 2021.9.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3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신기술개인정보과), 02-2100-3063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법 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거나 업무처리를 최종 결정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2. “개인정보취급자”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내부관리계획”이라 함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 개인정보취급자의 교육,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규정한 계획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말한다.
 5. “망분리”라 함은 외부 인터넷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과 내부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망 차단조치를 말한다.
 6.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7. “접속기록”이라 함은 이용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수행한 업무 내역에 대하여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수행업무 등 접속한 사실을 전자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8. “생체정보”라 함은 지문, 얼굴, 홍채, 정맥,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하거나 개인에 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 8의2. “생체인식정보”라 함은 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처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9. “P2P(Peer to Peer)”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버의 도움 없이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10. “공유설정”이라 함은 컴퓨터 소유자의 파일을 타인이 조회·변경·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보안서버”라 함은 정보통신망에서 송·수신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웹서버를 말한다.
12. “인증정보”라 함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이 요구한 식별자의 신원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를 말한다.
13. “모바일 기기”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14. “보조저장매체”란 이동형 하드디스크(HDD), USB메모리, CD(Compact Disk) 등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매체로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용 컴퓨터 등과 쉽게 분리·접속할 수 있는 저장매체를 말한다.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보호 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의 내부 점검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사업규모, 개인정보 보유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 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세부 계획,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보호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포함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접근통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부여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 ⑥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또는 파기할 수 있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을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망분리 하여야 한다.
- 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⑧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운영하여야 한다.
 1. 영문,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10자리 이상 또는 3종류 이상을 조합하여 최소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
 2. 연속적인 숫자나 생일,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개인정보 및 아이디와 비슷한 비밀번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
 3. 비밀번호에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변경
- 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최대 접속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접속기록의 위·변조방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감독하여야 하며, 시스템 이상 유무의 확인 등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접속기록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 ② 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존·관리해야 할 최소 기간을 2년으로 한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의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보관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비밀번호는 복호화 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한다.
 1.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번호
 3. 운전면허번호
 4. 외국인등록번호

5. 신용카드번호

6. 계좌번호

7. 생체인식정보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보안서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2.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보조저장매체 등에 저장할 때에는 이를 암호화해야 한다.

제7조(악성프로그램 방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

2. 악성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제8조(물리적 접근 방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출력·복사시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 (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출력·복사 기록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표시 제한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조회, 출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마스킹하여 표시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 기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8월 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5호, 2020. 8. 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3호, 2021. 9. 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획 및 집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여진 심사총괄담당관 과장
유영관 심사총괄담당관 사무관
김형철 심사총괄담당관 주무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정현 개인정보정책팀 팀장
강이석 개인정보정책팀 수석

집필진

박영철 용인예술과학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
최민식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배영목 스마일게이트자산운용(주) 변호사

사례 중심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 실무 교재

발행일 2021년 11월
발행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www.pipc.go.kr
제작 한국인터넷진흥원